제1장 예금총칙

제1절 총 설

1. 예금의 의의

1-1의 의	예금이라 함은 금전의 보관과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와 예금을 수입 운용한 후 이것을 환급할 것을 약정하는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채권 계약이다.
1-2우체국 예금	가. 개 요 우체국예금이라 함은 우체국을 통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저축수단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고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취급하는 예금을 말하며 예금 자체에 있어서는 타금융기관의 예금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취급기관이 국가기관인 점에서 우체국예금이 타금융기관의 예금에 비하여 여러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조) 나. 우체국예금의 특성 우체국예금은 그 경영주체가 국가이므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우체국예금으로 예입된 예금의 원금과 이자는 전액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이하 “법”) (1) 국가기관이 취급 우체국예금은 국가기관이 취급함으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하여 운용되며 법령, 예산 등의 통제를 받는다. (2) 특별법에 의함 타금융기관의 예금이 일반법인 민.상법에 의하여 취급되는데 비해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급되며 이의 적용을 받는다.(특별법 우선의 원칙) 따라서 소멸시효 및 무능력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는 달리 특별 규정이 있다.
	(3) 예금의 종류 및 이자율 결정의 독자성 우체국예금의 종류 및 이자율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 제28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0조) (4) 자금운용의 특이성 타금융기관의 운용방법은 예치된 자금을 자금의 수요자에게 융자하여 주는 여신업무(대출)에 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데 비하여 우체국예금은 타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및 법에서 정한 주식의 매입 등에 의하여 자금을 운용한다.(법 제18조)

(5) 예금주의 보호

일반적으로 예금통장에는 인지를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우체국예금은 공익성에 비추어 인지세법 제6조에 의거 인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소속회계

우체국예금은 우체국보험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속해 있는 것과는 달리 예금사업특별회계에 의하여 계상된다.

라. 우체국예금의 운용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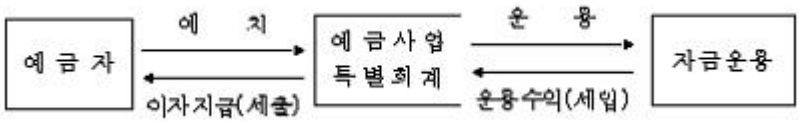

마. 우체국 예금상품 종류 및 연혁

구 분	예 금 종 류	판매일
요구불예금 (10종)	. 보통예금	1905. 07. 01
	. 저축예금	1980. 12. 31
	. 듬뿍우대저축예금(MMDA)	1997. 11. 08
	. e-postbank예금	2004. 06. 30
	. 웰빙우대저축예금	2006. 08. 08
	. 주니어우대저축예금	2007. 06. 28
	2040+α 저축예금	2010. 07. 01
	행복지킴이통장	2011. 04. 01
	기업든든MMDA통장	2011. 05. 03
	우체국청춘연금통장	2011. 12. 16
거치식예금 (5종)	. 정기예금(생계형정기)	1982. 04. 30
	. 챔피언정기예금	2002. 07. 01
	- 인터넷챔피언정기예금	2004. 09. 22

	. I - Card 정기예금 . EVERRICH 회전식정기예금 - EVERRICH 인터넷회전식정기예금 . 주가지수연계정기예금(수시판매상품) . EVERRICH CD연동 정기예금 . e-Postbank정기예금 . S뱅킹정기예금	2005. 03. 14 (2005. 12. 23) 2005. 08. 22 2007. 09. 28 2009. 10. 27 2011. 3. 29
적립성예금 (8종)	. 정기적금 . 학생장학적금 . 가계우대정기적금 . 이웃사랑자유적금 . POSTBANK 비과세주택마련저축 . EVERRICH 자유적금 - EVERRICH 인터넷자유적금 . 가족多사랑적금 . 주니어우대자유적금	1943. 07. 20 1984. 03. 01 1987. 06. 01 2003. 11. 01 2003. 11. 01 2004. 12. 01 2006. 10. 31 2007. 06. 28
기타예금 (2종)	. 환매조건부채권 . 국고예금	2002. 12. 16
연계특약	. 세금우대형 저축(정기예금, 적금 등) . 생계형 저축(정기예금, 적금 등)	

구 분	예 금 종 류 및 판매기간	폐지일 (판매중지일)
요구불예금 (1종)	. 자유저축예금	1987.6.1~2003.1.1
정기예금 (2종)	. 세금우대알뜰정기예금 . 세금만족정기예금 . I - Card 정기예금 . 그린보너스정기예금	1991.11.1~2003.1.17 2001.2.3.~2005.6.20 2004.9.22.~2009.7.19. 2010.9.8.~2011.12.31
적립성예금 (8종)	. 국민컴퓨터적금 . IT839적금 . 수시로적금 . 두리하나정기적금 . 보너스정기적금 . 근로자우대저축 . 근로자장기저축 . 가계장기저축	1999.9.20~2004.9.1 2004.9.22~2005.10.4 1994.12.1~2005.11.21 2001.7.2~2005.11.21 1993.10.2~2006.12.29 1997.10.1~2003.1.1 1991.1.17~2002.3.5 1996.10.21~1999.1.1
기타예금		

바. 우체국 예금상품 폐지(판매중지)내역

2. 예금의 성립 및 소멸

2-1예금의 성립	가. 예금계약 예금계약이라 함은 금전의 보관과 이식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자와 예금을 수입 운용한 후 이것을 환급할 것을 약정하는 우체국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며,

또한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되어 있는 복수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것을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예금계약이 소비대차 또는 소비임치, 소비대차와 소비임치의 혼합계약이냐에 관하여는 여러가지 학설이 있으나 예금주의 의사가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통설에 따라 소비임치로 봄이 타당하다.

소비임치(민법 제702조)는 단순한 임치(민법 제693조)와 달라서 수령한 물건을 소비하고서 후일에 그와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소비임치에는 임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반환의 시기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치인은 원칙적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반환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야 하지만 이 규정(민법 제603조2항)만은 소비임치에 준용되지 않으며 임치인인 예금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702조)

참고조문

* 민법 제702조(소비임치) 수취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나. 계약의 성립시기

예금거래에 있어서 예금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에 관하여는 우체국과 예금자와의 계약상의 합의로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낙성계약설과 의사표시의 합치 이외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목적물의 인도 없이는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요물계약설이 있으며 판례도 당사자 사이의 예금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예금의 합의뿐아니라 금전의 수수란 요물성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요물계약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84다 1139)

따라서예금을 현금으로 수입한 경우에 예금채권의 발생시기는 예금주로부터 우체국이

	현금의 점유를 이전받아 확인한 때이나 현금이외의 어음교환 등을 통하여 추심해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어음.수표 등 소위 타점권으로 수입된 경우에 예금채권이 언제 발생하는가에 대하여 추심위임설과 권리이전설로 나누어져 있다. 추심위임설이란 타점권에 의한 예입은 우체국이 그 추심을 마쳤을 때 예금채권이 발생한다는 설이고 권리이전설은 타점권수입과 동시에 예금계약이 성립되고 동 타점권에 대한 권리도 예금주로부터 우체국에 이전되며 우체국은 자기의 권리로서 어음교환을 통하여 지급을 요구하되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부도어음 또는 수표의 권리자로서 상환청구를 하든지 예금자에게 반환하고 예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이다. 우체국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의 예입을 현금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유가증권 및 증서로 하고 당해 유가증권 또는 증서의 예입은 교환결제 또는 지급이 있은 후에 지급되며 교환결제 또는 지급되지 아니하면 예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2-2예금의 소멸	가. 의의 예금이 소멸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예금계약에 따라 발생한 예금채권이 지급 등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와 예금계약의 해제 또는 예금계약의 종료와 같은 계약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게 되는 두가지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예금이 소멸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우체국이 예금주의 계좌해약청구에 의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멸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소멸의 종류 (1) 해약에 의한 소멸(계약의 해지) 우체국이나 예금주가 예금계약을 해지하면 예금은 소멸한다. 해약에는 만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예금을 해약하는 일반해약과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예금의 만기(후)해약 및 중도해약 등이 있다. (2) 국고귀속에 의한 소멸 국고귀속에 의한 소멸이라 함은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 채권이 국고에 귀속되어짐을 말하는 바,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우체국예금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거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는 예금주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이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때에 비로소 권리가 소멸한다(법 제24조). ※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3)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

	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차감 계산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우체국이 예금주에게 대출(대월)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채권과 예금을 상계함으로써 대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4) 변제 변제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채무자(우체국)의 행위를 말하며,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예금주)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예금)은 소멸한다. 그러나 변제는 예금의 소멸원인이기는 하나 예금계약의 소멸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금계약은 그 계약의 해지로서 소멸하기 때문이다. (5) 공탁 공탁이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금전.유가증권.기타)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공탁에는 변제공탁.보증공탁.집행공탁 등이 있다. 상속, 예금의 소유권 분쟁, 압류의 경합 등의 경우 공탁을 통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
2－3 국고귀속	가. 의의 장기간 거래가 없는 우체국예금(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 가입자에 대한 지급안내, 지급청구 및 지급, 우체국 요구불예금 활동계좌로 이체 및 국고귀속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근거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4조의2 나. 국고귀속 대상(지급안내문발송 대상) (1) 보통예금, 저축예금, 구 자유저축예금, 듬뿍우대저축(정리계좌 포함) : 최종 거래일로부터 10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 (2)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근로자장기저축, 장학적금, 환매채권 등 만기일이 정해진 예금 : 만기일로부터 10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 주 ① 활동계좌 : 현재시점에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② 최종거래일 : 예금의 입.출금, 인감변경, 통장 재발행이 있은 최종일 다만, 만기가 정해진 예금은 만기일 다. 국고귀속 대상자 명부 작성 (1) 주소 현행화 ○ 본부에서는 국고귀속 대상자의 주소지를 현행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를 위한 협조문서 발송 － 상반기 발생분 : 당해연도 7월말까지

	– 하반기 발생분 : 익년도 1월말까지 ○우정사업정보센터는 행정자치부와 국고귀속 대상자의 현행 주소를 파일로 송수신 (2) 우정사업정보센터는 국고귀속기준에 따른 가입국별 국고귀속대상자 명부를 현행화된 주소를 기준으로 매 반기별로 작성 ※ 국고귀속 대상자 명부 작성기준 ○ 상반기 발생분(당해연도 6월말 현재 국고귀속 기준에 해당되는 계좌) : 당해연도 8월 20일까지 작성
	○ 하반기 발생분(당해년도 12월말 현재 국고귀속 기준에 해당되는 계좌) : 익년도 2월 20일까지 작성 라. 최 고 (1)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국고귀속대상자 명부에 의거 붙임1,2)의 최고서(잔액이 없는 예금은 최고 불요)를 가입자에게 우편으로 일괄 발송 ○ 다만, 휴면예금 잔고가 일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상반기 발생분 : 당해연도 8월 말일까지 발송 – 하반기 발생분 :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발송 ○ 국고귀속 계좌가 여러 건인 가입자는 가장 최근의 가입국명으로 최고서를 발송 ※ 계좌번호(구 계좌번호 포함) 뒤의 3자리는 ***로 표시(고객정보 보호) (2) 가입국에서는 국고귀속 대상자 명부를 국별보고서 의뢰/출력거래(1336 거래)하여 우정사업정보센터로 신청한 후 익일 출력 – 상반기 발생분 : 당해연도 8월부터 출력 가능 – 하반기 발생분 : 익년도 2월 말부터 출력 가능 ○ 우편물 반송,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 등은 출력한 국고귀속대상자 명부에 반드시 기록관리 (3) 가입국에서는 최고서가 반송된 경우 해당 가입자에 대해서 별도의 안내문(붙임3)을 즉시 작성하여 국전 게시판에 2주간 게시 ○ 안내문 게시 처리기한 – 상반기 발생분 : 당해연도 9월 11일부터 2주간 – 하반기 발생분 : 익년도 3월 11일부터 2주간 –이 경우 특정 개인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가입자가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게시(계좌번호 뒤의 3자리는 별표로 표시)

	-국고귀속 계좌가 여러 건으로서 자국계좌가 아닌 경우에도 반송우편물 수령국에서는 우체국 게시판에 게시 -국고귀속 대상자 명부에는 가입국 계좌만 있으므로 반송우편물 수령국에서는 타국계좌에 대한 우편물 반송, 게시판 게시 등 해당내용을 가입국 계좌의 아래 여백에 기록 관리
	-게시판에 게시한 사항은 사진을 찍어 사후 법적분쟁에 대비하고 국고귀속 대상자 명부는 철저히 관리.보관(외부유출 금지)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예금은 관서장 책임하에 특별 관리하여 우편, 전화 등 가능한 연락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액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국고귀속대상 예금의 지급기한 ○최고 후 2개월 까지. 단, 최고서가 배달되지 아니한 경우 게시판에 게시 후 2주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2개월까지 - 상반기 발생분 : 당해연도 12월 첫 번째 토요일 전(前)일 - 하반기 발생분 : 익년도 6월 첫 번째 토요일 전(前)일 마. 예금의 지급 (1) 국고귀속 이전의 지급 예금가입자로부터 국고귀속대상 예금에 대하여 지급기한 이전에 지급 등의 청구가 있을 때에 활동계좌는 일반예금의 취급절차에 의하여 정리계좌는 정리계좌의 취급절차에 따라 해약 지급하되 특히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처리 ①국고귀속대상예금의 경우 장기간(10년) 거래가 없다가 최고서 발송이후 청구가 들어온 만큼 본인여부 및 실명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② 고객이 인감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감분실시의 예에 따라 처리하되 서명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서명신고서 및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처리함. 다만, 비밀번호를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여부를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 후 비밀번호 변경 처리 ③ 3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가입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가입자 명의의 우체국예금 계좌로 송금을 요청할 경우 현금출납공무원이 직권으로 인출하여 입금처리(지급청구서 및 영수증은 합철 보관) ④ 통장 없이 최고서만 소지한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방문 국에서 가입국으로 본인여부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통장분실 신고서를 접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 고객의사에 따라 계속거래(정리계좌는 부활) 또는 해지 지급 ⑤ 지급기간 내 예금의 지급청구가 없을 경우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하여 우체국 요구불예금 활동계좌로 국고귀속 직전 이체 처리(우정사업정보센터)

(2)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 의한 국고귀속 예금의 지급

① 지급절차

○ 본인 확인 및 신분증 징구

○ 금융기관휴면계좌통합조회(3078 거래) 거래로 정보조회

○ 국고귀속금 지급(8109 거래) 거래로 지급

○ 우정사업정보센터로 문서통보 불요

② 하자있는 국고귀속 예금의 지급에 따른 우정사업정보센터 조치방법

○ 지급 금액은 국고귀속분과 과징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 국고귀속된 예금 및 세무서에 납부한 과징금은 국고귀속 할 예금 및 세무서에 납부할 금액에서 각각 차감 정산

바. 예금의 국고귀속

(1) 국고귀속 대상

최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예금지급의 청구, 기타 예금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이 없는 계좌

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국고귀속대상 계좌 중 지급기한까지 통장 재발행, 사고신고, 지급, 해지 등의 청구가 없는 계좌를 선별하여 미지급자 명단을 작성하고 체신청별, 예금종별로 국고귀속 내역서를 작성한 후 국고귀속 처리

②우정사업정보센터는 국고귀속계좌 중 실명미확인계좌에 대해서는 국고귀속 전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5493호)” 및 “과징금 원천징수업무 기준지침”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에 한하여 국고귀속 처리

(2) 국고귀속일

○ 상반기 발생분 : 당해연도 12월 첫 번째 토요일

○ 하반기 발생분 : 익년도 6월 첫 번째 토요일

(3) 국고귀속 처리기관 : 우정사업정보센터

※ 국고귀속 처리 종료 후 이를 즉시 우정사업본부로 보고

사. 국고귀속 예정자중 수기계좌 처리방법

(1) 수기계좌의 구분

○ 수기계좌는 상품코드가 1401(수기학생장학적금)인 경우임

(2) 처리방법

○ 최고서를 받은 예금주가 지급요청 시 처리방법

-정당한 주민번호로 고객정보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정당한 고객번호와 해당 계좌번

	호를 이용해 실명변경거래(1962) 실시 후 해약(1503) 처리 -정당한 주민번호로 고객정보등록이 안된 경우는 먼저 고객정보등록(3011) 거래를 하고 나서 정당한 고객번호와 해당 계좌번호를 이용해 실명변경거래(1962) 실시 후 해약(1503) 처리 ○실명변경(1962)시 비실명계좌라는 메시지가 출력 되는 경우는 실명확인(2303) 거래 실시 아. 행정사항 (1) 게시판에 게시한 공시사항은 사진을 찍어 사후 법적 분쟁에 대비 ○ 사진 및 게시내용은 국고귀속 대상명단과 함께 첨부하여 보관 (2)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국고귀속 된 예금의 지급 등을 위하여 해당 계좌의 국고귀속 관련 자료를 영구 보관관리

제 1 장 예금상품

제 1 절 요구불예금

Ⅰ. 보통예금

1. 의의

보통예금이라 함은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예입할 수 있고 또한 자유로이 환급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으로 일반대중의 소비 또는 유휴자금의 일시적보관 및 출납예금으로서 이용하기 편리한 반면 예금주에 대한 이율이 낮은 예금

2. 상품특징

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음

나. 각종모임. 단체. 법인등의 공공자금 운영에 편리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자연인), 법인 단체(임의단체 포함)

나. 이율 : 이율표 참조

다. 예치한도 : 최저 예치한도 0원이상, 최고 예치한도액 제한없음

4. 부가서비스

전자금융약정, 카드(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금융자동화기기약정, 자동이체약정

5. 적용범위

가. 보통예금에 관하여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과 본 편람이 정한 바에 따름

나. 이 예금의 취급절차는 제1장의 예금총칙을 준용함

6. 기간계산

예치기간 계산에 있어 예입일은 산입하고 지급일은 예치일수에서 제외 (한편 넣기 계산)

7. 적수산출

가. 보통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부리하며 계산단위는 1원으로 함

나. 적수계산은 입출거래 발생일마다 최종잔액에 예치일수를 곱하여 적수를 산출하고 계산기준일까지 누적함

다. 수표등에 의한 입금액은 그 수표등의 예입일부터 적수를 차감

라. 적수는 윤·평년 구별없이 365일로 나누어 이자를 계산

8.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 방식 : 이자액 = 적수누계액 × 연이율(%)/365 (10원미만절사)

나. 정기이자 계산

1) 정기이자 계산기간

가) 상반기 : 1월 1일 ~ 6월 넷째주 토요일

나) 하반기 : 상반기 결산익일 ~ 12월 말일

2) 정기이자 계산일

가) 상반기 : 6월 넷째주 토요일

나) 하반기 : 12월 말일

3) 정기이자계산 원가기준일 : 정기이자 계산일 익일로 함

다. 이자계산 및 원천징수예시

1) 예금내용

일자(월.일)	예입	지급	잔고	비고(적수)
1.15.	10,000,000		10,000,000	10,000,000×11=110,000,000
1.26.	-	2,000,000	8,000,000	8,000,000×15=120,000,000
2.10.	-		8,000,000	8,000,000×10=80,000,000
2.20.	6,000280	5,000,000	9,000,280	9,000,280×8=72,002,240
2.28.	-	4,000,000	5,000,280	5,000,280×15=75,004,200
3.15.	-	3,000,000	2,000,280	2,000,280×5=10,001,400
3.20	5,000560		7,000,840	7,000,840×1=7,000,840
3.21	계좌탈퇴			적수누계 424,008,680

※적수누계의 이자계산액은 424,008,680원

2) 이자계산 : 이자액=$424,008,680\times\frac{0.1\%}{365}$=1,162 → 1,160원(10원미만 절사)

3) 원천징수세액계산

구 분	개 인(거주자)	법 인
이자소득세 (법인세) 주 민 세	1,162×14/100 = 160원 160×10/100 = 10원	1,162×= 170원 .

4) 지급이자액 = 1,160 . (160+10) = 990원(개인의 경우)

9. 원천징수

제1장 예금총칙중 원천징수예에 따라 처리

10. 공금계좌 이자 미발생

우체국 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가 미발생되도록 원부변경 거래화면에서 결산제외계좌로 설정

Ⅱ. 저축예금

1. 의의

저축예금이란 개인이 개설하는 예금으로서 예입과 지급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2. 상품특징

이 예금은 카드(현금카드, 제휴카드), 가계수표 등으로 인출 가능 (단, 가계수표는 1인 1계좌에, 현금IC 카드는 1계좌 1카드)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다계좌 가능
나. 이 율 : 이율표 참조
다. 예치한도액 : 최저예치한도 0원 이상으로 하고 최고예치한도액은 제한없음

4. 부가서비스

가. 전자금융약정
나. 카드(현금카드,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다. 금융자동화기기약정
라. 가계수표약정 : 1인 1계좌
마. 자동이체약정

5. 적용범위

가. 저축예금에 관하여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과 본 편람이 정한 바에 따름
나. 이 예금의 취급절차는 제1장의 예금총칙을 준용함

6. 이자계산

가. 저축예금의 이자계산은 보통예금이자 계산에 준하여 처리하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함

1)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 토요일

2) 원가기준일 : 정기이자 계산기준일 익일로 함

7. 원천징수

제1장 예금총칙중 원천징수 예에 따라 처리

Ⅲ. 듬뿍우대저축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1. 의의

'97. 7. 7 시행된 4단계 금리자유화에 따라 기존예금의 이탈방지 및 신규예금유치 도모를 통한 우체국예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금액별 차등 고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성예금

2. 상품특징

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단 하루만 예치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고수익상품
나.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며, 추가입금 및 출금 가능

3. 상품내용

가. 상품명 : 듬뿍우대저축예금
나.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다.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고유번호 있는 단체 및 개인사업자 제외)
라. 가입방법 : 이 예금은 우체국창구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능
마. 최초가입금액 및 가입한도 : 제한 없음
바. 가입계좌수 : 제한없음
사. 적용이율 :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한 이율

4. 부가 서비스

가. 전자금융 및 금융자동화기기 약정
나. 현금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다. 자동이체약정

5.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법
1)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예금 잔액에 대하여 고시된 금액별 해당이율을 적용하여 매일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단위로 원가 함
2) 이자계산 기준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12월은 말일)
3) 이자계산 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
4)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12월은 말일) 다음날
나. 이율의 적용 : 이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는 변동된 날로부터 이율을 적용

6. 기산일 거래불가

동 예금은 매일 예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별도 전산 관리되므로 기산일 거래가 불가능함

7. 기타사항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축예금에 정한 바에 따름

Ⅳ. e-postbank예금

1. 의의

“e-postbank예금”은 고객이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 창구를 통해 가입하고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등)을 통해 거래하는 요구불예금으로서 전자금융 이용 증대와 우체국 예금가입채널 다양화를 통한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예금

2. 상품특징

가. 이 예금은 통장을 교부하지 않으며, 카드(현금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등)를 교부하고 전자금융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예금
나. 자동이체, 계좌간 이체, 가계수표 약정 등 온라인저축예금과 동일
다. 동 예금으로 가입(또는 전환)한 경우 창구를 통한 유통 입·출금은 불가하되, 무통입금에 대한 업무처리(수수료포함)는 현재와 동일
라. 무통장거래 건수 제한없이 사용가능
바. 이 예금은 인터넷 전용 상품임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다통장)
나. 예치한도 : 0원이상 예치한도 없음
다. 이자율 : 이자의 계산, 지급방식은 온라인저축예금과 동일
- 결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지급

기본금리	연 0.5%		
우대금리 조건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 10만원 미만	-
		평균잔액 10만원 이상	연 0.2%p
		급여계좌로 연동시	연 0.2%p
		우체국 VM모바일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이용시[주1]	연 1.0%p
		우체국 체크 및 제휴카드(신용 또는 체크) 보유 또는 신청시	연 0.1%p
합 계	최대 2.0%		

※ 주1 : 우체국 VM모바일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으로 이체, 조회, 출금, 등 거래실적이 있는 고객

4. 부가서비스

가. 우체국금융 자동화기기에서 우체국 카드로 출금시 영업시간외 수수료 면제
※영업시간외 : 영업시간을 제외한 시간 및 공휴일
나. (주)애니모비 (http://www.anystudy.kr/) 온라인 및 모바일 어학강의 할인(10%)

5. 예금의 가입

가. 우체국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 (저축예금 통장이 없는 경우 또는 저축예금통장은 있으나 신규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1) 우체국 창구에서의 가입 : 통장은 발행 및 교부하지 않고 'e-postbank예금가입증서'를 출력 후 현금출납공무원인을 날인 후 통장대용으로 교부함
2) 인터넷뱅킹으로 가입 : 우체국 인터넷 홈페이지 (www.epostbank.kr)를 통하여 가입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음
※ 금융상품몰 → 예금상품 → 인터넷가입상품 → e-postbank예금 가입 → 약관동의 → 신규계좌번호확인 후 비밀번호 지정 → 보안카드 또는 OTP입력→ 가입정보확인

6. 예금의 해지

o 'e-posbank예금'의 해지는 '온라인저축예금으로의 전환'과 '예금의 해지'로 구분함
가. 온라인 저축예금 전환
1) 'e-postbank예금'은 1회에 한하여 '온라인저축예금'으로 전환 할 수 있음

2) 동 예금을 온라인 저축예금으로 전환하여 인터넷뱅킹에 다른 출금계좌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뱅킹 약정도 자동적으로 해지됨 (인터넷뱅킹 약정 거래 불필요)

나. 예금의 해지

1)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 예금의 해지 신청서는 '우체국예금 지급 청구서(찾으실 때)'를 사용하며, 무통해약처리함

2) 인터넷뱅킹으로 해지 : 인터넷뱅킹의 금융상품몰 → 예금상품 → 인터넷가입상품 → e-postbank 예금해지 → 해지계좌, 비밀번호, 잔액이체될 계좌번호선택 → 보안카드 또는 OTP입력 → 해지정보확인

3) 'e-postbank예금'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출금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뱅킹 약정은 존속하나, 'e-postbank예금'을 해지하면 출금계좌가 없는 경우 인터넷뱅킹 약정도 해지됨(별도 인터넷뱅킹 약정 해지거래 불필요)

4) 'e-postbank예금'신규 가입고객은 전환이 불가하므로 해지만 가능

7. 예금의 전환

o 온라인 저축예금을 e-postnamk예금으로 전환

가. 우체국 창구에서의 전환

1) 우체국 예금 전환신청서를 제출받아 전환절차에 의거 전환함

2) 보안카드 및 마그네틱 제거한 기존 저축예금 통장은 고객에게 교부함

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의 전환

1) 고객이 직접 인터넷뱅킹화면에서 e-postbank예금으로 전환

2) 출금계좌가 아닌 경우에도 저축예금일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환가능

3) 기존 저축예금 가입자가 e-postbank예금으로 전환될 경우 통장은 사용불가하며, 자동적으로 출금계좌로 등록됨

4) e-postbank예금으로 전환이 완료되면, 카드가 없는 고객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안내하는 화면이 나타남

참조 사항

1) 온라인 저축예금에서 e-postbank예금으로 전환한 고객은 온라인 저축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창구에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시 통장발행에 따른 통장재발행수수료를 징구함

2) e-postbank예금 신규고객은 온라인 저축예금으로 전환불가

8. 예금의 이용

가. 입금 이체

1) 전자금융 채널(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등)을 이용하여 거래

2) 우체국 창구에서 무통장입금이 가능

나. 출금

1) 자동화기기, 가계수표에 의한 지급, 무통출금, 창구지급이 가능

2) 고액예금의 지급처리시 온라인 단말기를 통해 카드로 지급 (이때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아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청구서 뒷면에 복사)

다.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식(대월이자 포함)

1) 이자의 계산방식 및 기준일, 원가기준일 등은 온라인 저축예금과 동일하며, 온라인 저축예금에서 e-postbank예금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일자를 기준으로 금리 변경

2) e-postbank예금에서 온라인저축예금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전환일자를 기준으로 금리 변경

라. 기존 저축예금에서 전환한 경우 급여이체, 가계수표 약정, 공과금자동이체 등 약정사항 승계

마. 온라인저축예금에서 e-postbank예금으로 전환하더라도 가입신청서에 등기된 거래인감은 유효(가계수표의 지급등에 활용)

바. 무통장거래의 이용횟수 제한없음

사. 12개월이상 이체거래 이용실적이 없을 경우 인터넷뱅킹의 이용 정지

※ 전자금융 미약정고객이 예금에 신규가입(전환)하고 5일이내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아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와 12개월 이상 이체거래 이용실적이 없어 인터넷뱅킹 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창구에서 전자금융서비스 재등록거래를 실시하거나 콜센터를 통하여 재등록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함

9. 업무의 적용

가. 예금계약의 성립

고객이 우체국 창구 및 우체국 인터넷뱅킹에서 약관을 인지하고 가입신청 이후 우체국이 승낙한 시점에 예금계약 성립

나. 예금계약의 소멸

고객이 우체국을 방문하여 동 예금을 신청 후 거래가 완료한 시점

다. 정리계좌 편입

온라인 저축예금 기준과 동일

라. 국고귀속

온라인 저축예금의 국고귀속 절차와 방법에 따름

마. 예금의 전입전출.승계

동 예금의 전입전출 및 승계 불가

바. 예금 상속에 의한 지급

1) 예금주의 사망통지가 있거나, 사망사실을 안 경우 당해 예금에 대하여 1종 사고 등록하여 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함

2) 상속예금의 지급은 동예금을 무통장지급하고, 온라인저축예금의 상속예금 지급처리에 따름

사. 예금의 강제집행 (압류등)

동 예금의 압류 등 강제집행은 온라인저축예금과 동일하게 처리

아. 예금의 질권설정

동예금은 질권설정 할 수 없음

자. 예금의 각종 사고등록 및 해제

1) 동 예금의 각종사고등록은 온라인 저축예금의 방법과 동일하나, 예금주 본인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고 등록할 수 있음

o 예금주 본인이 사고 등록할 수 있는 사고 사유는 카드의 분실(카드에 의한 거래만 정지), 보안카드의 분실(보안카드를 이용한 거래만 정지), 이용자 요구에 의한 거래정지(입금, 자동이체와 해약을 제외한 모든 지급거래가 정지됨)등

2) 사고등록 해지는 온라인저축예금과 동일하게 처리(창구방문)

차. 고객정보조회

1) 거래내역 조회

- 거래내역 조회는 조회시점에서부터 1년전까지 거래내역을 조회가능
- 1년이 초과된 예금거래내역은 우체국에서는 기존 업무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2) 현재고 증명
- 업무편람 제 1장 예금총칙 중 현재고 증명서 발급 규정에 따름

10. 카드의 발급 및 이용

가. 고객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환할 경우
1) 카드가 없는 고객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급받도록 안내하는 문구가 나타남
2) 우체국을 방문하여 카드를 신청할 경우 현금카드, 우체국체크카드 및 제휴카드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

나. 창구에서 가입할 경우 반드시 현금카드, 우체국체크카드 또는 제휴카드 발급토록 권유함 (지침은 업무편람 각 규정에 따름)

11. 기타사항

가. 인터넷저축예금 가입신청서는 기존 우체국 예금가입신청서를 활용 예금종별 마지막란에 'e-postbank예금'이라 기재

나. 우체국 예금 전환신청서는 기존 우체국예금가입신청서를 발췌하여 뒷면에 함께 보관(계좌가입국이 아닌 경우 자체 별도 보관)

다. 예금의 실적관리는 계좌수와 관계없이 수신평잔고를 위주로 평가

라. 예금모집경비, 별정국취급수수료등은 '온라인저축예금'과 동일하게 처리

마. 전환대상 제외 계좌는 아래와 같음
1) 정리계좌 (정상거래 계좌로 부활거래 및 전환가능)
2) 직권해지 계좌 (정상거래 계좌로 복귀 후 전환가능)
3) 무통특별약정 계좌
4) 구계좌번호(신계좌번호로 전환 후 가능)

바. 각종 사고신고가 등록된 계좌는 전환불가하며, 사고등록 해제 후 전환하여야 함

사. 전환거래 후 당일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나, 입지급 등 선거래가 발생될 경우 취소 불가

아. 개인에 한하여 계좌대월 약정 가능

거래코드	취급국기호	취급일자	취급시각	조작자번호	책임자번호	거래번호

우체국예금 전환 신청서

가입자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예금종별	
전화(핸드폰)번호		E-mail	
전 환 사 항			
~에서(전환전)		~으로(전환후)	
□ 온라인저축예금 □ e-postbank예금		□ e-postbank예금 □ 온라인저축예금	

※ 우체국 인터넷뱅킹 미약정자만 기록해 주세요.

이용자 ID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보안카드 및 약관수령
	인터넷뱅킹 원 폰뱅킹 원	인터넷뱅킹 원 폰뱅킹 원	년 월 일 (인)

붙임 약관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우체국예금을 전환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접 수 자	책 임 자

신청인 (인)

우체국장 귀하

※ 안내사항

1. 위와 기재사항은 반드시 신청인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온라인저축예금"에서 "e-postbank예금"으로 전환하신 고객은 1회에 한하여 "온라인저축예금"으로 재전환이 가능하며, 통장발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e-postbank예금"으로 전환되면 기존 온라인저축통장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4. "e-postbank예금"으로 전환하신 경우 5일이내에 전자금융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정지됩니다.

우체국예금 가입 증서(확인서)

_____님 귀하

예금종류	e-postbank예금	가입일자	
계좌번호			
계좌가입국	우체국	전화번호	( ) -
인터넷뱅킹	www.epostbank.go.kr	콜센터 전화번호	1588-1900

안 내 사 항

◉ e-postbank 예금에 가입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이 통장의 거래에는 e-postbank 예금 약관 및 우체국 예금/대체 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하며 우체국에 비치된 약관 내용을 열람 또는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 예금은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카드(현금카드, 체크카드, 제휴신용카드 등)를 교부하여 창구거래 이외에 자동화기기, 폰뱅킹 및 인터넷뱅킹 등으로만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3. 이 예금으로 전환하신 고객은 1회에 한하여 온라인저축예금으로 전환가능하며, 전환에 따른 수수료(통장재발행 수수료와 동일)를 수납합니다. 단, 신규로 가입된 예금은 전환하실 수 없습니다.
4. 통장거래 건수에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5. 동 예금의 해지는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Ⅴ. 웰빙우대저축예금

1. 의의

웰빙(Well-Be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에 부응하여 웰빙 컨셉에 맞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이율을 제공하는 수시입출식 예금

> ※ 웰빙 : 사전적인 의미로는 행복, 안녕, 복지이나 최근에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또는 문화현상으로 새롭게 해석

2. 상품특징

가. 가입고객에게 웰빙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

나. 결산이자 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가산이율(0.8%P)과 함께 전자금융이체수수료 10회 면제 및 스윙서비스를 제공

1) 기본서비스(웰빙서비스+스윙서비스)

가) 웰빙서비스 : 종합건강검진 할인서비스

- o 제휴기관 : 한국의학연구소(www.kmi.or.kr)
- o 검진항목 : 종합건강검진
- o 대상고객 : 가입자 본인 및 가족
- o 할 인 율 : 특별우대가 적용

나) 스윙서비스 : 적금이율 우대서비스

- o 대상고객 : 가입자 본인
- o 우대조건 : 정기적금 가입 후 적금납입액을 웰빙우대저축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 o 우대이율 : 연 0.1%P

2) 부가서비스(결산이자 기간 중 평잔액 50만원 이상인 경우)

가) 기본이율(0.2%) 외에 0.8%P의 가산이율을 지급

※ 단, 1천만원 이상 입금후 7일이내 1천만원이상 출금할 경우 평잔계산시 제외

나) 전자금융 약정시 전자금융 즉시이체수수료 매 결산기별 10회까지 면제

※ 즉시이체수수료는 예약이체, 자동이체가 아닌 단발성이체임

※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면제대상 이용매체

- 적용대상 : 현금자동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컴퓨터(인터넷뱅킹), 전화기(폰, 모바일), TV(TV뱅킹)

3. 상품내용

가. 상 품 명 : 웰빙우대저축예금

나.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다. 저축방법 : 수시입출금식

라. 가입한도 : 제한없음

마. 가입방법 : 우체국창구 및 인터넷뱅킹 가입가능

바. 과세조건 : 일반과세(생계형가입 불가)

사. 제한사항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아. 각종 결제계좌 등록 : 제한 없음

※ 동상품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각종 공과금 자동납부, 카드결제계좌 등록, 계좌간 자동이체 등록 등 자동이체 약정에 의한 모든 거래 가능

4. 취급절차

가. 종합건강검진 할인서비스(인터넷으로 신청 불가)

1) 검진기관 : 한국의학연구소(www.kmi.or.kr), ☏ 1599-7070(대표)
2) 대상고객 : 동 웰빙우대저축예금에 가입한 고객 및 가족
3) 서비스내용 : 건강검진 비용 특별우대가 적용
4) 신청절차 : 예금통장 사본 및 신분증(가족의 경우 가족임을 증빙하는 서류 포함)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제출

나. 기타 업무처리절차

1)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가) 즉시이체의 의미 ⇒ 예약이체, 자동이체가 아닌 단발성 이체를 의미함

나) 이체수수료 면제 방법

o 결산이자 시점에 통장인자 ⇒ 예시) 결산일 9. 2일 전자금융 즉시이체수수료 10회 면제: “9.3일부터 12.2일까지”

o 최우수고객(S-MVP, MVP고객)인 경우 ⇒ 일반고객으로 등급이 하락하여 우대를 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동 상품가입으로 우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결산기간중 10회 면제 혜택

o 우수고객(VIP고객)인 경우 ⇒ 최우수고객(S-MVP, MVP고객)과 동일하나, 50% 감면횟수를 포함하여 해당 기간 중 10회 면제처리

2) 스윙서비스

가) 우대금리 적용 상품종류 : 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인터넷가계우대정기적금만 해당 (자유적립식 적금 제외)

나) 가입시 자동이체를 설정할 경우에만 우대이율을 적용 : 우대금리 적용상품 종류 중 한가지만 적용됨

다) 자동이체 출금계좌는 웰빙우대저축예금(요구불)만 가능한지 여부 : 웰빙우대저축예금으로만 지정

라) 적금가입시 결산기간중 평잔(50만원이상) 확인 여부 : 웰빙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적금가입시 우대이율을 0.1% 가산

※ 평잔 50만원에 과부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전 고객에게 스윙서비스 제공 ⇒ 적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우대이율 미적용

3) 기타사항

가) 저축예금의 부가서비스인 전자금융약정, 카드발급, 금융자동화기기 약정, 자동이체약정이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저축예금과 동일하게 적용

나) e-postbank 예금으로 전환이 불가

5.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 적수 누계액 × 이율(%)/365(10원미만 절사)

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주 토요일

다. 통장기재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

라. 적용이율

1)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50만원 미만인 고객은 저축예금과 동일한 0.2%의 이율을 적용하고, 50만원 이상인 고객은 가산이율(0.8%P)을 추가한 1.0%의 이율을 적용

평 잔	이 율	비 고
50만원 미만	연 0.2%	결산기간 중 평잔기준
50만원 이상	연 1.0%	

2) 평균잔액 산출공식

가) 평균잔액계산기간 = 전결산일 7일전부터 당결산기준일 7일전까지

나) $\frac{\Sigma \text{평균잔액계산기간 매일잔액}}{(\text{평균잔액계산기간 일수})}$: 단, 당일합산 1,00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7일 이내에 1,000만원 이상을 출금할 경우 입금분 범위내에서 출금액만큼을 (후입선출방식으로) 평잔에서 제외

마. 이율의 적용 : 동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동된 날(고시일자)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

바. 이자계산 예시

1) 예시 1

1000만원입금 100만원입금 100만원입금 100만원입금 10만원지급

6월1일 6월11일 6월12일 . 6월13일 6월14일

o 세부설명

- 6월 10일 입금한 1,000만원의 평잔 산출시 제외 여부 : 6월 14일 지급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예시 2

100만원입금 100만원입금 100만원입금 100만원입금 10만원지급

6월10일 6월11일 6월12일 .6월13일 6월14일

o 세부설명

- 6월 13일 입금한 1,000만원의 평잔 산출시 제외 여부 : 6월 14일 지급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예시 3

300만원기초잔고 500만원입금 500만원입금 500만원입금 1500만원지급

6월9일 6월10일 6월10일 6월10일 6월14일

가) 세부설명

o 6월 10일 입금한 500만원 4건에 대하여 평잔 산출시 모두 포함 여부 : 6월10일 당일합산 원칙에 따라 입금액이 2,000만원이고 7일이내 출금액이 1,500만원 이므로 평잔산출 제외조건에 해당되어 1,500만원을 4일동안의 평잔에서 제외

o 만약 포함 된다면 적용 금액은?

(단위 : 만원)

월 일	입 금	지 급	잔 고	차 감 액	조정후잔고
6. 9			300		300
6.10	2,000		2,300	-1,500	800

6.11			2,300	-1,500	800
6.12			2,300	-1,500	800
6.13			2,300	-1,500	800
6.14		1,500	800		800
일적수합계			10,300		4,300

※ 계산방법

- 평잔금액 : 평잔 조정 후 잔고누계/예치기간(일) = 43,000,000/6 = 7,166,666
- 적용이율 : 1.0%
- 이자액 : $103,000,000 \times \frac{1.0\%}{365}$ = 2,822원 → 2,820원(원단위 절사)

4) 예시 4

300만원기초자금 5000만원입금 3000만원입금 1000만원입금 1500만원입급 1500만원지급

6월9일 6월10일 6월15일 6월20일 6월25일 6월26일

가) 세부설명

o 6월10일 입금한 5,000만원의 평잔 산출시 적용 금액은?

⇒ 입금액이 5,000만원이고 7일이내 출금액이 3,000만원 이므로 평잔 제외 조건에 해당함에 따라 5일동안 잔고에서 3,000만원을 차감

⇒ 6월 20일 1,000만원 입금분 역시 7일이내에 1,500만원이 인출되었으므로 평잔제외 조건에 해당하므로 입금분 범위내인 1,000만원만 평잔에서 조정

o 평잔 산출시 적용금액은?

(단위 : 만원)

월 일	입 금	지 급	잔 고	차 감 액	조정후 잔고
6. 9			300		300
6. 10	5,000		5,300	-3,000	2,300
6. 11			5,300	-3,000	2,300
6. 12			5,300	-3,000	2,300
6. 13			5,300	-3,000	2,300
6. 14			5,300	-3,000	2,300
6. 15		3,000	2,300		2,300
6. 16			2,300		2,300
6. 17			2,300		2,300
6. 18			2,300		2,300
6. 19			2,300		2,300
6. 20	1,000		3,300	-1,000	2,300
6. 21			3,300	-1,000	2,300
6. 22			3,300	-1,000	2,300
6. 23			3,300	-1,000	2,300
6. 24			3,300	-1,000	2,300
6. 25		1,500	1,800		1,800
6. 26		1,500	300		300
일적수합계			56,900		36,900

※ 계산방법

- 평잔금액 : 평잔조정후 잔고누계/예치기간(일) = 369,000,000/18 = 20,500,000
- 적용금리 : 1.0% (이자결산기간중 평잔이 50만원이상이므로)
- 이자액 : 569,000,000 × $\frac{1.0\%}{365}$ = 15,589원 → 15,580원(원단위 절사)

5) 예시 5

300만원기초자금 4000만원입금 2000만원지금 1000만원지금 1000만원지급 500만원입급

6월9일 6월10일 6월15일 6월20일 6월25일 6월26일

가) 세부설명

o 6월 10일 입금한 4,000만원의 평잔 산출시 적용 금액은?

- 입금액이 4,000만원이고 7일이내 출금액이 각각 2,000만원(6.15자), 1,000만원(6.16자)이므로 평잔제외 조건에 해당함에 따라 7일이내 잔고에서 3,000만원을 차감
- 6월 25일자 출금액은 7일이후 출금이므로 평잔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2) 평잔 산출시 적용금액은?

(단위 : 만원)

월 일	입 금	지 급	잔 고	1차 차감액	2차 차감액	조정후 잔고
6. 9			300			300
6. 10	4,000		4,300	-2,000	-1,000	1,300
6. 11			4,300	-2,000	-1,000	1,300
6. 12			4,300	-2,000	-1,000	1,300
6. 13			4,300	-2,000	-1,000	1,300
6. 14			4,300	-2,000	-1,000	1,300
6. 15		2,000	2,300		-1,000	1,300
6. 16		1,000	1,300			1,300
6. 17			1,300			1,300
6. 18			1,300			1,300
6. 19			1,300			1,300
6. 20			1,300			1,300
6. 21			1,300			1,300
6. 22			1,300			1,300
6. 23			1,300			1,300
6. 24			1,300			1,300
6. 25		1,000	300			300
6. 26	500		800			800
일적수합계			36,900			20,900

※ 계산방법

- 평잔금액 : 평잔조정후 잔고누계/예치기간 = 209,000,000/18 = 11,611,111
- 적용이율 : 1.0%
- 이자액 : 369,000,000 × $\frac{1.0\%}{365}$ = 10,109원 → 10,100원(원단위 절사)

6) 예시 6

2000만원기초자금 3000만원입금 1000만원입금 5000만원지금 1000만원입급 500만원입금

6월9일 6월10일 6월12일 6월15일 6월25일 6월26일

가) 세부설명

o 평잔 산출시 적용금액은?

(단위 : 만원)

월 일	입 금	지 급	잔 고	1차 차감액	2차 차감액	조정후 잔고
6. 9			2,000			2,000
6. 10	3,000		5,000		-3,000	2,000
6. 11			5,000		-3,000	2,000
6. 12	1,000		6,000	-1,000	-3,000	2,000
6. 13			6,000	-1,000	-3,000	2,000
6. 14			6,000	-1,000	-3,000	2,000
6. 15		5,000	1,000			1,000
6. 16			1,000			1,000
6. 17			1,000			1,000
6. 18			1,000			1,000
6. 19			1,000			1,000
6. 20			1,000			1,000
6. 21			1,000			1,000
6. 22			1,000			1,000
6. 23			1,000			1,000
6. 24			1,000			1,000
6. 25		1,000	0			0
6. 26	500		500			500
일적수합계			40,500			22,500

※ 계산방법

- 평잔금액 : 평잔조정후 잔고누계/예치기간= 225,000,000/18= 12,500,000
- 적용이율 : 1.0%
- 이자액 : 405,000,000 × $\frac{1.0\%}{365}$ = 11,095원 → 11,090원(원단위 절사)

7) 예시 7

30만원기초잔액 2000만원입금 2000만원입금 30만원잔고

6월1일 6월20일 6월23일 6월30일

가) 세부설명

o 평잔 산출시 적용금액은?

(단위 : 만원)

월 일	입 금	지 급	잔 고	1차 차감액	2차 차감액	조정후 잔고
6. 1			30			30
6. 2			30			30
6. 3			30			30
6. 4			30			30
6. 5			30			30
6. 6			30			30
6. 7			30			30

6. 8			30			30
6. 9			30			30
6. 10			30			30
6. 11			30			30
6. 12			30			30
6. 13			30			30
6. 14			30			30
6. 15			30			30
6. 16			30			30
6. 17			30			30
6. 18			30			30
6. 19			30			30
6. 20	2,000		2,030	-2,000		30
6. 21			2,030	-2,000		30
6. 22			2,030	-2,000		30
6. 23		2,000	30			30
6. 24			30			30
6. 25			30			30
6. 26			30			30
6. 27			30			30
6. 28			30			30
6. 29			30			30
6. 30			30			30
일적수합계			6,900			900

※ 계산방법

- 평잔금액 : 평잔조정후 잔고누계/예치기간(일) = 9,000,000/30 = 300,000원
- 적용이율 : 0.2%(평잔 50만원 미만)
- 이자액 : 405,000,000 × $\frac{1.0\%}{365}$ = 11,095원 → 11,090원(원단위 절사)

사. 해약거래시 이율

1)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의 해약시 : 약정금리 + 가산금리적용

⇒ 결산일 이후부터 해약 시점까지의 평균잔액이 5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만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지급처리

6. 기타

이 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

Ⅵ. 주니어우대저축예금

1. 의의

가. 어린이에 대한 조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맞춰 우체국예금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취학 전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

나. 자녀에 대한 조기 경제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마련의 일석이조 효과를 제공하는 주니어 전용 상품

다. 온라인 콘텐츠 등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여 부모 및 자녀의 관심 제고를 통한 신규고객 창출

2. 상품특징

가. 주요내용

1)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및 부가서비스 제공

2) 고객 취향에 부합하는 특화된 서비스 제공

3) 상품특색을 반영한 통장명 자유선정기능 부여

나. 부가서비스 내용거래

1) 실적에 따른 기프트 문자쿠폰 제공

가) 제휴기관 : (주)M&Service(http://www.skmns.co.kr)

나) 제공사항 : 신규 가입 시 해당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기본제공 및 거래실적에 따라 서비스 차등 지급

o 최초 가입 후 1년까지 서비스 제공

o 서비스의 유효기간 : 쿠폰제공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쿠폰등록일로부터 90일이내 사용되어야함

다) 제공방법 : 기프트문자 쿠폰번호를 SMS로 제공

라) 쿠폰등록방법

o http://www.giftmunja.co.kr 사이트의 쿠폰등록창에 쿠폰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등록하기 (회원가입 필요없음)

마) 쿠폰제공기준

(단위 : 개)

구 분	저축예금	자유적금
최초가입	1	1
자동이체	-	1
펀드로 자금이체시	1	-
생 일	1	1
어린이날 또는 학생의 날	1	1
T-money 충전시	4(분기당 1)	-
합 계	8개	4개

※ 어린이날 및 학생의날 지급기준

만 12세 이하 : 어린이날(5월 5일), 만 12세 초과 ~ 만 19세 미만 : 학생의 날(11월 3일)

※ T-money 충전 : 분기당 1회 이상 자동충전 실적이 있을 시 기프트문자쿠폰 1개 제공, 해당 지급기준은 금융IC카드 시행시 제공 실시됨

2) 어린이 적립식 펀드 자동납입 약정 가능 : 사전 약정으로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일정시기별 일정금액을 제휴증권사 어린이 전용 펀드 상품으로 이체
3) 통장 정리시 월별 입금액 및 출금액의 합계 표기
4) 신규 가입 시 현금IC카드 초회 발급 수수료 무료 제공, T-money 기능을 탑재한 금융IC카드 발급을 추진
※ 금융IC카드 발급시 고객에게 수수료 징수
5) 우체국자동화기기에서 우체국카드로 출금시 영업시간 외 수수료(500원)를 분기별 10회 면제
※ 영업시간외 : 영업시간(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4:00)을 제외한 시간 및 공휴일 (2007.06월 기준, 자동화 기기이용기준 변경시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

3. 상품내용

가. 상 품 명 : 주니어우대저축예금
나.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다. 저축방법 : 수시입출금식
※ 현금카드(제휴 및 우체국 체크 카드)로 인출 가능하며 가계수표는 연계 제외
라. 가입금액 : 제한없음
마. 세제관계 : 일반과세
바. 제한사항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4.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 적수 누계액 × 이율(%)/365(10원미만 절사)
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첫째주 토요일
다. 통장기재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
라. 적용이율
1) 이율
-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고객은 저축예금과 동일한 0.2% 이율
- 10만원 이상인 고객은 가산이율 연 0.3%P을 추가 적용
- 우체국 어린이 전용보험료 자동이체 시 연 0.1%p 추가 적용
2) 평균잔액 산출공식
가) 평균잔액계산기간 = 전기 결산기준일부터 당기 결산기준일까지
나) $\frac{\Sigma \text{평균잔액계산기간 매일잔액}}{(\text{평균잔액계산기간 일수})}$
마. 이율의 적용 : 동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 적용

5. 기타 업무처리시 참고자료

가. 거래실적에 따른 무료 문자서비스 제공서비스
o 가입고객에게 제공할 무료문자서비스는 발주서를 통해 (주)M&Service에게 발주하여 구매하며, 최초 가입 후 1년간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 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SMS문자서비스로 발송
나. 영업시간외 출금 수수료 분기별 10회 면제서비스
o 결산이자 시점에 통장인자
(예시) 결산일 9월 1일 : 우체국자동화기기에서 영업시간 외 출금수수료 10회 면제 : "9.2일부터

12.1일까지”

다.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주니어우대자유적금으로 자동이체를 설정할 경우 주니어우대자유적금의 이율에 우대이율(0.1%) 적용

라. 고객이 “어린이 적립식 펀드”의 가입 의사가 있을 경우에 수익증권 계좌개설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계좌개설 대행 이외의 업무는 해당 증권사에서 이뤄짐 (단, 어린이 적립식 펀드로 자동이체 설정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은 주니어우대저축예금으로 한정함)

Ⅶ. 2040+α 저축예금

1. 의의

가. 증권사의 CMA, 은행의 고금리 요구불예금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체국 요구불예금 고객 이탈이 우려되고 시중은행에 비해 요구불예금의 비중이 낮음

나. 20~40대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등의 편익 제고와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시입출식 예금상품 개발

2. 상품특징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 고객,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등에게 최고 연 1.0%p 우대금리 및 전자금융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제한없음 [1인 1계좌]

나. 가입금액 : 제한없음

다. 가입기간 : 제한없음

라. 적용금리

1) 기본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고시된 기본금리

2) 우대금리 : 매 결산기별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1.0%p

4. 우대금리적용방법

항 목	고객군별 우대금리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 급여이체 시	0.3	-	-	-
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0.3	0.3	0.3	0.3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시	-	0.2	0.2	0.2
4.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시	-	0.2	0.2	-
5. 아파트 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	-	0.2	0.2
6. 결산기 평잔 100만원 이상 시	0.3	0.3	0.3	0.3
7.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0.1	0.1	0.1	0.1
8. 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	0.2	0.2	0.2	0.2
9.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0.1	0.1	0.1	0.1

가. 우대금리는 매 결산일(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에 각 우대금리 조건을 전산으로 재확인하여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변동된 우대이율을 적용

1) 급여이체 시

가) 매 결산일 현재 동 예금으로 아래 조건을 갖춘 자

-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 이체 시
- 급여이체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2)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및 이용 시

o 매 결산일 현재 동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으며 이용 실적이 있는 자

- 약정을 한 해당 결산기간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다음 결산기간부터는 이용 실적이 확인되어야 우대금리 제공

3) 금융결제원 CMS 모계좌 약정, 급여이체 모계좌 약정, 아파트관리비 모계좌 약정 시

o 매 결산일 현재 동 예금으로 해당 모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자

4) 동 예금으로 자동이체 2건 이상 약정 시

o 매 결산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자

- 공공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우체국 창구에서 약정한 자동이체
- 우체국 적금 또는 보험 가입 시 약정한 자동이체

5)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시

o 매 결산일 현재 동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자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o 우체국 예금, 보험 및 우편우수고객은 매 결산일 현재 우수고객인 자

o 우수고객등급은 우수고객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0.7월 현재)

- 예금 : S-MVP, MVP, VIP, GOLD
- 보험 : I-Top, I-Love, I-Friend
- 우편 : SVIP, VIP, 우대, 우수

o 우편 우수고객은 가입시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증빙서류를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o 우편물류시스템 → 우편 D/W → 고객분석 → 고객등급 → 고객별등급현황에서 "고객등급"을 " SVIP~우수 "까지 조회 후 총괄국 기준으로 확인("상품"은 일반통상, 특수통상, EMS, 택배 모두 가능)

5.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 적수 누계액 × 이율(%)/365(10원미만 절사)

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 :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

다. 통장기재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

라. 이율의 적용 : 동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

6. 부가서비스

가. 급여이체(“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기준에 준함)

1) 급여이체 약정을 한 개인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

가) 우대서비스 주요내용

구 분		우대서비스
수수료 면 제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급여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함)	전액 면제
	인터넷・폰・모바일(IC칩/VM)뱅킹 타행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CD/ATM 이용수수료 (우체국기기에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 ・CMS・가상계좌 이체에 한함)	전액 면제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	전액 면제
	통장 재발행	전액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전액 면제
	제증명서 발급	전액 면제
금리 우대	2040+α자유적금	0.1%
	2040+α정기예금	0.1%
	챔피언정기예금	가입기간별0.05%~0.15%
	퇴직금담보 계좌대월 금리	최고 0.2%

나)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급여우대 서비스 적용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 적용 (단, 급여이체 약정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조건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제공)

2) 급여이체 모계좌를 통한 펌뱅킹 이용수수료 면제

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1) 전월 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 면제 서비스 차등 제공

2) 우대서비스 내용

수수료 면제	대상별 우대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고객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2040+α저축예금 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함)	전액 면제	전액 면제
2. 인터넷・폰・모바일(IC칩/VM)뱅킹 타행송금수수료	전액 면제	월 10회 면제
3. CD/ATM 이용수수료	전액 면제	전액 면제

(우체국기기에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 ·CMS·가상계좌 이체에 한함)		
4.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	전액 면제	전액 면제
5. 통장 재발행	전액 면제	전액 면제
6. 자기앞수표 발행	전액 면제	전액 면제
7. 제증명서 발급	전액 면제	전액 면제

3)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월평균 잔액을 산정하여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익월 5일부터 익익월 4일까지 우대서비스 적용 (단, 신규 가입일부터 최초 3개월까지는 실적에 상관없이 우대 서비스 제공)

4) 부가서비스의 적용기준 및 우대서비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가. 이 예금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사용

나.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

다. 이 예금은 개인에 한하여 가계수표 약정이 가능

8.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축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함

Ⅷ.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

1 의의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압류방지 전용 통장」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저 소득층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장애인연금법 제19조, 장애인복지법 제82조, 기초노령연금법 제13조에 의해 기초생계비는 압류할 수 없으나, 생계비가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면 압류를 승인

※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압류방지 전용 통장 도입 추진(24개 금융기관 참여)

2. 상품특징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며, 관련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

3. 상품내용

가.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나. 가입대상 :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는 자

다.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 제한 없음(가입 시 0원)

라. 적용이율

예금평잔	기본이율	우대이율	이율 합계	비 고
10만원 미만	연 0.5%	-	연 0.5%	결산기간 중 평균잔액 기준
10만원 이상	연 0.5%	연 0.5%p	연 1.0%	

마. 부가서비스

1)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IC칩/VM/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단,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제외)

2)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CD/ATM을 이용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3)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4)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4 예금가입

가. 수급자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

대상자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노령연금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확인 증명서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 확인증명서

나.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통장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서명 표시란)에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 수급자는 급여계좌 변경 요청 시 급여보장기관(해당 시군구)에「압류방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장기관에서 급여계좌 변경을 등록한 이후부터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급여가 지급됨

5. 입금제한

가. 이 예금의 입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금지 수급금(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등에 한하며, 그 외에는 입금할 수 없음

1) 급여지급 보장기관(해당 시군구)이 압류방지 급여코드를 부여한 수급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단, 이 예금의 결산이자는 입금 가능)

2) 수급급여 이외의 자금은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자/타행송금 등을 통해서도 이 예금으로 입금이 제한

나. 이 예금이 아닌 일반 요구불계좌에 압류방지 급여코드가 표기되어 보장기관에서 입금 의뢰하면 입금 불가

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타 기관과 연계하여 입금이 안 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해당기관과 원인 확인 후 처리토록 하고 이 예금의 입금제한 특징을 재공지함

6. 거래제한

가. 이 예금의 출금은 통상의 입출식예금과 동일하되, 금융서비스의 연계계좌(모계좌)로는 일부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1) 예금담보대월 등 통장대출의 모계좌로 사용불가

2) 인터넷가입상품의 모계좌(해지금 수령계좌 등)로 사용불가 등

나. 이 예금은 (가)압류,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없음

7.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 적수 누계액 × 연이율(%)/365(10원미만 절사)

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 :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은 말일

다. 통장기재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

라. 이율의 적용 : 동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 적용

8.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축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이 예금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사용함

나.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됨

다.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Ⅸ. 기업든든MMDA통장

1. 의의

가.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고객의 확대를 통해 우체국예금의 고객기반을 다변화하고, 요구불성 예금 증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 필요

※ 총수신고 기준 우체국예금의 기업고객 비중은 20.6%로 시중은행(58.7%) 대비 1/3 수준

나. 법인, 단체, 금융기관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금리경쟁력 및 고객 편의성을 갖춘 기업 전용 MMDA상품 개발·보급 추진

※ 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

2. 상품특징

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단기간을 예치하더라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기업 전용 고수익 상품
나. 예치금액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며, 추가입금 및 출금 가능

3. 상품내용

가. 상 품 명 : 기업든든MMDA통장
나.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다. 가입대상 : 법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및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사업자(단, 임의단체는 제외)
라. 가입방법 : 우체국 창구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가입가능
마. 최초 가입금액 및 가입한도 : 제한 없음
바. 가입기간 : 제한없음
사. 적용이율
1) 매일 최종 잔액 기준으로 고시금리 및 본부금리를 적용

구분	이율	주요내용
10억원 미만	고시금리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예금의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고시금리 적용
10억원 이상	본부금리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예금의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본부금리 적용

※【고시금리】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체국에 고시한 금리
※【본부금리】본부에서 시중금리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정한 금리로, 금융단말 시스템(1525-이율정보조회)을 통해 제시(단, 매일 잔액 10억원 이상에 한해 적용)

2) 예외적으로, 입금액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건별로 특별금리 적용가능

구분	이율	주요내용
입금액 기준 300억원이상	특별금리	-예금건별로 예금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특별금리 적용 -입금건별로 최초 부여된 특별금리는 입금일로부터 30일까지만 적용되고 31일부터는 특별금리 재조정

※【특별금리】입금건별로 300억원 이상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승인한 금리를 적용
※ 우체국은 특별금리 적용건에 대해 예치기간 30일 초과가 예상되면 사전에 특별금리 재조정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함

아. 인출기준 :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선입선출방식)
자. 우체국 창구 및 인터넷뱅킹(www.epostbank.kr)을 통해 가입 가능
차. 기타 거래 관련
1) 1계좌 내에서 선입선출방식으로 자유로운 추가입금 및 인출 가능
가) 1계좌 내에서 고시금리, 본부금리, 특별금리가 모두 적용 가능
나) 특별금리 적용받는 경우에도 추가입금 할 수 있게 하고 1계좌 지속 사용 (단, 추가입금 건별로 특별금리 결정)
2) 가입 계좌수는 제한없음

4 부가서비스

가. 전자금융 약정
나. 현금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
다. 자동이체약정

5.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법 : 예입 후 7일이 경과한 이 예금의 매일 최종 잔액에 대하여 고시된 금액별 해당 이율을 적용하여 매일 이자를 계산
나. 이자계산 기준일 : 매월 넷째주 토요일(12월은 말일)
다. 이자계산기간 :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
라. 원가일 : 이자계산 기준일(12월은 말일) 다음날
마. 이율의 적용 : 이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

6. 기타사항

가. 이 예금은 매일 예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별도 전산관리 하므로 기산일 거래가 불가함
나. 이 예금은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사용함
다.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됨

7.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축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8.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X. 우체국 청춘연금통장

1. 개발배경

○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른 연금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해 연금 수급 전용 요구불예금인 “우체국청춘연금통장”상품 개발

2. 상품특징

○ 4대 연금 수급자에 대해 최고 3.0% 금리제공 및 연금이체 실적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 이용수수료 면제 등 부가서비스 제공과 계좌대월 약정 가능

3. 상품내용

○ 상 품 명 : **『우체국청춘(青春)연금통장』**

○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통장)

○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 제한없음

○ 적용이율 : 최고 연 3.0%

- 기본이율 : 저축예금 금리(연 0.2%)

- 우대이율 : 연금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최고 연 2.8%p)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5">내 용</th></tr>
<tr><td rowspan="2">연금
금리(Ⅰ)</td><td colspan="2">월평잔 50만원 이하</td><td colspan="2">월평잔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td><td>월평잔 100만원 초과</td></tr>
<tr><td colspan="2">0.8%p</td><td colspan="2">1.0%p</td><td>1.2%p</td></tr>
<tr><td>연금
금리(Ⅱ)
최고
(1.1%p)</td><td colspan="5">o 우체국 체크카드 발급 후 동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후 이용실적
<table><tr><td>월 30만원 이상</td><td>월 40만원 이상</td><td>월 50만원 이상</td><td>월 60만원 이상</td><td>월 70만원 이상</td></tr><tr><td>0.1%p</td><td>0.2%p</td><td>0.3%p</td><td>0.4%p</td><td>0.5%p</td></tr></table>o 동 계좌를 통해 우체국 적립식예금으로 자동이체 실적
<table><tr><td>월 30만원 이상</td><td>월 40만원 이상</td><td>월 50만원 이상</td><td>월 60만원 이상</td><td>월 70만원 이상</td></tr><tr><td>0.2%p</td><td>0.3%p</td><td>0.4%p</td><td>0.5%p</td><td>0.6%p</td></tr></table></td></tr>
<tr><td>요구불
첫고객
금 리</td><td colspan="5">o 우체국 요구불계좌 처음 개설한 경우 0.5%p
* 단, 가입일로부터 1년간 적용하되, 익월 말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을 체크 후 적용</td></tr>
</table>

※ 우체국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우체국청춘연금통장 약관 등에 의해 금리 부여조건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음

4. 우대이율 적용방법

가. 우대이율은 매 결산일(매월 넷째 토요일)에 각 우대이율 조건을 전산으로 재확인하여 당월 결산기 동안의 매일 잔액에 대해 적용

1) 연금금리(Ⅰ)

o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전월 월평잔고 실적이 우대이율 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당월 결산기 동안 적용

※ 4대 연금이체 실적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일괄 입금되거나 입금 내역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의 글자가 들어 있는 경우에만 실적으로 본다

2) 연금금리(Ⅱ)

① 우체국체크카드 이용

o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동 계좌를 우체국체크카드 결제계좌 지정하고 후 전월 이용 실적(누계액)에 따라 당월 결산기 동안 우대이율 적용

② 우체국적립식예금 이용

o 동 계좌로의 연금이체 실적이 있고 동 계좌를 우체국예금적립식상품의 자동이체계좌로 지정하고 월 자동이체금액(누계액)에 따라 당월 결산기 동안 우대이율 적용

3) 요구불 첫고객 금리

o 우체국 요구불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가입일로부터 1년간 우대금리 적용하되 가입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는 연금이체 실적과 관계없이 적용하고 익익월부터 연금이체 실적을 체크 후 적용

* 첫 고객 제외대상

- 활동계좌, 정리계좌 중 요구불계좌를 1개 이상 보유한 고객
- 1년 이내 우체국 요구불계좌 해지 후 재가입한 고객

단, 국고 귀속된 요구불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첫 고객임

5.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o 매일의 최종 예금 잔액에 대하여 예금액별 해당이율로 매일 이자를 계산하여 월 단위로 통장에 기재

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결산일) : 매월 넷째 토요일

다. 통장기재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

라. 이율의 적용

o 기본이율 : 이율 변경된 날부터 바뀐 이율 적용

o 우대이율 : 전월 실적에 따라 매월 변동 이율 적용

< 예 시 > 10월 결산기준
① 정상계좌인 경우
o 결산기간(9. 25 ~ 10. 22)의 매일 잔액에 대해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 (9월 실적 적용)
o 통장 기재일 : 10. 23(매월 넷째주 토요일 익일)
② 결산일 기준 당월에 해약 : 10. 31
o 10. 23. ~ 10. 31일까지 매일 잔액에 대해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9월 실적 적용)
o 해약 시점에 계산하여 지급
③ 결산일 기준 익월에 해약 : 11. 02
o 10. 23. ~ 11. 02일까지 매일 잔액에 대해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10월 실적 적용)

6. 부가서비스

가. 수수료 면제

조 건		서비스 내용
Ⅰ	전월 연금 이체 실적	o CD/ATM 이용수수료 면제(우체국자동화기기에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에 한함) o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 타행 수수료 면제 o 현금IC/ONE PLUS카드 발급 면제
Ⅱ	전월 연금 이체 실적 + 연금금리(Ⅱ) 실 적	o CD/ATM 이용수수료 면제(우체국자동화기기에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에 한함) o 전자금융(인터넷, 모바일 등) 타행 수수료 면제 o 현금 IC/ONE PLUS카드 발급 면제 o 우체국간 송금수수료 면제(동 계좌를 통한 거래에 한함) o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 수수료 면제

1) 전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조건에서 정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당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부가서비스 적용
2) 신규가입자의 경우는 가입일부터 익월 말일까지 조건에 상관없이 부가서비스(Ⅰ)을 제공
3) 부가서비스의 적용기준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계좌대월약정 가능

7. 기 타

가. 이 예금은 수시 입출식 통장을 사용한다.
나.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8.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9.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XI.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

1. 개발배경

○ 고령화 사회 진입등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맞추어 신규 고객 창출 및 요구불예금 증대

○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연금수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전용통장을 개발하여 전 국민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경제활동 지원 도모

※ 압류금지 관련 근거

-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제2항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지급된 급여의 압류 금지 금액] : 제58조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함은 150만원을 말한다.

2. 상품특징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한해 입금이 가능하며, 관련 법에 따라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국민연금 전용통장

※ “관련 법”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58조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를 의미

3. 상품내용

가.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나.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자(1인 1계좌)

다. 가입금액 : 가입시 금액은 0원이며 잔액 제한 없음

라. 가입기간 : 제한 없음

마. 입금한도 : 국민연금 수급액 입금 건별 150만원 이하

※ 관련 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보호금액 변경시 입금 건당 금액한도도 변경됨

예)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된다면, 이 예금의 입금한도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변경됨

※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건별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전액 입금되지 않으니, 고객은 이 예금 외의 일반통장을 수급통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등록 필요

바. 출금한도 : 제한 없음

사. 적용이율

예금평잔	기본이율	우대이율	이율 합계	비 고
30만원 미만	연 0.1%	-	연 0.1%	이자계산기간 중 평균잔액 기준
30~50만원 미만	연 0.1%	연 0.1%p	연 0.2%	
50만원 이상	연 0.1%	연 0.2%p	연 0.3%	

아. 우대서비스

1)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인터넷·폰·모바일(IC칩/VM/스마트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 면제(단,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는 제외)

2)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 우체국 CD/ATM을 이용한 시간외 현금인출, 우체국간 계좌이체·CMS·가상계좌이체 수수료 면제

3)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4)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4. 예금가입

가. 수급자의 압류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

나. 우체국 국민연금 안심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통장 표제부(예금주, 계좌번호, 인감/서명 표시란)에 「압류금지 전용통장」임을 표시

※ 수급자는 수급계좌 변경 요청 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금지 전용통장 표제부 사본」을 제출하여야하며, 공단에서 수급계좌 변경을 등록 후 「압류금지 전용 통장」으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지급됨

※ 수급계좌 변경 요청시에는 수급일 5영업일 이전 등록 완료시 당월 수급액 입금가능
(국민연금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입금제한

가. 이 예금의 입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수급액으로 입금한도는 건별 150만원 이하이며, 이외에는 입금할 수 없음

※ 국민연금 수급금액이 건별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전액 입금되지 않으니, 고객은 이 예금 외의 일반통장을 수급통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등록 필요

1) 국민연금공단이 압류금지 급여코드를 부여한 급여에 한하여 입금이 가능(단, 이 예금의 결산이자는 입금 가능)

※ 국민연금급여 중에도 지급가능급여는 국민연금 노령·장애(1~3급)·유족연금이며,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장애일시보상금(장애4급)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안됨

2) 국민연금 수급액 이외의 자금은 인터넷・폰・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 자/타행송금 등을 통해서도 이 예금으로 입금이 제한

나. 이 예금을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나 대금납부 목적의 모계좌로 지정하여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에 따라 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납부 등 별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

6. 거래제한

가. 이 예금의 출금은 통상의 수시입출식예금과 동일하되, 금융서비스의 연계계좌로는 일부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1) 우편대체 계좌대월의 계좌로 사용불가
2) 인터넷가입상품의 모계좌(해지금 수령계좌 등)로 사용불가 등

나. 이 예금은 (가)압류, 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을 할 수 없음

7.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 적수 누계액 × 연이율(%)/365(10원미만 절사)

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은 말일

다. 통장기재일(지급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라. 이율의 적용 : 동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 적용

8.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축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기타사항

가.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함

나. 이 예금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사용함

다. 이 예금은 캐쉬백 등의 입금제한에 따라 우체국 체크카드 및 제휴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상품출시 현재는 카드 발급이 불가하나 국민연금전용카드 추진 예정

라.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됨

마.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Ⅻ.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1. 개발배경

○ 대학생 등 젊은 잠재 고객층 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간 특화 금융상품 출시 경쟁 심화

○ 젊은 층 전용 특화 금융상품 출시로 우체국 미래 잠재 수익 경쟁력 기반 확보

2. 상품특징

○ 우체국 미래 잠재고객을 우대하는 Young 전용 타깃 상품으로서 젊은이들의 금융 수요를 반영한 특화 상품

○ 대학생 등 젊은 층은 자동화기기 인출 및 이체 수수료 민감도가 큰 바, 수수료 면제조건을 필수적으로 적용

- 특히, 접근성 극복을 위한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면제

3. 상품내용

가. 상 품 명 :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나. 예금종류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다.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35세 이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라. 가입채널 :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마. 가입금액

o 우체국창구 : 제한없음

o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 1원 이상 제한없음

바. 가입기간 : 제한없음

사. 적용금리 : 연 0.2%

아. 우대서비스 : 수수료면제

1) 우대조건

기본우대 조건	o 아래 항목에서 **1개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 휴대폰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적금 등 계좌 간 자동이체 약정 · 유지 - 전자금융 정기예금 또는 적금의 모계좌로 지정 · 유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 1회 이상 이용 **※ 단,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기준에 따라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우체국의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추가우대 조건	o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우체국 Young利한 체크카드』**10만원 이상**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2) 우대서비스 : 수수료면제 혜택

기본우대

기본 수수료면제 혜택 제공

구분			수수료	우대서비스
전자금융 타행즉시이체			400	**면제**
우체국 자동화기기 이용	현금인출	시간 외	500	**면제**
	타행계좌이체	시간 내	500	**면제**
		시간 외	600	**면제**

※ 대학생일 경우 이외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수수료 면제(별첨1)

추가우대

기본우대 혜택 이외에 추가 혜택 제공

구분			수수료	우대서비스
타금융기관[주1] 자동화기기 이용	현금인출	시간 내	600	**월 5회 면제**
		시간 외	800	

※ 주1 :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회사
(단,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자동화기기 제외)

3) 우대서비스 제공기간
o 신규 가입시 가입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는 실적에 상관없이 제공
o 우대서비스는 고객 연령 만 35세까지 적용
단, 가입시부터 만 35세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2년간 적용

4) 우대서비스의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 적수 누계액 × 이율(%)/365(10원미만 절사)
나.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 매년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
다. 통장기재일(결산일) : 정기이자계산 기준일 익일
라. 이율의 적용 : 동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

5. 기 타

가.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함
나. 이 예금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사용함
다.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됨
라. 이 예금은 계좌대월 약정이 가능함

6.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저축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7.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참고 대학생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범위('12.9.10 현재)

o 『우체국 금융수수료 면제』 기준에 준함

- 대학생 : 내국인으로 국내 및 교육과학기술부 인가대학의 학생
- 제출서류 및 유효기간 : 재학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년

수수료 구분					수수료	면제내역
예 금	창구이용송금		10만원 이하		무 료	
			10만원 초과		1,000원	면제
	우체국기기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	영업시간내		무 료	
			영업시간외		500원 ※ 5만원 이하 또는 연속인출거래시 250원	면제
		자동화기기(CD/ATM) 계좌이체(타행)	10만원 이하	영업시간내	500원	면제
				영업시간외	600원	면제
			10만원 초과	영업시간내	750원	면제
				영업시간외	1,000원	면제
	창구 CMS 입금				1,000원	면제
	우체국간 CMS계좌이체(자동화기기/전자금융)				500원	면제
	가상계좌 창구입금		10만원 이하		무 료	
			10만원 초과		1,000원	면제
전자금융	인터넷/폰/모바일뱅킹(이체)		1건당		400원	면제
			1억원 초과		500원 추가	면제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이체				창구 자행/타행 기준	면제
금 융 공동망	창구 계좌이체(타행)		10만원 이하		600원	면제
			100만원 이하		1,000원	면제
			100만원 초과		3,000원	면제
자기앞 수 표	타행자기앞수표 즉시 지급(장당)				1,000원	면제
	수표사고신고(장당)				1,000원	면제
기 타 수수료	입출금통지서비스		정액형		800원	면제
			건별형		건당20원	면제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2,000원	면제
	예금잔액증명				2,000원	면제
	one plus 카드				3,000원	면제
	질권설정				5,000원	면제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1,000원	면제
	납부자 자동이체				300원	면제
우편대체	납입(송금)		10만원 이하		무 료	면제
			10만원 초과		1,000원	면제
국내환	통상환		100만원 이하		2,500원	면제
			100만원 초과		3,500원	면제
	온라인환		100만원 이하		3,500원	면제
			100만원 초과		4,500원	면제
	경조금배달서비스		100만원 이하		4,000원	면제
			100만원 초과		5,000원	면제
해외송금	국제환	1건당			8,000원	면제
	SWIFT	미화 50,000불 이하 (창구)			10,000원	면제
		미화 50,000불 이하 (인터넷)			5,000원	면제

Ⅷ. 우체국 e-기업통장

1. 개발배경

○ 우체국예금의 개인고객 중심 성장 및 편중 현상 심화로 시중은행 대비 시장 경쟁력 저하 우려

○ 법인전용 기업뱅킹 활성화 및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고객 확대를 통해 우체국 예금의 고객기반 대변화 추구

2. 상품특징

기업 인터넷뱅킹 전용 기업자유예금으로 단기 소액예금에도 높은 금리를 받는 기업고객 전용 통장

3. 상품내용

가. 상 품 명 : **우체국 e-기업통장(가칭)**

나. 예금종류 : 기업자유예금

다. 가입대상 : 법인, 개인사업자, 고유번호(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라. 가입 및 해지 : 우체국창구, 인터넷뱅킹

마. 가입금액

o 우체국창구 : 제한없음

o 인터넷뱅킹 : 1원 이상 제한없음

바. 가입기간 : 제한없음

사. 적용금리 : 매일의 최종 잔액 기준으로 차등금리 적용

구 분	이 율
7일 미만	연 0.1%
7일 이상 100만원 미만	연 0.5%
7일 이상 100만원 이상	연 1.0%

아. 인출기준 :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선입선출방식)

자. 부가서비스

1) 입출금 거래내역 최장 10년까지 조회 가능

2) 자동이체 약정, 카드(현금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제휴카드) 발급

3) 스윙서비스(추후 예정) : 고객이 정한 금액이 법인전용 MMDA상품으로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

4) 부가서비스의 조건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4.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법 : 이 예금의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기간 및 금액별 해당 고시이율을 적용하여 매일의 이자 계산

나. 이자계산 기준일 : 3, 6, 9월 셋째 토요일, 12월 말일

다. 이자지급일 : 이자계산 기준일 다음날

라. 이율의 적용 : 이 예금의 이율이 바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바뀐 이율을 적용

5. 거래방법

가.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입금 및 지급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채널(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나. 다음 사유 발생 시 우체국 창구에서 카드에 의한 지급 또는 무통출금이 가능하다.
1) 고객의 요청
2) 전산장애로 인한 전자금융채널 거래 불가능
3) 기타사유로 인한 창구운영의 불가피

6. 카드발급

가. 인터넷뱅킹을 통한 신규 :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카드, 우체국체크카드, 제휴카드를 발급하도록 안내

나. 창구를 통한 신규 : 상품 가입 시 현금카드, 우체국체크카드, 제휴카드를 발급하도록 권유함

7. 기 타

가.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가입함

나. 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창구에서 가입 시 가입증서를 통장대용으로 교부함

다. 이 예금은 매일 예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고 별도 전산관리 하므로 기산일 거래가 불가함

라.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8.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9.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제 2 절 거치식 예금

Ⅰ. 정기예금

1. 의의

정기예금이란 고객이 일정액(10,000원)이상의 금전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우체국에 예치하고 그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우체국은 예치한 금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붙여 기간이 끝났을 때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기한부 예금으로 우체국예금종목 중 가장 대표적인 저축성예금으로서 그 성질은 기한부 소비임치계약임

2. 상품특징

이 예금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기간(만기일)전에 해약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같이 예치기간 내 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대신 예금주에게는 고율의 이자가 지급되므로 유리한 반면 우체국측으로 보면 이자부담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면에서 장기적이며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어 중요시 되는 예금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개인, 법인등 제한없음
나. 가입기간 : 1개월~3년 (월단위)
다.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라. 만기일 : 정기예금은 일정액의 금전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입하는 기한부 예금이므로 그 끝나는 날이 언제인가를 확실히 하여 두어야 함
  1) 이 끝나는 날을 “만기일”이라 함 :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하였을 때
    o 그 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응당일
    o 최종월(만료되는 월)에 응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기일로 함
마. 예치한도 및 예입단위
  1) 최저예치한도 : 10,000원 이상
  2) 최고예치한도 : 제한없음
  3) 예입단위 : 원단위
바. 이율
  1) 만기이율 : 이율표 참조
  2) 만기후 이율
    가) ’98. 1. 15까지 이전 예입분
      o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 가입당시 약정이율
      o 만기일로부터 1년초과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2
    나) ’05. 3. 22 이전 예입분
      o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2
      o 만기일로부터 1년초과 : 가입당시 보통예금이율
    다) ’05. 3. 22 예입분 부터
      o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내 : 만기일당시 해당예금의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o 만기일로부터 6개월초과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이율

4. 통장 및 서식의 사용

정기예금통장 및 관련서식 사용

5. 적용범위

가. 정기예금에 관하여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과 본 편람이 정한 바에 따름
나. 이 예금의 취급절차는 제1장의 예금총칙을 준용함

6. 가입

가. 청구금액, 예치기간, 예입일 등이 정당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나. 월이자 자동이체 : 매월 월이자에 대한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계좌간 이체 약정거래
1) 우체국 타인명의 계좌로도 자동이체 가능
2) 월이자 입금계좌는 변경 가능

7. 지급

가. 지급이란 정기예금에 예치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하는 바, 정기예금에는 일부지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급은 곧 해약(월별 이자지급은 제외)을 의미함
나. 정기예금의 지급은 만기일이 도래되었을 때 지급하는 “만기해약지급”, 만기일이 도래되지 않았을 때의 “중도해약지급”, 만기일이 경과되었을 때의 “만기경과후해약지급”, 그리고 예치기간동안 매월이자를 지급하는 “월별이자지급”으로 구분 (정기예금 예치금액중 수표에 의한 입금액이 부도지급의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처리)

8. 이자계산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단리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 단수법에 의하여 절사

9. 이자의 종류

가. 만기해약
1) 만기해약이자는 당해 정기예금 만기일에 정기예금 원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를 말함
2) 이미 월별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월 지급이자를 정산하고 차액을 지급함
3) 산출방식

o 이자액=원금 × 약정이율(연) $\times \frac{\text{예치일수}}{365}$

4)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로 전영업일 해약시 모든 우대금리 적용하면서 하루에 대한 이율만 차감하여 지급함

나. 중도해약
1) 정기예금은 기한부예금이므로 만기일이 되어야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도래전에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당초 예입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경과일수를 계산하여 그 예입기간에 따라 약정당시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o 이자액=원금×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2) 이미 월별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지급한 월지급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하여 환입하거나 차액을 지급

o 차감지급액=원금－기지급월별 이자 + 중도해지이자

다. 만기경과후 해약

1) 만기후 이자는 만기일로부터 예금지급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후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함

2)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만기후 이자지급은 공휴일에 대하여는 당초 약정이율로 지급함

3) 만기후 이율

가) '98. 1. 15까지 이전 예입분

o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 가입당시 약정이율

o 만기일로부터 1년초과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2

나) '05. 3. 22 이전 예입분

o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2

o 만기일로부터 1년초과 : 가입당시 보통예금이율

다) '05. 3. 22 예입분부터

o 6개월이내 : 만기일당시 해당예금의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o 6개월초과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이율

라) 산출방식

o 만기경과후 1년(6개월)이내 해약

- '98. 1. 15까지 가입분 : 이자액=(원금×약정이율×약정기간)+(원금×약정이율× $\frac{\text{만기경과일수}}{365}$)
- '98. 1. 16 이후 가입분 : 이자액=(원금×약정이율×약정기간)+(원금×약정이율의 1/2× $\frac{\text{만기경과일수}}{365}$)
- '05. 3. 22 이전 예입분 : 이자액=(원금×약정이율×약정기간)+(원금×약정이율의 1/2× $\frac{\text{6개월만기경과일수}}{365}$

o 만기경과후 1년(6개월) 초과해약

- '98. 1. 15까지 가입분 : 이자액=(원금×약정이율×약정기간)+(원금×약정이율)+(원금× 약정이율의 1/2 × $\frac{\text{만기후1년초과일수}}{365}$)
- '98. 1. 16 이후 가입분 : 이자액=(원금×약정이율×약정기간)+(원금×약정이율의 1/2)+ (원금 × 보통예금이율 × $\frac{\text{만기경과후1년초과일수}}{365}$)
- '05. 3. 22 예입분부터 : 이자액=(원금×약정이율×약정기간)+(원금×약정이율의 1/2)+(원금 × 보통예금이율 × $\frac{\text{만기경과후6개월초과일수}}{365}$)

라. 월별 이자지급

1) 정기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매월별 계약응당일 이후에 지급함

2) 다만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함

3) 월별이자액=원금×약정이율(연) × $\frac{1}{12}$

마. 이자지급방법

1) 월이자지급식 : 매월별 계약응당일 이자지급
2)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 지급

바. 중도이자지급

1)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전 2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2) 중도이자지급이 있었던 경우에 해지 시 지급이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

10. 이자계산시유의사항

가. 만기경과 후에는 월별이자를 지급할 수 없고 해약 시 일괄지급 처리
나. 월별이자 지급 후 중도해약시에는 기지급 이자액은 회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반환한 후 중도해약 이자 계산
다. 정기예금의 월별 이자지급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직접지급 또는 자동이체 약정시 요구불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지급

11. 정기예금종합통장

가. 계좌구성은 정기예금 1통장 5계좌로 구성되어 있음.
나. 통장 분실 신고 시 5계좌 중 1계좌만 사고 등록하면 모두 사고 등록됨
다. 비밀번호 변경은 5계좌 중 1개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모두 비밀번호가 자동 변경됨

12. 원천징수

제1장 예금총칙 중 원천징수 예에 따라 처리

Ⅱ 챔피언정기예금

1. 의의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의 욕구가 다양화되고 금융상품이 고객맞춤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고객편익에 중점을 둔 정기예금으로서 우체국 금융상품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금융사업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음

2. 상품특징

가. 가입기간을 일단위로 정할 수 있음
나. 확정금리형..또는 1년 확정형으로 가입할 수 있음
다.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중도에 경과기간 발생이자(월이자)를 2회까지 지급가능
라. 가입후 3개월 경과시 가입예금의 일부금액에 대하여 2회까지 분할해지 할 수 있음 (단,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함)
마. 인터넷으로 가입 및 해지할 수 있음
바.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가입 시 전환시 우대이율 0.05%P 이율적용
사. 생계형저축으로 가입 가능(창구와 인터넷으로 가입가능)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개인, 법인 등 제한없음
나. 가입기간 : 30일이상 3년이하 (연단위, 월단위, 일단위)
(단, 월단위 가입은 가입기간이 2월이상, 1년확정형 가입은 가입기간이 2년이상 가능)
다. 만기일
1)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하였을 경우
o 그 기간이 만료되는 월의 응당일
o 최종월(만료되는 월)에 응당일이 없을 때에는 그 월의 말일을 만기일로 함
2) 기간을 일(日)로 정하였을 경우
o 예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일수 해당일의 익일을 만기일로 함
라. 가입금액 : 1만원이상 원단위(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마. 세금우대 적용 :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로 가입가능
o 과세조건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바. 적용이율 : 이율표 참조

4. 통장 및 서식 통장의 개설

가. 정기예금통장 및 관련 서식을 사용.
나. 최초 가입시에는 통장표지 내면에 챔피언정기예금이라 인자되며, 1년 확정형으로 가입한 경우 약정이율란에 1년 확정형으로 인자됨

5.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단리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함 (단, 1년확정형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연복리로 이자계산함.)

나. 산출방식

$$\text{이자액} = \text{원금} \times \text{약정이율(연)} \times \frac{\text{예치일수}}{365}$$

6. 이율적용방식 및 이자지급방식

가. 이율적용방식 및 이자지급방식은 신규가입시 결정

나. 이자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함

다.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의 만기 후 이자지급은 공휴일에 대하는 당초 약정만기이율로 지급함

1) 이율적용방법

가) 확정금리형 :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만기까지 적용

나) 1년 확정형 : 가입일 및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의 1년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을 매 1년간 적용 (가입일로부터 매 1년 응당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영업일을 응당일로 하며,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을 응당일로 함)

다)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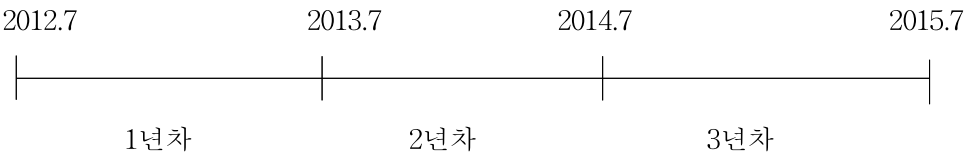

o 1년차 : 2012. 7. 1일 현재 1년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 적용

o 2년차 : 2013. 7. 1일 현재 1년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 적용

o 3년차 : 2014. 7. 1일 현재 1년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 적용

2) 이자지급방법

가) 월이자지급식 : 매월별 계약응당일 이후에 이자지급

나)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시 일시에 원리금 지급

3) 중도이자지급 가능

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만기일 전 2회까지 이미 경과한 기간(월단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월이자지급식 이율을 적용

나) 중도이자지급이 있었던 경우에 해지시 지급이자는 잔여기간에 대하여 만기일시지급식 이율 적용

다) 중도이자지급 청구시 사용서식은 “지급청구서”로 갈음하며 고객이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통장과 함께 제출하면 정당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중도이자지급”거래를 통하여 이자지급하고 통장 및 지급청구서에 중도이자지급임을 전산인자함.

라) 중도이자지급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일괄지급하여야 하며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의 일부지급은 불가

마) 예시 : 가입일 2004년 7월 1일, 가입금액 1,000만원, 가입기간 3년, 확정금리형,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2003년 9월 1일 중도이자지급 청구가 있는 때 (가입당시 3년만기이율 : 만기일시지급식 4.4%, 월이자지급식 4.1%) ☞ 이미 경과한 기간 14개월에 대하여 월이자지급식 이율 4.1%를 적용하여 이자 지급 (이자액 = 1,000만원×4.1%×경과일수/365)

7. 중도해지이율

가. 확정금리형 :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o 이자액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나. 1년 확정형

1) 1년 미만 :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2) 1년 이상 : 연단위 경과분 : 해당기간별 매 1년 기준 약정 만기이율 적용. 1년 미만 잔여기간 : 매년 금리적용시점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3) 예시 : 예금에 가입하여 2년 7개월이 경과한 후 중도해지한 경우 이자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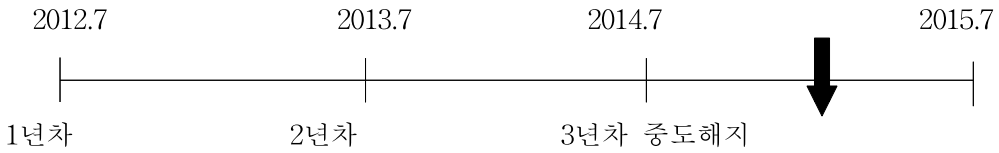

o 1년차 : 2012. 7. 1일 현재 1년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 적용

o 2년차 : 2013. 7. 1일 현재 1년만기 챔피언정기예금 만기이율 적용

o 잔여기간(7개월) : '04. 7. 1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8. 만기후이율

가. '05. 3. 22 이전 예입분

1)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 : 가입당시 약정이율의 1/2

2) 만기일로부터 1년초과 : 가입당시 보통예금이율

나. '05. 3. 22 예입분 부터

1) 만기일로부터 6개월이내 : 만기일당시 해당예금의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2) 만기일로부터 6개월초과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이율

9. 분할해지지급

가. 개 념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계좌번호와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됨 (단, 잔여예금은 10만원 미만으로 할 수 없음)

1) 예시 : 1,000만원 가입고객이 1회차 500만원을 분할해지 하는 경우, 잔여 분할해지 가능 금액은 400만원임 (1,000만원 × 90% − 500만원 = 400만원)

나. 분할해지조건 :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며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

다. 분할해지이율

1) 확정금리형 : 최초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2) 1년 확정형

가) 1년 미만 : 최초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나) 1년 이상 : 연단위 경과분 : 해당기간별 매 1년 기준 약정 만기이율 적용, 1년 미만 잔여기간 : 매년 금리적용시점의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금우대저축한도는 분할해지예금만큼 증액됨

1) 예시 : 세금우대로 2,000만원을 가입한 고객이 500만원을 분할해지하는 경우 ☞ 세금우대종합저축가입액은 1,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다른 상품으로 500만원 추가 가입 가능

마. 업무처리방법 : 고객이 통장과 함께 창구에서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해지지급거래”를 통하여 분할해지지급하며, 통장 및 지급청구서에 분할해지지급임을 전산인자함.

바. 유의사항

1)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한 계약기간, 만기일, 이율적용 등 약정조건은 최초 가입시와 동일함.

2) 중도이자지급 후 분할해지시에는 기지급이자액은 회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반환한 후 분할해지이자 계산

10.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시 약관을 교부하여야 함

Ⅲ.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1. 의의

챔피언정기예금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이라고 함

2.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개인(단, 우체국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가입하여 출금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o 출금계좌(모계좌) : 우체국 요구불예금계좌에 한함

나. 적용이율 : 이율표 참조

o 인터넷뱅킹으로 가입시 우대금리 적용

다. 이용시간 : 05:00 ~ 익일04:00(연중무휴) (단, 서비스이용시간은 금융공동망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가 입

1)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가입화면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음.

2) 모계좌(인터넷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된 요구불예금계좌)로부터 이체가능한 금액범위내에서 가입이 가능 (단,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계좌이체 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3) 가입거래시 계좌가 자동 신규개설되며, 가입금액은 모계좌에서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계좌로 자동 이체

4) 가입완료 후 팝업창에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가입내용이 나타남으로써 가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내용을 조회할 수 있음

마. 실명확인

1) 실명확인된 모계좌에서 출금되어 모계좌와 연결된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계좌가 신규 개설되고, 이자지급 및 해지지급(분할해지지급 포함)금액은 반드시 모계좌로 자동 이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실명확인은 생략 가능

가)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에 대하여 전화, 컴퓨터에 의해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 가능

나) 다만, 연결된 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또는 근거 계좌의 해지시 실명확인을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 (재경부 “금융실명제 종합편람” 1999년)

바. 해 지

1) 인터넷뱅킹으로 해지(분할해지 포함)하며 지급금액은 모계좌로 자동 이체됨

2) 창구에서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서를 작성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모계좌로 자동 이체함.

o 모계좌 자동이체후 창구에서 해당금액을 고객이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모계좌에서 지급청구하여야 함

3)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의 만기일은 휴일을 포함함. 따라서 만기일이 휴일이라하여 그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 적용 (2007년 8월 31일부터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사. 이자지급

1) 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한 경우 이자는 매월별 계약응당일에 모계좌로 자동 이체됨.

o 우체국의 타인명의 계좌로도 가능

o 월이자 입금계좌 변경도 가능 (단, 가계대월이 연계된 예금계좌는 변경불가)

2)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여 중도이자지급을 하는 경우 이자는 모계좌로 자동 이체됨

아. 증명서발급

1) 현재고증명 등 제반 증명서류는 우체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자. 유의사항

1)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 가입, 해지, 이자지급 등을 하는 경우 모계좌의 예금통장에 그 내용을 전산인자되도록 함

2)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의 모계좌는 동 예금의 해지 전에는 해지 불가

3) “인터넷 챔피언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창구에서 중도이자지급, 해지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계좌로 자동 이체됨

3. 모집경비

우체국 예금모집경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4. 기타내용

“챔피언정기예금” 및 인터넷뱅킹 서비스(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Ⅳ. e-Postbank 정기예금

1. 의의

"e-Postbank정기예금"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전자금융 전용상품으로 우체국계좌 자동이체 약정 및 인터넷 판매상품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고금리 정기예금상품

2. 상품특징

가. 이 예금은 통장을 교부하지 않으며, 인터넷뱅킹으로만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 상품
나. 만기원리금은 모계좌로 자동이체되며 만기후 이율 적용
다. 우체국 전자금융 전용상품 가입 및 자동이체 약정 시 우대금리 제공
라. 이 예금은 인터넷 전용상품임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다계좌)
나. 예치한도 : 1계좌당 1,000만원 이상
다.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3년 이하 (월, 연단위 가능)
라. 세제관계 : 일반과세, 생계형, 세금우대 가입가능
마. 이자율
1) 기본금리 : 예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챔피언정기예금과 연동
2) 인터넷뱅킹 우대금리 : 챔피언정기예금의 우체국장 우대금리 적용
3) 결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금리 지급

우대금리 조건	우대이율
상품가입 당시 전자금융 판매상품을 기가입하였거나 가입상품 외 신규상품 가입 시	0.2%
상품가입 당시 우체국계좌 자동이체약정 2건이상인 경우	0.2%

4. 예금의 가입

가. 우체국 인터넷뱅킹 홈페이지(www.epostbank.kr)를 통하여 가입하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음
o 금융상품몰 → 예금상품 → 인터넷가입상품 → "e-Postbank정기예금" 가입 → 약관동의 → 출금계좌 선택 및 가입금액 결정 → 보안카드 또는 OTP 입력 → 가입정보 확인
나.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된 요구불예금계좌(모계좌)로부터 이체 가능한 금액범위 내에서 가입이 가능 (이때 전자금융서비스 "보안등급별 이용한도액 및 이용수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다. 가입거래시 계좌가 자동신규 개설되며 가입금액은 모계좌에서 "e-Postbank정기예금" 계좌로 자동이체됨
라. 인터넷에서 가입완료 후 "e-Postbank정기예금"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내용 조회 및 예금가입증서 발급 가능
마. 현재고증명 등 제반 증명서류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5. 예금의 해지

가. “e-Postbank정기예금”의 만기자동해약은 인터넷뱅킹 가입시 선택을 해야하며 만기시 자동으로 모계좌로 입금된다. 단, 만기일이 휴일인경우 익영업일에 입금됨

나. “e-Postbank정기예금” 만기해지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또는 우체국창구에서 해지가능

1) 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상품몰 → 예금상품 → 인터넷가입상품 → “e-Postbank정기예금” 해지

2) 우체국 창구 이용 : 지급청구서 작성하고 정당본인임을 확인한 후 모계좌로 자동이체함

o 우체국 창구에서 고객이 만기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모계좌에서 지급청구하여야 함

다. “e-Postbank정기예금”의 만기일은 휴일을 포함함. 따라서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전에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6. 예금의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방식

1)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함

2) 이자액 산출방식 : 원금 × 약정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3) 이자지급방식 : 만기지급식

4) 중도해지이율 :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o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예치일수/365)

5) 만기 후 이율 : 만기일 당시 챔피언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 적용

나. 분할해지

1) 계약기간 중 2회(만기포함 3회)까지 가능

2) 예금 잔액의 9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분할해지 지급 후 계좌번호와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

※ 잔여예금은 100만원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함

3) 분할해지는 만기지급식에 한하여 최초 가입 후 3개월이상 경과하여야 가능

o 최초 가입당시 챔피언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7. 예금의 기타사항

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우체국 예금모집경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다. 인터넷예금 전환가입시 최초분에 한하여 만기재예치율에 반영함

라. 예금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포함됨

마. 만기월에 만기일에 해당하는 응당일이 없을때에는 그월의 말일을 만기일로 함

사. “e-Postbank정기예금” 가입, 해지, 이자지급 등을 하는 경우 모계좌의 예금통장에 그 내용을 전산인자되도록 함

아. “e-Postbank정기예금”의 모계좌는 동 예금의 해지 전에는 해지불가

Ⅴ. 실버우대정기예금

1. 의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있는 실버 고객의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실버전용 정기예금

2. 상품특징

가. 만 50세 이상 실버전용 상품으로 안정적인 목돈 운영

나. 실버 고객을 위한 특별금리 제공으로 기본금리, 우체국장 전결금리 외 최고 0.4%p의 우대금리 제공

다. 분할해지 기능으로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나. 저축방법 : 일시예치식

다. 가입기간 : 1~3년(연단위)

라. 가입금액 : 1,000만원 이상 원단위(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마.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 적용

2) 우대이율 : 우대이율은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가) 실버금리 + 보너스금리 + 우체국장전결금리

나)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만 적용

실버금리 (연0.2%p)	만 50세 이상의 실버 고객 연0.2%p
보너스금리 (각 연0.1%p 최고 연0.2%p)	①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②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주1]」을 동 예금에 예치할 경우 ③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이며 자동이체약정 2건이상인 경우 ※ 주1 :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해당 고객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체국장전결금리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전결금리 제공

바. 세금관계 :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4. 이율적용 방법

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

나.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우대이율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

1) 「퇴직금 예치」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까지)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퇴직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반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함

2)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4대연금 수령 고객」은 증명서류(연금수령확인서,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등)로 확인하거나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

o 전산 조회 기준일 : 신규가입일 전월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

3) 「요구불예금 거래실적」은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로 함

5. 이자지급 방식

가.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이자지급식 중에서 신규가입시에 결정해야함

1) 월이자지급식 : 매월 가입일 해당일에 이자지급

※ 창구지급 및 자동이체지급 가능

2)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시 일시에 원리금 지급

나. 이자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

다.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후 이자지급은 휴일기간에 대하여 [기본이율 + 실버금리 +전결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지급

라.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시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

6.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단리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함

나. 이자 산출방식 : 이자액 = 원금×적용이율(연)×($\frac{\text{예치일수}}{365}$)

7. 중도해지이율

가. 만기일시지급식 : 신규 가입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나. 월이자지급식 : 신규 가입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

다. 중도해지 이자 산출방식

1) 중도해지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2) 지급액 = 원금 + 중도해지이자 (- 기지급월별 이자)

8. 만기후 이율

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나.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9. 분할해지지급

가. 개념 :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 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됨

나. 분할해지조건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하며 분할해지 후 최

소 유지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다. 분할해지이율 : 신규가입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금우대저축한도는 분할 해지예금만큼 증액됨

마. 업무처리방법 : 고객이 통장과 함께 창구에서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해지지급거래”를 통하여 분할해지지급하며, 통장 및 지급청구서에 분할해지지급임을 전산인자함

바. 유의사항 :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한 계약기간, 만기일, 이율적용 등 약정 조건은 최초 가입시와 동일

10. 통장이용조건

가. 정기예금종합통장 및 관련 서식 사용

나. 최초 가입시에는 통장표지 내면에 “실버우대정기예금”이라 인자됨

11. 기 타

가. 우수고객 우대금리 및 본부장 전결금리 지급 불가.

나. 이 예금은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포함

다.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

라.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마. 예금잔액의 95%까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

12.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3.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시 약관을 교부

Ⅵ. 실버우대 연금예금

1. 의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수입원이 없는 실버 고객의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연금지급식 실버전용 정기예금

2. 상품특징

가. 만 50세 이상 실버전용 상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인 생활자금 제공

나. 실버 고객을 위한 특별금리 제공으로 기본금리, 우체국장 전결금리 외 최고 0.4%p의 우대금리 제공

다. 연금지급 주기의 다양화로 고객의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만 5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나. 저축방법 : 일정기간 목돈 예치 후 원리금 분할 지급식

다. 가입기간 : 거치기간 + 연금지급기간

1) 거치기간[주1] : 1~10년(연단위)

※ 주1 : 원리금을 연금식으로 지급받기 전에 일정기간 예치하는 기간

2) 연금지급기간[주2] : 1~20년(연단위)

※ 주2 : 거치기간 종료 후 예금의 원리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받는 기간

3) 연금지급기간의 변경 : 연금지급기간 및 연금지급주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거치기간 만료일(연금지급 개시일) 전에 변경 신청 가능

※ 창구에서 본인 확인 후 변경 가능(단, 1회에 한함)

라. 가입금액 : 1,000만원 이상 원단위 (최고가입금액 제한없음)

마. 연금지급

1) 연금지급액 : 원리금분할액[주1] +매 연금회차 이자 - 이자소득세

※ 주1 : 거치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원천징수액 제외)를 원금에 합산한 후 원리금을 총 지급횟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

2) 연금지급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3) 연금지급방법 : 고객이 지정한 본인 명의의 우체국 요구불예금 계좌로 자동입금

바. 적용이율

1) 기본이율

가) 거치기간 : 신규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만기일시지급식 이율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

o 1년, 2년, 3년 단위의 금리변동주기 선택하며, 매 금리변동 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로 금리변동하며 복리계산(세후 복리계산)

나)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1년만기(월이자지급식) 이율 적용(1년 단위 변동금리)

o 매 1년 신규가입일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로 금리변동하며 단리계산

2) 우대이율

가) 거치기간 : 실버금리 + 보너스금리 + 우체국장전결금리

나) 연금지급기간 : 실버금리

실버금리 (연0.2%p)	만 50세 이상의 실버 고객 연0.2%p
보너스금리 (각 연0.1%p 최고 연0.2%p)	① 4대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을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수령하는 고객 ②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의 퇴직금주1」을 동 예금에 예치할 경우 ③ 우체국 요구불예금의 최근 3개월 평잔 50만원 이상 이며 자동이체약정 2건 이상인 경우 ※ 주1 :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해당 고객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우체국장 전결금리	신규 가입일 현재 전결금리를 제공하며, 이후 거치기간 이내 금리변동시에는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변동 적용됨

다) 우대이율은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을 기준으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을 재확인하여 변동된 우대이율 적용

3) 매 금리변동주기 신규가입일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이율을 적용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함

4. 이율적용 방법

가. 기본이율은 금리변동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하며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을 적용

나. 우대이율은 금리변동시 각 우대이율 적용 항목별로 재산정하여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적용

다.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 및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에 각 우대이율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

1) 「퇴직금 예치」는 가입자 본인이 신규 가입일 이전 3개월 이내(신규가입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 수령한 퇴직금(최소 1천만원 이상)에 한하며 퇴직금 명세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반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o 「퇴직금 예치」에 해당하여 보너스 금리를 적용받은 경우 금리 변동시 동일하게 적용

2) 「우체국 요구불예금으로 4대연금 수령 고객」은 신규가입시에는 증명서류(연금수령확인서,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등)로 확인하거나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에는 전산 조회를 통해 적용

o 전산 조회 기준일 : 신규가입일(금리변동주기 해당일) 전월 1일부터 신규가입일(금리변동주기 해당일) 까지

3) 「요구불예금 거래실적」은 요구불예금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하며 전산 조회 기준일은 최근 3개월(신규가입일 및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의 전전전월의 1일부터 신규가입일 까지)로 함

5. 이자지급 방식

가. 거치기간 이자

1) 거치기간 종료일에 거치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원천징수액 제외)를 원금에 가산

나. 연금지급기간 이자

1) 연금지급기간 개시일부터 연금지급액(원리금분할액 + 매 연금회차 이자 - 이자소득세)을 매주기 지정된 계좌로 자동 입금

※ 연금지급기간 개시일은 거치기간 종료일을 말함

2) 연금지급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자동 입금

6.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월단위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

나. 거치기간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에 재산정된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금리변동주기 단위로 복리 이자계산(세후복리)

1) 거치기간의 이자 = 원금 × 적용이율(연) × $\left(\frac{\text{예치일수}}{365}\right)$

다. 연금지급기간에는 매 1년 연금지급개시일 해당일마다 고시한 이율에 실버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변동되며 단리로 이자계산.

1) 매 연금회차 이자 = 매 연금회차 원리금잔액 × 적용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o 예치일수 : 직전 연금회차 지급일부터 현재 연금회차 지급일까지의 예치일수

라. 예시

1) 가입기간 : 6년(거치기간 3년 + 연금지급기간 3년)

2) 가입금액 : 3,000만원

3) 거치기간 금리변동주기 : 2년(고객지정)

4) 연금지급주기 : 1개월(고객지정)

o 연금회차별 예치일수는 31일 또는 30일 가정함(실제는 해당 예치일수로 산정됨)

5) 적용이율

o 거치기간 : 가입일 현재 6.8%

o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 5.0%

6) 이자소득세 : 15.4%



적용이율(연%)

기본	5.0	5.0[주1]	4.8[주2]	5.0	4.8
실버	0.2	0.2	0.2	0.2	0.2
보너스	0.2	0.1[주3]	-	-	-
전결	1.4	1.2[주4]	-	-	-
합계	**6.8**	**6.5**	**5.0**	**5.2**	**5.0**

가) 거치기간 이자계산

o 거치기간의 적용이율은 매 금리변동주기(2년) 해당일마다 고시한 기본이율에 재산정된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로 변동됨

o 금리변동주기(2년) 단위로 복리 이자계산하며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이자 계산함

- 이자 = 원금 × 적용이율(연) ×($\frac{\text{예치일수}}{365}$)

(단위 : 원)



원금		30,000,000	33,451,680
이자		4,080,000	2,174,350
이자소득세		628,320	334,850
실지급액		33,451,680	35,291,180

나) 연금지급액 : 연금지급액 = 원리금분할액 + 회차별 이자 - 이자소득세

o 원리금분할액 = (원금+거치기간의 세후이자) / 총 연금지급 횟수 = 35,291,180 / 36 = 980,310원/회

o 회차별 이자 = 매 회차 원리금잔액 × 적용이율(연) × 예치일수/365

- 1회차 : 35,291,180 × 5.0% × 31/365 = 149,860원
- 2회차 : 34,310,870 × 5.0% × 30/365 = 141,000원

※ 연금회차별 예치일수는 31일 또는 30일 가정함(실제는 해당 예치일수로 산정됨)

o 매 연금회차의 연금지급액

- 1회차 연금지급액 = 980,310 + 149,860 - 23,070 = 1,107,100원
- 2회차 연금지급액 = 980,310 + 141,000 - 21,710 = 1,099,600원

※ 매 연금회차의 연금지급액 예시

(단위 : 원)

연금회차	원리금 잔액	원리금 분할액(A)	연이율	이자(B)	이자소득세(C)	연금지급액 (D=A+B-C)
1	35,291,180	980,310	5.0%	149,860	23,070	1,107,100
2	34,310,870	980,310	5.0%	141,000	21,710	1,099,600
3	33,330,560	980,310	5.0%	141,540	21,790	1,100,060
4	32,350,250	980,310	5.0%	132,940	20,470	1,092,780
5	31,369,940	980,310	5.0%	133,210	20,510	1,093,010
6	30,389,630	980,310	5.0%	124,880	19,230	1,085,960
7	29,409,320	980,310	5.0%	124,880	19,230	1,085,960
8	28,429,010	980,310	5.0%	116,830	17,990	1,079,150
9	27,448,700	980,310	5.0%	116,560	17,950	1,078,920
10	26,468,390	980,310	5.0%	108,770	16,750	1,072,330

11	25,488,080	980,310	5.0%	108,230	16,660	1,071,880
12	24,507,770	980,310	5.0%	100,710	15,500	1,065,520
13	23,527,460	980,310	5.2%	103,900	16,000	1,068,210
14	22,547,150	980,310	5.2%	96,360	14,830	1,061,840
15	21,566,840	980,310	5.2%	95,240	14,660	1,060,890
16	20,586,530	980,310	5.2%	87,980	13,540	1,054,750
17	19,606,220	980,310	5.2%	86,590	13,330	1,053,570
18	18,625,910	980,310	5.2%	79,600	12,250	1,047,660
19	17,645,600	980,310	5.2%	77,930	12,000	1,046,240
20	16,665,290	980,310	5.2%	71,220	10,960	1,040,570
21	15,684,980	980,310	5.2%	69,270	10,660	1,038,920
22	14,704,670	980,310	5.2%	62,840	9,670	1,033,480
23	13,724,360	980,310	5.2%	60,610	9,330	1,031,590
24	12,744,050	980,310	5.2%	54,460	8,380	1,026,390
25	11,763,740	980,310	5.0%	49,950	7,690	1,022,570
26	10,783,430	980,310	5.0%	44,310	6,820	1,017,800
27	9,803,120	980,310	5.0%	41,630	6,410	1,015,530
28	8,822,810	980,310	5.0%	36,250	5,580	1,010,980
29	7,842,500	980,310	5.0%	33,300	5,120	1,008,490
30	6,862,190	980,310	5.0%	28,200	4,340	1,004,170
31	5,881,880	980,310	5.0%	24,970	3,840	1,001,440
32	4,901,570	980,310	5.0%	20,140	3,100	997,350
33	3,921,260	980,310	5.0%	16,650	2,560	994,400
34	2,940,950	980,310	5.0%	12,080	1,860	990,530
35	1,960,640	980,310	5.0%	8,320	1,280	987,350
36	980,330	980,330	5.0%	4,020	610	983,740
합계		35,291,180		2,765,230	425,840	37,630,570

7. 중도해지이율

가. 거치기간내 중도해지

1) 금리변동주기 단위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금리변동주기별 해당 적용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을 적용하며, 금리변동주기 단위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일 또는 매 금리변동주기 해당일 현재 고시한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2) 중도해지 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나. 연금지급기간내 중도해지

1) 연단위 경과기간 : 연단위별 해당 적용이율(기본이율+실버금리) 적용

2) 연단위 미경과 기간 : '연금지급개시일' 또는 '매 금리주기변동 해당일' 고시되는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매 연금회차의 원리금잔액에 대하여 계산하여 지급하고 기지급한 연금지급주기별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여 환입하고 차액을 지급

다. 연금지급기간내 중도해지 : 매 연금회차의 중도해지이자 산출방식

1) 중도해지이자 = 회차별 원리금잔액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2) 지급액 = 회차별 원리금잔액 - 기지급 회차별이자 + 기지급 이자소득세 + 회차별 중도해지이자 - 이자소득세

3) 가입기간 : 6년(거치기간 3년 + 연금지급기간 3년)

4) 가입금액 : 3,000만원

5) 거치기간 금리변동주기 : 2년(고객지정)

6) 연금지급주기 : 1개월(고객지정)

o 연금회차별 예치일수는 31일 또는 30일 가정함(실제는 해당 예치일수로 산정됨)

7) 적용이율

가) 거치기간 : 가입일 현재 6.8%

나)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개시일 현재 5.0%

8) 이자소득세 : 15.4%다. 중도해지의 예시

9)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6개월 10일이 경과한 후 중도해지

10) 중도해지이율 : 연1.5%(연금지급개시일 현재, 3개월~1년미만 : 연1.5%)(1) 연금지급 개시 후 1년이내의 경우

11) 매 연금회차의 중도해지이자 = 원리금잔액 × 중도해지이율(연) × 예치일수/365

가) 1 회차 : 35,291,180 × 1.5% × 31/365 = 44,960원

나) 2 회차 : 34,310,870 × 1.5% × 30/365 = 42,300원

다) 잔여기간 : 29,409,320 × 1.5% × 10/365 = 12,080원

12) 중도해지시 지급액 = 원리금잔액 - 기지급 회차별이자 + 기지급 이자소득세 + 회차별 중도해지이자 - 이자소득세

= 29,409,320 - 823,430 + 126,780 + 259,100 - 39,870 = 28,931,900원

(단위 : 원)

연금 회차	원리금 잔액	원리금 분할액(A)	연이율	이자(B)	이자 소득세(C)	연금지급액 (D=A+B-C)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 이자	이자 소득세
1	35,291,180	980,310	5.0%	149,860	23,070	1,107,100	1.5%	44,960	6,920
2	34,310,870	980,310	5.0%	141,000	21,710	1,099,600	1.5%	42,300	6,510
3	33,330,560	980,310	5.0%	141,540	21,790	1,100,060	1.5%	42,460	6,530
4	32,350,250	980,310	5.0%	132,940	20,470	1,092,780	1.5%	39,880	6,140
5	31,369,940	980,310	5.0%	133,210	20,510	1,093,010	1.5%	39,960	6,150
6	30,389,630	980,310	5.0%	124,880	19,230	1,085,960	1.5%	37,460	5,760
잔여 기간	29,409,320						1.5%	12,080	1,860
합계		5,881,860		823,430	126,780	6,578,510		259,100	39,870

라.

연금지급개시일 이후 1년 2개월 10일 경과한 후 중도해지

1) 중도해지이율 : 연1.0%(금리변동일 현재, 15일~3개월미만 : 연1.0%)

마. 연금지급 개시 후 1년이상의 경우

1) 연단위 경과기간(1년)은 연단위 해당 약정이율(연5%) 적용

2) 위 미경과 기간(2개월 10일)은 '금리변동주기 해당일'의 정기예금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연1%)을 적용

3) 매 연금회차의 중도해지이자 = 원리금잔액 × 중도해지이율(연) × 예치일수/365

o 1 ~ 12 회차 : 약정이율 적용

o 13 회차 : 23,527,460 × 1% × 31/365 = 19,980원

o 14 회차 : 22,547,150 × 1% × 30/365 = 18,530원

o 잔여기간 : 21,566,840 × 1% × 10/365 = 5,900원

4) 중도해지시 지급액 = 원리금잔액 - 기지급 회차별이자주1 + 기지급 이자소득세주1 + 회차별 중도해지이자주1 - 이자소득세주1

= 21,566,840 - 192,570 + 29,640 + 44,410 - 6,820 = 21,441,500원

※ 주1 : 연단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값

(단위 : 원)

연금 회차	원리금 잔액	원리금 분할액(A)	연이율	이자(B)	이자소득세(C)	연금지급액(D=A+B-C)	중도해지이율	중도해지이자	이자소득세
1	35,291,180	980,310	5.0%	149,860	23,070	1,107,100			
2	34,310,870	980,310	5.0%	141,000	21,710	1,099,600			
3	33,330,560	980,310	5.0%	141,540	21,790	1,100,060			
4	32,350,250	980,310	5.0%	132,940	20,470	1,092,780			
5	31,369,940	980,310	5.0%	133,210	20,510	1,093,010			
6	30,389,630	980,310	5.0%	124,880	19,230	1,085,960			
7	29,409,320	980,310	5.0%	124,880	19,230	1,085,960			
8	28,429,010	980,310	5.0%	116,830	17,990	1,079,150			

9	27,448,700	980,310	5.0%	116,560	17,950	1,078,920			
10	26,468,390	980,310	5.0%	108,770	16,750	1,072,330			
11	25,488,080	980,310	5.0%	108,230	16,660	1,071,880			
12	24,507,770	980,310	5.0%	100,710	15,500	1,065,520			
13	23,527,460	980,310	5.2%	99,910	15,380	1,064,840	1.0%	19,980	3,070
14	22,547,150	980,310	5.2%	92,660	14,260	1,058,710	1.0%	18,530	2,850
잔여 기간	21,566,840						1.0%	5,900	900
합계		13,724,340		1,691,980	260,500	15,155,820		44,410	6,820
연단위 미경과 기간				192,570	29,640				

8. 만기후 이율

매 연금지급주기 연금지급액을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 입금하므로 만기 후 이율없음

9. 연금지급의 제한

압류, 지급정지 등 지급제한 등록 계좌는 연금지급이 불가하다. 다만, 지급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연금지급이 가능

10. 세금관계

가. 세금우대 및 생계형 가입 가능

나. 원리금 균등지급에 따라 세금우대 및 생계형 한도액을 자동 감액처리

11. 통장이용조건

가. 정기예금종합통장 및 관련 서식을 사용

나. 최초 가입시에는 통장표지 내면에 “실버우대연금예금”이라 인자됨

12. 기 타

가. 이 예금은 만기일(최종 연금지급일)에 자동 해약

나. 우수고객우대금리,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장 전결금리 지급이 불가

다. 이 예금은 분할인출, 담보제공 및 질권설정이 불가

라. 이 예금은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포함

마.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

13.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4.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시 약관 교부

Ⅶ. 주니어 우대 정기예금

1. 의의

가. 19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저축의식 함양과 우체국예금사업의 미래 잠재고객 확보
나. 주니어우대자유적금, 정기예금 등 만기자금의 재유치를 통해 고객 이탈 방지

2. 상품특징

가. 만 19세 미만의 주니어 전용 정기예금으로 안정적인 목돈 운영
나. 주니어 고객을 위해 기본금리 및 우체국장 우대금리 외 최고 0.2%p의 특별우대금리 제공
다. 자동 재 예치, 분할해지 등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 단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세금우대 및 생계형 저축 가입대상자는 1인 3계좌까지 가능
나. 가입기간 : 1~3년(월 단위)
다. 가입금액 : 1만원 이상 최고한도 제한 없음
라. 적용금리
1) 기본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 적용
2) 우대금리 : 우체국장우대금리 + 주니어금리 + 보너스금리

기본금리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
우체국장우대금리		가입금액, 가입기간에 따른 이율 적용
특별우대금리	**주니어금리**	만 19세 미만의 주니어 고객 연 0.1%p
	보너스금리 (최고 연 0.1%p)	①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연 0.1%p ② 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 연 0.1%p

※ 우대금리는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마. 세금관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4. 이율적용방법

가. 기본금리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금리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
나.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에 각 우대금리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
1)「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 전환가입」은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만기해지일과 주니어우대정기예금 신규 가입일이 동일하여야 함
2)「형제, 자매, 남매 동시 가입」은 신규 가입일이 동일하여야 하며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가족관계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3) 자동 재 예치 시 우체국장우대금리, 주니어금리 및 보너스금리는 자동 재 예치 시점의 해당 이율을 적용

5. 이자지급 방식

가. 이자지 방식은 월이자 지급식, 만기일시 지급식 중에서 신규 가입 시에 결정해야함
  1) 월이자 지급식 : 매월 가입일 해당 일에 이자지급 (창구지급 및 자동이체지급 가능)
  2) 만기일시 지급식 :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 지급
나. 이자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 영업일에 지급함
다.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지급은 휴일기간에 대하여 [기본금리 + 우체국장우대금리 + 주니어금리 + 보너스금리]를 합산한 이율로 지급
라.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 시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

6.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단수법에 의하여 절사함
나. 이자 산출방식

o 이자액 = 원금 × 적용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7. 중도해지 이율

가. 월이자 지급식 : 신규 가입 시(또는 자동 재 예치 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함
나. 만기일시 지급식 : 신규 가입 시(또는 자동 재 예치 시)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다. 중도해지 이자 산출방식

1) 중도해지이자 = 원금 × 중도해지 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2) 지급액 = 원금 + 중도해지이자 - 기 지급 월별 이자

8. 만기 후이율

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나.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9. 부가서비스

가. 통장명 자유 선정 서비스제공으로 예금상품 명칭(12자 이내)을 장래희망, 목표 등 고객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취향 반영
나. 고객이 통장명을 직접 선정하지 않은 경우 상품명 “주니어우대정기예금”으로 통장 인자

10. 자동재 예치

가. 신규 가입 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동 재 예치 약정이 가능하며 고객 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가입신청서에 고객이 기재토록 하며, 핀 패드 상에서도 고객이 입력(희망 : 1번, 비 희망 : 2번)할 수 있도록 함
나. 최초 가입기간 만기 시 원리금(세금공제 후)이 1년 단위로 자동 재 예치되며 최초 가입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 자동 재 예치됨

다. 자동 재 예치 시 기본금리, 우체국장우대금리, 주니어금리 및 보너스금리는 매 재 예치 시점의 고시이율 적용

11. 분할해지

가. 개 념 : 최초 가입금액(또는 자동 재 예치금액)의 90% 범위 안에서 2회까지 분할해지 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 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가입당시(또는 자동 재 예치 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됨

나. 분할해지 조건 : 만기일시 지급식으로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함

다. 분할해지 이율 : 가입 시(또는 자동 재 예치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금우대저축한도는 분할해지 예금만큼 증액됨

마. 업무처리방법 : 고객이 통장과 함께 창구에서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해지 지급거래”를 통하여 지급하며, 통장 및 지급청구서에 인자함

12. 통장이용 조건

가. 정기예금종합통장 및 관련 서식을 사용

나. 최초 가입 시에는 통장표지 내면에 “고객이 선정한 통장명 또는 주니어우대정기예금”이라 인자됨

13. 기 타

가. 우수고객 우대금리 및 본부장 우대금리 지급 제한

나. 이 예금은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포함

다.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

라. 주니어우대정기예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이 제한됨

14.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5.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 교부

Ⅷ. 이웃사랑정기예금

1. 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헌혈자 등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고객 및 농어촌 고객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사랑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2. 상품특징

사회 소외계층, 사랑 나눔 실천자 및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이율 제공으로 기본이율, 우체국장우대금리 외 연 0.4%p의 우대이율 제공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

1) 사회 소외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2) 사랑 나눔 실천자

가)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나)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3) 농어촌 지역 주민

가)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나. 가입금액 : 1만 원 이상 최고한도 제한 없음

다. 가입기간 : 6개월 ~ 3년(월 단위)

라.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예금의 기간별 이율 적용

2) 우체국장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우대금리 적용

3) 특별우대이율(최고 연 0.4%p)

가) 사랑금리 + 보너스금리

나)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다) 우대이율은 우체국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기본이율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
우체국장우대금리		신규 가입일 현재 기간별, 금액별 우대이율
특별우대이율	**사랑금리 (최고연0.2%p)**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 소년소녀 가정, 다문화 가정 고객 연 0.2%p ②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헌혈자(5회 이상), 입양 실천 고객 연 0.2%p ③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연 0.2%p
	보너스금리 (최고연0.2%p)	① 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 해지 후 전환가입 0.1%p ② 소외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주」을 우체국 요구불 예금으로 매월 수령 0.1%p ③ 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 0.1%p ※ 주」 : 수급자(소년소녀가정)의 생계급여, 장애인의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조손가정)의 아동양육비

마. 이자지급방식 : 월이자 지급식, 만기일시 지급식

바.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 고객안내 사항 ◈

가입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 가정”, “한부모 가족”인 경우 타 금융기관 포함하여 금융자산(이자포함)이 300만원(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900만원) 이상이 되면 생계비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금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도 동일 기준 적용됨

4. 가입 대상자 확인방법

가. 사회 소외계층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붙임 1 참조)

2) 장애인

가)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애인(붙임 2 참조),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한 종류

나) 장애인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유효기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이후 수급자격 탈락,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예금 계약은 유효함

3) 다문화 가정

가)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확인서류

o 본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본인으로 발급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적 미 취득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음

4) 한부모 가족

가)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확인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붙임 3 참조)

5) 소년·소녀가정

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나) 확인서류 : 수급자증(붙임 1 참조)

6) 조손 가정

가)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확인서류 : 한부모 가족증명서(붙임 3 참조)

나. 사랑 나눔 실천자

1)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가) 대상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된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나) 확인서류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운전면허증(장기기증희망 표시), 기타 확인 가능한 증서 중 한 종류

2)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가) 대상 : 골수이식등록기관에 등록된 골수 이식(희망 등록)자

나) 확인서류 : 골수기증희망등록증 또는 골수기증확인서

3) 헌혈자(5회 이상)

가) 확인서류 : 헌혈증서 사본(5매 이상)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붙임 4 참조)

4) 입양자

가) 확인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한 종류

다. 농어촌 지역 주민

1)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가)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으로 주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 주민등록등(초)본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5. 이율적용 방법

가.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 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

나. 우대이율은 신규 가입일에 각 우대금리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

1)「사랑금리」해당 고객은 각 항목별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하여야함

2)「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 전환가입」은 이웃사랑자유적금 만기해지일과 이웃사랑정기예금 신규가입일이 동일하여야함

3)「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지원금에 한하며 우체국 요구불예금 통장 및 전산조회(최근 3개월 거래내역 확인)로 매월 입금됨을 확인하되, 입금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서류로 확인한다. 통장 및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한 거래내역 또는 제출된 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가)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 : 생계급여

나) 장애인 : 장애수당 또는 장애 아동수당

다)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정 : 아동양육비

※ 세부사항 붙임 5 참조

4)「우체국 장애인복지체크카드 이용고객」은 전산 조회를 통해 확인

6. 이자지급 방식

가. 이자지급 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중에서 신규 가입 시에 결정

1) 월이자지급식 : 매월 가입일 해당 일에 이자지급

※ 창구지급 및 자동이체지급 가능

2)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 지급

나. 월이자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에 지급

다.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그 익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라.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 시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

7.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기간을 곱하여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 단수법에 의하여 절사

나. 이자 산출방식

o 이자액 = 원금 × 적용이율(연) × $\left(\frac{\text{예치일수}}{365}\right)$

8. 중도해지 이율

가. 월이자지급식 : 신규 가입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
나. 만기일시지급식 : 신규 가입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다. 중도해지이자 산출방식

1) 중도해지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2) 지급액 = 원금 + 중도해지이자 - 기 지급 월별 이자

9. 만기 후 이율

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1/2
나.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이율

10. 분할해지

가. 최초가입액의 90%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예금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함.
나. 분할해지는 최초가입 후 3개월 이상 만기일시지급식에 한하여 가능하며 최소 1만원이상의 잔고를 유지해야 함
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금우대저축한도는 분할해지예금만큼 증액됨

1) 예시 : 세금우대로 2,000만원을 가입한 고객이 500만원을 분할해지하는 경우 ☞ 세금우대종합저축가입액은 1,500만원으로 조정되며, 다른 상품으로 500만원 추가 가입 가능

라. 업무처리방법 : 고객이 통장과 함께 창구에서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해지지급거래”를 통하여 분할해지지급하며, 통장 및 지급청구서에 분할해지지급임을 전산인자 함
마. 유의사항

1)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한 계약기간, 만기일, 이율적용 등 약정조건은 최초 가입시와 동일함.
2) 중도이자지급 후 분할해지시에는 기지급이자액은 회수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반환한 후 분할해지이자 계산

10. 통장 이용 조건

정기예금종합통장 및 관련 서식 사용

11. 기타

가. 우수고객우대금리,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장 우대금리 지급이 불가
나. 이 예금은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포함
다.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
라.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마. 예금 잔액의 95%(최고 5,0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

12.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3.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 교부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수급자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수급자 증명서				처리기간 즉 시
수급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통 반)
	세대주 성명 (시 설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수급자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용 도				
제 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장 애 등 록 증

(앞면)

제 호

장애인등록증

사 진 (2.5㎝×3㎝)	성명	
	주소	

장 애 명 ____ 장애등급

중복장애 ____ 장애등급

유효기간(장애재판정일): . . .

20 . . .

(시·군·구청장)

직인
(1.5㎝
×1.5㎝)

6㎜×54㎜(보존용지(1종)120/㎡)

(뒷면)

보 호 자	성 명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장애진단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기록란		
일자 / 변경구분	변 경 내 용	확인청인

※ 이 증은 남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비고)

(1) 표지의 색상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전면에 3㎝×3㎝ 크기의 휠체어마크를 배경으로 인쇄하되, 휠체어마크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며, 각 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애인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증명서

발 급 번 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보호자					
장 애 등 록 일						
주 장 애		부 장 애		종합장애등급		
용 도						
제 출 처						

위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확 인

[붙임 3]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세대주성명 (시 설 명)	
세대주와의관계	
용 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임을 신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31311-24911일
95.11.2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붙임 4]

헌혈확인증명서



본 증명서는 부터 까지의 헌혈사실의 확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발급번호 :

등록번호		헌혈횟수		사용용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번호	증 서 번 호	헌혈일자	번호	증 서 번 호	헌혈일자

(상기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 사실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월

대 한 적 십 자 사 총 재

발급혈액원명 : 혈액원장(인)

※ 적십자는 재난구호, 헌혈은 생명보호 우리모두 적십자운동에 참여합시다.

[붙임 5]

『취약계층의 정기적인 정부지원금』 이란?

① 수급자(소년소녀가장 포함)

□ 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 노숙자 쉼터 또는 한국갱생보호공단시설 거주자 등 정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지급액 : 현금 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 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 인정액 - 주거급여액

【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 급여기준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 7인 이상 가구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 7인 이상 가구 현금 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05,441원씩 증가

○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매월 20일 입금

② 장애인

□ 장애수당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 무관)

○ 지급액

①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월 13만원 /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2만원 /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③ 보장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2만원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 2급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6급

○ 지급방법 : 수급자의 계좌에 매월 20일 입금

□ 장애 아동수당

○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등록 장애아동

○ 지급액

①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②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 2급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 3~6급

○ 지급방법 : 수급자 보호자의 계좌에 매월 20일 입금

③ 한부모 가족(조손 가정 포함)

□ 아동양육비

○ 대 상 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만 10세미만의 아동

○ 지 급 액 : 1인당 50,000원/월

○ 지급방법 : 보호자의 계좌에 매월 20일 입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

1.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2009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7인 이상 가구 최저 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증가

3.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질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금융재산

-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 임대보증금 공제
- 생활준비금 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 · 의료비, 관혼 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 산정에서 제외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연간 300만원 한도, 총 900만원 공제
  - ·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펀드, 연금신탁 등 3년 이상 가입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

※ 금융재산 조사 시 3년 이상 가입상품은 별도로 표기되어 통보됨

【관련 법령】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o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o 관련 법령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5, 2005.12.23, 2008.2.29>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법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장애인

o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o 관련 법령

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한부모 가족

o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o 관련 법령

법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 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보호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 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07.10.17]

법 제5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 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7.10.1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조 (보호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주1」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한다. <개정 1996.1.17, 2003.7.9, 2005.6.23, 2008.1.15, 2008.3.3>
② 삭제 <1999.10.1>
※ 주1 : 2009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선정기준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소득 인정액 산정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동일한 산정기준 적용

4. 소년·소녀가정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5. 조손 가정
○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관련 법령

법 제5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9호의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가 된다.
<개정 2008.2.29>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전문개정 2007.10.17]

보건복지가족부령 제3조의2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1.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부모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본조신설 2008.1.15]

6. 다문화 가정

o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o 관련 법령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Ⅸ. 2040$^{+\alpha}$ 정기예금

1. 의의

20~40대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법인 등의 안정적 자금운용과 우체국예금 수신규모 확대를 위해 거치식 예금상품 개발

2. 상품특징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고객,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등에게 최고 연 0.4%p 우대금리 및 특별중도해지, 분할해지 서비스 제공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
나. 가입금액 : 가입시 1만원 이상 제한없음
다. 가입기간 : 6개월 ~ 3년(월 단위)
라. 적용금리
1) 기본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챔피언정기예금의 기간별 기본금리
2) 우체국장우대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장우대금리 적용
3) 특별우대금리 : 최고 연 0.4%p

항 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 급여이체 시	0.1	-	-	-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0.1	0.1	0.1	0.1
3. 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	0.1	0.1	0.1	0.1
4. 2040+α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시	0.1	0.1	0.1	0.1
5. 우체국요구불예금 3개월평잔 일정금액 유지시 우대금리 제공(개인 50만원/개인사업자,법인,단체 200만원)	0.1	0.1	0.1	0.1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0.1	0.1	0.1	0.1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 우체국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우대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

마. 이자지급방식 :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바.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4. 우대금리 적용방법

가. “기본금리”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금리”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
나.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에 각 우대금리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
1) 급여이체자
o 신규 가입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자
-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 이체 시
- 급여이체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o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자
3) 우체국 체크 및 제휴카드 발급 시
o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4) 2040+α자유적금 만기해지 후 전환가입
o 동일자에 2040+α자유적금을 만기해지하고 2040+α정기예금을 가입하는 고객
5) 요구불예금 3개월평잔 유지시 우대금리 제공
o 요구불예금 3개월평잔 개인50만원, 법인200만원
6)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o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자
※ 우수고객등급은 우수고객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0.7월 현재)
- 예금 : S-MVP, MVP, VIP, GOLD
- 보험 : I-Top, I-Love, I-Friend
- 우편 : SVIP, VIP, 우대, 우수
※ 우편 우수고객은 가입시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증빙서류를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 우편물류시스템 → 우편 D/W → 고객분석 → 고객등급 → 고객별등급현황에서 "고객등급"을 " SVIP~우수 "까지 조회 후 총괄국 기준으로 확인("상품"은 일반통상, 특수통상, EMS, 택배 모두 가능)

5. 이자지급방식

가. 이자지급방식은 월이자지급식, 만기일시지급식 중에서 신규 가입 시에 결정
1) 월이자지급식 : 매월 가입일 해당 일에 이자지급
※ 창구지급 및 자동이체지급 가능
2)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 시 일시에 원리금 지급
나. 이자지급일이 휴일 또는 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익 영업일 지급 (단 이자지급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는 전 영업일에 지급)
다.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모든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
라.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 시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휴일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차감하여 지급

6. 특별중도해지

가. 의의 : 이 예금 가입기간 중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나.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확인서류
1) 사유 :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
2) 확인서류 : 예금지급청구서에 합철 보관
o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o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o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o 퇴직,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다. 특별중도해지 조건

1) 예금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로서, 사유발생일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로 함

2) 사유발생 기준일

o 유학, 이민 : 유학 또는 이민 출국일

o 결혼 : 실제 결혼일 또는 혼인 신고일

o 퇴직, 사업장의 폐업 : 퇴직일, 폐업일

라. 특별중도해지이율 : 가입일부터 특별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금리 적용

7.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단리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

나. 이자 산출방식

o 이자액 = 원금 × 적용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8. 중도해지이율

가. 월이자지급식 : 신규 가입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빼고 지급

o 중도해지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o 지급액 = 원금 + 중도해지이자 - 기 지급 월별 이자

나. 만기일시지급식

o 신규 가입 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o 중도해지이자 = 원금 × 중도해지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o 지급액 = 원금 + 중도해지이자

9. 만기 후 이율

가.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기본이율의 1/2

나.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이율

10. 분할해지 지급

가. 개념 : 최초 가입금액의 90% 범위안에서 2회까지(만기포함 3회) 분할해지 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해서는 최초 가입당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됨

나. 분할해지조건 : 만기일시지급식으로 최초 가입 후 3개월 이상 경과 되어야 하며 분할해지 후 최소 유지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다. 분할해지이율 : 신규 가입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세금우대저축한도는 분할해지 예금만큼 증액

마. 업무처리방법 : 고객이 통장과 함께 창구에서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당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해지지급거래”를 통하여 분할해지지급하며, 통장 및 지급청구서에 분할해지지급임을 전산 인자함

바. 유의사항 :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예금에 대한 계약기간, 만기일, 이율적용 등 약정 조건은 최초 가입시와 동일함

11. 기타

가. 이 예금은 정기예금종합통장 사용

나. 고액예금우대금리 및 본부장우대금리 지급 불가

다. 이 예금은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포함

라. 이 예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

마.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바.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

o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정해진 예금담보대월 한도까지 대월이 가능

12.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3.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X.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1. 개발배경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산운용 대상에 우체국 예금이 포함됨

○ 우체국예금의 안정적인 예금 수신기반 확보로 지속적인 성장 기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6조 1항

제26조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운용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 취급하는 예금·적금

나. 「보험업법」 제2조제6항에 따른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중 적립금이 반환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

2. 상품특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 상품

3. 상품 주요내용

가. 상 품 명 :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나. 예금종류 : 거치식예금

다.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 우정사업본부와 사전계약 체결 후 가입 가능

라. 가입금액 : 사전 계약시 체결된 금액(계약 요건에 따른 차등 발생가능)

마. 가입기간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바. 적용이율 :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 기간별 이율

사.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아. 취급우체국 : 서울중앙우체국, 여의도 우체국

4. 예금의 가입 및 해지

가. 이 예금의 계좌 개설시 명의인은 퇴직연금사업자로하며,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 전문(電文)을 통해 가입·해지 등의 거래가능

나. 이 예금 가입을 위해서는 사전 우체국 계좌 개설이 필요하며, 입·출금은 모계좌를 통해 이루어짐

5. 거래방법

가. 이 예금의 가입은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나. 이 예금의 거래는 예금주와 우체국간의 전문(電文)을 통해 이루어지며, 통장은 발급되지 않음

6. 이자계산

가. 이자계산은 원금에 연이율과 예치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 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함

나. 이자 산출방식

- 이자액 = 원금 × 적용이율(연) × $\frac{\text{예치일수}}{365}$

7. 특별중도해지

가. 의의 : 이 예금 가입기간 중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이율 적용

나. 특별중도해지 사유

1)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당해사업장 1회로 한정)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5년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5)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 시

6)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수탁자의 사임

8)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 및 자산운용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

9) 계열사내 전직,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으로 통한 우체국 내 계약이전

10)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다. 특별중도해지 이율 :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고시된 기간별 특별중도해지 이율 적용

(2013.03.15현재)

예치기간	특별중도해지 이율
6개월 미만	3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율
6~12개월 미만	6개월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율
1~2년 미만	1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율
2~3년 미만	2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율
3년 이상	3년 퇴직연금 정기예금 이율

8. 중도해지이율

신규일 또는 재예치 당시 고시된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9. 분할해지

가. 분할해지 횟수 :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 단,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거나 연금형태 지급시에는 횟수에 제한 없음

나. 적용이율

1)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의한 분할해지 시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2) 특별중도해지 사유 외 사유로의 분할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

다. 분할해지 지급 후 잔여예금은 신규 또는 재예치 당시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

10. 자동 재예치

가. 이 예금은 만기 시 최초 계약과 동일 기간으로 원리금 자동 재예치됨

나. 적용이율 : 매 재예치 시점의 기간별 고시이율 적용

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도 자동 재예치됨

11. 기타

가.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양도양수 불가

나. 이 예금은 우체국 예금 모집경비 지급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음

12.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예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3.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제 3 절 적립식예금

Ⅰ. 정기적금

1. 의의

정기적금이란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월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우체국에 납입하면 우체국은 기간만료 시 약정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금제도로서 저축성예금의 일종이며, 목돈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주된 기능이 있음

2. 상품특징

가. 정기적금의 법적성질은 계약 자체의 내용에 비추어 예금의 일종이라고도 하지만 소비임치인 일반예금과는 그 법적성질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통설

나. 소비임치의 요건은 ① 수취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동종, 동등 동단(同單)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본상환이라는 개념이 있고, ② 수취인은 임치물을 소비한다는 것이 요건이므로 소비에 대한 대가, 즉 이자의 개념이 생김

다. 이에 비하여 적금계약은 계약자의 납입금과 납입회수가 일정기간후에 지급할 우체국의 급부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지급보충금은 이자상당액이라 할 수 있고, 계약월부금은 원금에 상당한 것과 같은 외관을 나타냄

라. 그러나 법률적으로 볼 때에는 계약급부금은 우체국이 가입자에 대하여 행하는 계약급부금 지급의무로서 적금계약자의 납입액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며, 따라서 정기적금에는 원금과 이자의 개념이 없으므로 이는 일반예금과 같은 소비임치가 아니라고 이해되고 있음

마. 그래서 적금계약은 민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14가지의 유명계약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종의 독특한 혼합무명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임

3. 용어의 정의

가. 납입정일 : 가입자가 월부금을 매월 납입해야 하는 일로서 최초 거래 개시일(가입일) 이후로 가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음

나. 선납일수: 월부금을 납입정일 이전에 납입한 때 납입일에서부터 납입정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선납일수라 함.

다. 지연일수 : 월부금을 납입정일 이후에 납입한 때 납입정일에서부터 월부금 납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지연일수라 함

라. 이연만기일 : 만기(후) 해약시 납입의 지연이 있을 때 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일수(소숫점 이하 절상)만큼 당초 만기일을 연장한 일을 말함

4. 취급조건

가. 가입대상 : 개인, 법인 등 제한없음

나. 계약기간 : 6개월이상 36개월이내 (월단위)

다.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한도이내에서 가능)

라. 계약액 및 월부금

1) 계약액

가) 1만원이상으로 하며 최고한도액은 제한이 없음

나) 계약액 산출법 : 계약액 = 월부금×(납입총횟수+총운용월수×당해적금월리)

2) 월부금

가) 월부금 산출공식 :

$$\frac{\text{잠정계약액}}{\text{납입총횟수}+\text{총운용월수}+\text{당해적금월리,(소숫점이하절상)}}$$

$$(\text{총운용월수}=\frac{\text{계약월수}(\text{계약월수}+1)}{2},\ \text{당해적금월리}=\frac{\text{약정이율}}{12})$$

나) 예시

o 잠정계약액이 500만원일 경우의 계약액과 월부금은? (계약기간 1년, 이율 4%인 경우)

$$\text{월부금}=\frac{5{,}000{,}000}{12+\frac{12*13}{2}\times\frac{4\%}{12}}=407{,}830(\text{소수점이하절상})$$

계약액=407,830×12.260 = 4,999,997

마. 만기일 : 계약에서 정한 최종 납입월의 익월 납입정일을 만기일로 하며 익월중 해당일이 없을 경우 그 월의 말일을 만기일함

1) 예시

가) 계좌개설일 : 2004. 7. 1일 경우(납입정일, 매월1일), 계약기간 1년일 때의 만기일 = 2005. 7. 1, 계약기간 2년일 때의 만기일 = 2006. 7. 1

나) 계좌개설일 : 2004. 2. 29일 경우(납입정일, 매월 29일), 계약기간 1년일 때의 만기일 = 2005. 2. 28(2. 29일이 없음), 평년일 경우 28일, 윤년일 경우 29일

바. 매월 납입일 : 납입정일로 함

사. 우대이율 : 정기적금 가입시 웰빙우대저축을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하면 연 0.1% 우대이율이 계약금액에 포함됨

5. 이율

가. 만기 해약지급 : 이율표 참조

나. 중도해약시

해약일을 기점으로 운용일수에 따라 중도해지이율 적용 : 이율표 참조

다. 만기일 경과후 해약지급

1) '05. 3. 22일 이전 예입분

가) 1년이내 경과분 : 약정당시 당해 적금이율의 1/2

나) 1년이상 경과분 : 가입당시 보통예금이율

2) '05. 3. 22일 예입분 부터

가) 6개월이내 경과분 : 만기일 당시 당해 적금이율의 1/2

나) 6개월이상 경과분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이율

라. 만기도래 전 해약지급

1) 월부금을 완납한 가입자가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 해약시 차감이율 : 1년만기 우체국정기예금이율 + 2%

2)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일 경우 만기일 전영업일에 해약시는 만기도래 전 해약으로 처리됨

6. 적용범위

가. 정기적금에 관하여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과 본 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이 예금의 취급절차는 제1장의 예금총칙을 준용함

7. 통장 및 서식의 사용

적립식예금통장 및 관련서식을 사용함

8. 예입

가. 신규가입 : 가입신청서에 제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1회의 월부금 및 인감(서명거래일 경우 생략)을 제출 (단, 최초월부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및 타행수표일 경우 예입청구서를 제출토록함)
나. 월부금 납입 : 월부금 납입이라 함은 가입자가 2회 이후의 월부금을 납입하는 것(만기일이 경과하여도 예입가능)

9. 월부금 자동이체

요구불 예금(보통, 저축, 듬뿍우대)계좌에서 월부금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는 계좌간 이체약정거래 실시.

10. 지급

지급이란 가입자가 적금을 해약(탈퇴)하는 것으로 지급의 종류에는 만기(후)지급, 만기도래전지급, 중도해약지급으로 구분 .(월부금 예입금액 중 수표에 의한 예입금액이 부도지급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월부금 전액이 예입 취소됨.)

11. 지급이자 구분

가. 만기(후)지급 :최종회 월부금을 납입한 경우에 전회차의 월부금이 납입지연없이 납입되었거나 총지연일수와 총선납일수의 차감이 “0” 또는 선납일수가 더 많을 때 만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계산
나. 중도해약지급 : 월부금을 전회납입하지 않은 가입자가 해약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가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 청구할 경우 책임자가 인정할 때에는 일반해약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다. 만기도래전 지급
1) 월부금을 전회 납입하고 만기일(이연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것으로서 지연일수로 인해 만기일이 이연된 경우와 월부금 완납후 당초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일반 해약절차에 준하여 처리함
2) 만기도래전 해약지급이자액 계산시에는 중도지급이자와 만기도래전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가 많은 것을 지급한다. 단 약정지급이자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는 없음

12. 기간계산

가. 정기적금 이자계산시 예입일은 산입하고 지급일은 제외함
나. 전회차의 월부금을 납입한자가 납입의 지연이 있을 때에는 이연만기일을 산정하여 이를 만기일

에 대신하여 기준일로 하며, 다만 이연만기일이 최종월부금 납입일 이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연만기일을 최종월부금 납입일 익일로 함

1) 이연일수 = $\frac{\text{총지연일수} - \text{총선납일수}}{\text{계약월수}}$ (소숫점이하 절상)

2) 이연만기일 = 당초만기일 + 이연일수

다. 운용일적수는 납입회차별로 월부금납입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일수를 계산하여 합한 총일수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1) 회차간 운용일수 : 실제 납입일로부터 다음 실제납입일 전일까지의 일수 합계 (지연일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됨)

2) 월별운용일수 : 해지 전일에서 신규일까지의 회차간 일수를 역으로 더하여 월별 운용일 적수를 산정함 (선납일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되고 선납일수는 일적수 계산에서 제외됨)

13. 이자계산 방법

가. 만기일 해약 요청 시 지급 이자액

1) 계약액-(월부금×계약월수) : 약정지급이자액

가) 약정지급이자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될 경우에는 약정지급이자액에 대하여는 국고 단수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만기 후 이자에 대하여는 국고 단수법을 적용하여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나. 만기경과 6개월 이내 지급이자액

1)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이내 해약지급 이자액 : 약정이자지급액+(계약액×만기일당시이율의 1/2×만기경과일수/365)

2) 만기일 경과 후 6개월이상 경과 후 해약지급 이자액 : 약정이자지급액+(계약액×만기일당시이율의1/2×경과일수(6개월간)/365)+(계약액×만기일당시보통예금이율×경과일수(6개월 이후)/365)

※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만기 익 영업일 해지 시 이자계산은 우대이율을 지급하지 않음

다. 만기도래전 해약지급 이자액 : 약정지급이자액-(계약액×만기도래전 해약시 차감이율×해약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일수/365)

※ 만기도래전 해약지급시 이자계산은 양편넣기이며 중도해약 이자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도해약 이자액으로 지급함

라. 중도해약지급

월부금×1년이상경과분 중도해약이율 $\times \frac{\text{1년이상경과분일수합계}}{365}$ +월부금

× 30일이상 경과분 중도해약이율 $\times \frac{\text{30일이상경과분일수합계}}{365}$

14.이자계산예시

가. 만기(후) 해약시 이자계산 예시

[적금계약내용]

계 약 금 : 1,000,000원, 계약일 : 2004. 7. 1,
월 부 금 : 81,566원, 만기일 : 2005. 7. 1

1) 2005. 7. 1일(만기일)에 해약 요청시 지급 이자액 : 1,000,000 - (81,566×12) = 21,208

o 주의 : 가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원금과 21,208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임에 유의하여야 함

2) 2005. 7. 13(만기일 경과후 1년이내 해약)해약 요청시 지급 이자액 (약정이율이 4%인 경우)

가) 약정지급 이자액 = 1,000,000 - (81,566×12) = 21,208원

나) 추가지급 이자액 = $1{,}000{,}000 \times \frac{4\% \times 1/2 \times 12(\text{만기일경과일수})}{365}$ = 650원(10원미만 절사)

다) 지급 이자액 = 21,208원 + 650 = 21,858원

3) 2006. 7. 1(만기일 경과후 1년이내 해약)일 해약시 지급 이자액 (약정이율이 4%인 경우)

가) 약정지급 이자액 = 21,208원

나) 만기 경과후 1년이내 경과분 지급이자액= 1,000,000원 × 2% = 20,000원

다) 지급이자액 = 21,208원 + 20,000 = 41,208원

나. 이연만기일 산출요령

[적금계약내용1]

계 약 일 : 2004. 7. 1, 총선납일수 : 15
만 기 일 : 2005. 7. 1, 총지연일수 : 56, 계약기간 : 1년

1) 이연일수 = $\frac{56-15}{12(\text{계약월수})}$ = 3.4 = 4일

2) 이연만기일 = 2005. 7. 1 + 4일 = 2005. 7. 5

[적금계약내용2]

계약일 : 2004. 7. 10, 총선납일수 : 25
만기일 : 2005. 7. 10, 총지연일수 : 670, 계약기간 : 1년, 최종납입일 : 2005. 9. 5

1) 이연일수 = $\frac{670-25}{12}$ = 53.75 = 54일

2) 이연만기일 = 2005. 7. 10 + 54 = 2005. 9. 2

3) 이 경우 이연만기일이 최종월부금 납입일(2005. 9. 5) 이전에 발생되기 때문에 최종월부금납입일 다음날인 2005. 9. 6일이 이연만기일이 됨

다. 중도해약시 이자계산요령

[적금계약내용]

계약금액 : 1,000,000원, 계약일 : 2004. 4. 10
월부금 : 81,179원, 만기일 : 2005. 4. 10

회차	월별	납입일자	선납일수	지연일수	회차간운용일수	월별운용일수	비 고
1	4	2004. 4. 10			35	485	
2	5	5. 15			49	450	
3	6	7. 3			64	401	1년이상 경과분= 1,336일 (485+450+401)
4	7	9. 5			2	337	
5	8	9. 7	생략	생략	28	335	1개월이상 경과분=1,254일 (337+335+307+151+94+30)
6	9	10. 5			156	307	
7	10	2005. 3. 10			57	151	
8	11	5. 6			64	94	
9	12	7. 9			30	30	

1) 2005. 8. 8 중도해약시 지급이자액

가) 회차간 일수산정

나) 월별 운용일수 산정

다) 총운용일적수 산정

o 1년(365일)이상 경과분 해약이자 = 81,179 × 2.0% × $\frac{1,336}{365}$ = 5,942(소숫점이하 절사)

o 1개월이상 경과분 해약이자 = 81,179 × 2.0% × $\frac{1,254}{365}$ = 5,577(소숫점이하 절사)

o 지급이자액= 5,942 + 5,577 = 11,519 → 11,510(10원미만 절사)

15. 원천징수

제1장 예금총칙 중 원천징수 예에 따라 처리함.

Ⅱ. 가계우대정기적금

1. 의의 및 목적

가계우대정기적금제도란 가계의 소액 정기적금에 대하여 금리를 우대하는 적립식예금의 일종으로서, 외적으로는 도농간의 균질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농어민의 가계경제생활에 기여하고 저축을 증대시켜 내자동원을 극대화하게 되며 내적으로는 우체국예금 상품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우체국 금융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축성 자금을 늘려 우체국금융자금의 안전성확보와 우체국금융세입증대를 도모 목적

2.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3. 예치한도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예치(계약액) 한도는 5,000만원(이자포함)으로서 1개인당 5000만원을 초과하여 계약 불가 (계좌수는 제한없음)

4. 계약기간

6개월~36개월 (월단위)

5. 이 율

가. 만기해약 이율 : 이율표 참조
나. 중도해약이율 : 정기적금과 동일
다. 만기후이율 :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과 동일
라. 우대이율 : 가계우대정기적금 가입시 웰빙우대저축을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하면 연 0.1%P 우대이율이 계약금액에 포함됨
마. 인터넷뱅킹 가입 : 가계우대정기적금 + 0.2%P(우대이율)
바.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6. 계약액 및 월부금

가. 계약액
1) 1만원이상 5,000만원이하로 함. 다만 월부금의 소숫점이하 절상으로 인한 초과금액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봄
2) 계약액 산출공식 : 월부금×(총 납입횟수+총운용월수×기본금리의 월리)

나. 월부금
1) 월부금은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다음 공식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함
2) 산출공식 : 월부금 = $\frac{\text{잠정계약액}}{\text{납입총회수} + \text{총운용월수} \times \frac{\text{약정이율}}{12}}$

$\left(\text{총운용월수} = \frac{\text{계약월수}(\text{계약월수}+1)}{2}\right)$

7. 통장 및 서식의사용

적립식예금통장 및 관련서식 사용

8. 적용범위

가. 가계우대정기적금에 관하여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규칙과 본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이 예금의 취급절차는 제1장의 예금총칙과 제2장의 정기적금을 준용함

9. 지급이자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지급이자는 계약액-월부금납입총액으로 하며 동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10. 이자계산방법

가. 만기해약지급이자 : 계약액-월부금납입총액(만기해약지급이자는 원단위까지 산출)

나. 중도해약 지급이자

1) 95. 2. 1까지 가입분 = 월부금 × $\frac{\text{총운용일수}}{365}$ × 해당이율

2) 95. 2. 2 이후 가입분 = (월부금×1년이상경과분 중도해약이율× $\frac{\text{1년이상경과분일적수합계}}{365}$)+(월부금× 30일 이상경과분 중도해약이율 × $\frac{\text{30일이상경과분일적수합계}}{365}$)

다. 만기경과 후 해약지급이자

1) 6개월 이내분 : 약정이자지급액+(계약액×만기일당시이율의 1/2×만기경과일수/365)

2) 6개월 초과분 : 약정이자지급액+(계약액×만기일당시이율의1/2×경과일수(6개월간)/365)+(계약액×만기일당시 보통예금이율×경과일수(6개월이후)/365)

o 약정지급이자액이 원단위까지 계산될 경우에는 약정지급이자액에 대하여는 국고단수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만기후이자에 대하여는 국고단수법을 적용하여 10원단위미만 절사

라. 만기도래 전 해약시 차감이자 : 일반 정기적금의 만기도래전 지급(만기일이내지급)은 가계우대정기적금에 있어서 인정되지 아니하나 만기일 이연(월부금 지연납입에 의한 만기일연장)으로 인한 만기도래전 지급(만기일이후 지급)은 다음 방식에 의한 이자를 계산하여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음

1) 차감(지연)이자=월부금×(약정이율+2%)× $\frac{\text{지연일수}}{365}$ (차감이자는 원단위까지 계산)

마.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일 경우 : 만기일 전영업일에 해약시는 만기도래전 해약으로 처리됨

※ 인터넷가계우대 정기적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전영업일 해약은 중도해지 처리되며, 휴일 이후 익영업일의 이자계산은 만기후 이율로 계산 (2007.8.1일 이후 예입분부터 적용)

11. 원천징수

제1장 예금총칙 중 원천징수 예에 따라 처리함

Ⅲ.이웃사랑자유적금

1. 상품 의의 및 특징

가. 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사회 소외계층과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헌혈자 등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는 고객 및 농어촌 고객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사랑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나. 특징

1) 우대이율의 적용

가) 만기 지급 시 : 정기적금 만기 이율 + 연 0.3%P

나) 일반 중도해지 시 :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 연 0.3%P

2) 특별중도해지 시 예치기간별 정기적금 만기이율

3) 월부금의 납입정일을 정하지 않는 자유적립식 예금

2.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실명의 개인(1인 2계좌)

1) 사회 소외계층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다)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 가정

2) 사랑 나눔 실천자

가)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나) 헌혈자(5회 이상), 입양자

3) 농어촌 지역 주민 :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나. 취급우체국 : 전국우체국

다. 계약기간 : 6개월 ~ 3년(월 단위)

라. 가입금액 : 월 1만 원 이상 (원 단위), 1계좌당 3,000만 원 이하

마.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바. 동 예금의 통장은 적립식예금 통장 사용

사. 납입방법 : 월부금액과 납입정일을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아. 월부금 예입금액 중 수표에 의한 예입금액이 부도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수표 금액을 부도지급 처리함

자. 가입당시 계약금액을 설정하되 계약기간 중 가입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 증액할 수 있음

차. 동 예금은 우수고객 선정 대상 예금이 아니며, 예금모집경비도 지급하지 아니함

※ 가입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또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예금 계약은 유효함(단, 장애등록증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만 가입가능)

◈ 고객안내 사항 ◈

가입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인 경우 타 금융기관 포함하여 금융자산(이자포함)이 300만원(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은 900만원) 이상이 되면 생계비 수급 자격여부 및 수급금액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장애수당 수급 장애인도 동일 기준 적용됨

3. 가입대상자확인방법

가. 사회 소외계층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별표 1 참조)

2) 장애인

가)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애인(별표 2 참조),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한 종류

※ 참고사항

– 확인서류를 복사하여 예금가입신청서 뒷면에 합철하여 보관한다.

– 장애인등록증에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유효기간까지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이후 수급자격 탈락,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예금 계약은 유효함

3) 다문화 가정

가)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확인서류

① 본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는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본인으로 발급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적 미 취득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음

4) 한부모 가족

가)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확인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별표 3 참조)

5) 소년·소녀가정

가)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나) 확인서류 : 수급자증명서(별표 1 참조)

6) 조손 가정

가)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2규정에 해당하는 자

나) 확인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별표 3 참조)

나. 사랑 나눔 실천자

1)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가) 대상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된 장기 기증(희망 등록)자

나) 확인서류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운전면허증(장기기증희망 표시),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한 종류

2) 골수 기증(희망 등록)자

가) 대상 : 골수이식등록기관에 등록된 골수 이식(희망 등록)자

나) 확인서류 : 골수기증희망등록증 또는 골수기증확인서

3) 헌혈자(5회 이상)

o 확인서류 : 헌혈증서 사본(5매 이상)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별표 4 참조)

4) 입양자

o 확인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기타 확인 가능한 서류 중 한 종류

다. 농어촌 지역 주민

1) 읍·면단위 지역 거주자

o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주민등록증으로 주소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단, 주민등록등(초)본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이자계산

가. 적용이율(가입당시 확정이율 적용)

1) 만기이율 : 기간별 이율의 구분은 정기적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정기적금 이율에 연 0.3%P 우대이율 지급

2) 일반 중도해지이율 (회차별 운용일수에 해당이율 적용)

가) 1개월 이상 1년 미만 경과 분 : 정기적금 1년 미만 경과 분 해지이율 + 연 0.3%P 추가

나) 1년 이상 경과 분 : 정기적금 1년 이상 경과 분 해지이율 + 0.3%P 추가

3) 특별 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의 예치기간별 만기이율 적용 (단, 가입 후 6개월 미만 경과한 계좌는 일반 중도해지이율 적용)

※ 만기해지 시에 지급하는 우대이율 연 0.3%P는 지급하지 않음

4) 만기 후 이율

'05. 3. 22 이전 가입 분	o 만기 후 1년 이내 : 가입당시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2 o 만기 후 1년 이후 : 가입당시 보통예금 기본이율
'05. 3. 22 가입 분부터	o 만기 후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1/2 o 만기 후 6개월 이후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이율

나. 이자계산방식

1) 만기일 해약 시

가) 매회 납입금의 일 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산출

o 계산법 : 만기이자 = 일 적수 × 만기이율 × $\frac{1}{365}$

o 예시 : 지급이자액 = (일 적수 × 가입당시 정기적금 만기이율 ×1/365)+(일 적수×우대이율(연 0.3%P)×1/365)

2) 만기일 이후에 해약 시

가) '05. 3. 22 이전 가입 분

o 만기 후 1년 이내 :

지급이자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가입당시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365}$

o 만기 후 1년 초과

지급이자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가입당시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6개월)}}{365}$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가입당시 보통예금기본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나) '05. 3. 22 가입 분 부터

o 만기 후 6개월 이내

지급이자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365}$

o 만기 후 6개월 초과

지급이자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기본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6개월)}}{365}$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 기본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3) 일반 중도해지 시

가) 일 적수에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계산

o 일적수 ×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 × $\frac{1}{365}$

* 1개월 이상일 경우 중도해지이율에 우대금리 (0.3%p) 포함

5. 특별 중도 해지 적용

가. 의의

동 예금에 가입 후 6개월 경과된 계좌로써,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적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가입자의 이익 보호

나.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증거서류

1) 계약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배우자의 주택구입에 따라 적금을 중도 해지 청구 시

o 증거서류 : 예금주 또는 예금주의 배우자(관계 증거서류 첨부) 명의의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2) 계약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 자녀의 결혼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청구 시

o 증거서류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일 경우 관계증거서류 첨부) 중 택일

3) 계약기간 중 예금주, 예금주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비를 목적으로 중도해지 청구시 (최소 2주 이상 입원 치료 시 해당)

o 증거서류 : 계약기간 중 예금주 또는 예금주의 배우자(관계증거서류 첨부), 미혼자녀(관계증거서류 첨부)의 진단서(2주 이상 입원치료 내용이 있어야 함)

※ 특별중도해지 증거서류는 특별중도해지 지급 청구 시에 제출해야 함.

다. 특별중도해지 조건

1)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준일로부터 해당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로 함

2) 사유발생 기준일

가) 결혼 시 : 실제 결혼일 또는 혼인 신고일

나) 주택구입 시 : 계약일로부터 대금 완납일까지의 기간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이전일

다) 병원입원 시 : 병원 입원일

라. 업무처리 : 특별중도해지 시 증거서류는 예금지급청구서에 합철 보관

6. 원천징수

가. 세금우대 이웃사랑자유적금은 세금우대원천징수 사무를 준용함

나. 생계형 이웃사랑자유적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음

7. 기타사항

가. 원부변경

1) 의의 : 예금주의 실지명의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불가. 다만,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2) 변경절차 : 가입자가 원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체국예금대체 등록(변경・해제)신

고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각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

나. 통장의 사용 : 우체국예금 적립식 통장 사용

다. 사고등록 및 해제 : 편람 총칙 중 사고등록 및 해제방법에 준하여 처리

라. 동 예금의 질권 설정은 가능하나, 양도·양수 불가

마.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우체국금융업무편람(상) 제1편 우체국예금업무 관련규정을 준용함

[별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수급자 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수급자 증명서</td><td>처리기간
즉 시</td></tr>
<tr><td rowspan="4">수
급
자</td><td>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td></tr>
<tr><td>주소(소재지)</td><td colspan="3">(통 반)</td></tr>
<tr><td>세대주 성명
(시 설 명)</td><td></td><td>세대주와의
관 계</td><td></td></tr>
<tr><td>수급자구분</td><td colspan="3">□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td></tr>
<tr><td colspan="2">용 도</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제 출 자</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 없음</td></tr>
<tr><td colspan="5">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인</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장 애 등 록 증

(앞면)

제 호

장애인등록증

사 진 (2.5㎝×3㎝)	성명	
	주소	

장 애 명 ____ 장애등급

중복장애 ____ 장애등급

유효기간(장애재판정일): . . .

20 . . .

(시·군·구청장)

직인 (1.5㎝ ×1.5㎝)

6㎜×54㎜(보존용지(1종)120/㎡)

(뒷면)

보 호 자	성 명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장애진단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기록란

일자 / 변경구분	변 경 내 용	확인청인

※ 이 증은 남에게 주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비고)

(1) 표지의 색상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2) 전면에 3㎝×3㎝ 크기의 휠체어마크를 배경으로 인쇄하되, 휠체어마크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며, 각 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애인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장애인증명서

발 급 번 호				
장애인	성 명			
	주 소			
	보호자			
장 애 등 록 일				
주 장 애		부 장 애		종합장애등급	
용 도				
제 출 처				

위 사람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 인

[별표 3]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세대주성명 (시 설 명)	
세대주와의관계	
용 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임을 신청하오니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구비서류 : 없 음	수수료
	없음

31311-24911일
95.11.2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표 4]

헌혈확인증명서



본 증명서는 부터 까지의 헌혈사실의 확인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발급번호 :

등록번호		헌혈횟수		사용용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주소					

번호	증 서 번 호	헌혈일자	번호	증 서 번 호	헌혈일자

(상기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 사실을 증명함

서기 년 월 월

대 한 적 십 자 사 총 재

발급혈액원명 : 혈액원장(인)

※ 적십자는 재난구호, 헌혈은 생명보호 우리모두 적십자운동에 참여합시다.

Ⅳ. 가족多사랑(정기・자유)적금

1. 의의

가. 우리나라의 출산율 증대와 경로사상 함양 등의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공익형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함과 동시에 우체국예금의 마케팅 효과 증진 도모

나.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제공하는 예금상품을 보급하여 출산율 증대에 기여

다. 부모 봉양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경로사상 함양 및 가족사랑 증대

※ 출산율(명) : 한국 1.16, 일본 1.29, 미국 2.04, 세계평균 2.58, OECD평균 1.60

2. 상품특징

가. 가입고객의 결혼, 다자녀 및 부모 봉양 시 우대이율과 웰빙서비스 제공

나. 일정액(월 50만원) 이상 월불입금 납입 및 우체국 요구불예금에서 자동이체 시 추가 우대이율 제공

※ 단, 웰빙우대저축예금에서 이체는 가능하나 웰빙스윙서비스 우대이율 제공은 제외

1) 기본서비스(공익형 우대이율 + 웰빙서비스)

가) 공익형 우대이율 제공

o 계약기간 중 본인 결혼 시 : 연 0.2%P

- 확인방법 : 주민등록등본, 기타 혼인관계 증명 서류 중 한 가지

o 다자녀고객(만 6세까지의 자녀수에 따른 우대이율) : 연 0.1~0.3%P

- 대상 : 가입일 현재 만 6세까지의 자녀를 둔 적금가입자

※ 단, 가입기간 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한다.

- 만기 해지 시 가입기간 내 출산한 자녀를 확인하여 총 자녀수에 대한 우대이율 적용

- 제공이율 : 축하이율(만 6세까지의 자녀 1명) : 연 0.1%P, 행복이율(만 6세까지의 자녀 2명) : 연 0.2%P, 사랑이율(만 6세까지의 자녀 3명 이상) : 연 0.3%P

- 확인방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o 부모 봉양 시 : 연 0.1%P

- 대상 : 가입 당시 만 20세 이상의 적금가입자로서 부모 봉양자

※ 단, 계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가입 당시 주민등록상에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확인방법 : 주민등록등본

o 제출된 제반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나) 웰빙서비스

o 종합건강검진 할인서비스

- 제휴기관 : 한국의학연구소(www.kmi.or.kr)

- 검진항목 : 종합건강검진 + 최첨단 체력검진
- 대상고객 : 가입자 본인 및 가족
- 할 인 율 : 특별우대가 적용

※ 정상수가는 한국의학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o 이용방법

- 예금통장 사본 및 신분증(가족의 경우 가족을 증빙하는 서류 포함)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2) 부가서비스(부가형 우대이율)

가) 제공대상(정기적립식 적금상품에 한함)

o 월 불입액 기준 : 50만 원 이상 고객

o 자동이체 기준 : 우체국 요구불예금에서 자동이체 시

※ 단, 자동이체를 통해 12회차 이상 저축된 만기계좌에만 적용함

- 웰빙우대저축으로 가입 시 자동이체 약정을 할 경우 웰빙 스윙 우대이율은 없으나, 자동이체 12회차 이상의 경우에는 우대이율을 제공함

나) 제공이율

o 월 불입액 기준 충족 시 : 연 0.1%P

o 자동이체 기준 충족 시 : 연 0.1%P

3. 상품내용

가. 상 품 명 : 가족 多사랑(정기, 자유)적금

나.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다. 가입기간 : 6개월 ~ 3년

※ 정기적금 : 월단위, 자유적금 : 일단위 가입가능

라. 저축방법 : 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마. 저축한도

1) 정기적금 : 월 1만원 ~ 월 500만원 이하 (최초가입 1만원 이상)

2) 자유적금 : 월 500만원 이하 (최초가입 1만원 이상, 2회차부터 월 500만원 이하입금가능)

바. 과세조건 : 일반과세, 세금우대, 비과세(생계형)

사. 담보 제공 :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아. 이자지급방식 : 만기지급식 (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 소급하여 지급)

4 이율

가. 기본이율(정기적금이율표 참조)

1) 정기적립식 : 정기적금상품 이율의 기간별 이율과 동일

2) 자유적립식 : 정기적금상품 이율 - 0.1%

나. 중도해지이율(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동일 적용)

1) 30일 미만 : 연 0.2%p

2) 30일 이상 ~ 1년 미만 : 연 1.0%

3) 1년 이상 경과 분 : 연 2.0%

※ 상기이율은 '09.6.4 현재 적용이율이며, 향후 이율변동 시 변경될 수 있음

다. 만기 후 이율(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과 동일 적용)

1)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해당적금 계약기간별 고시이율의 1/2

2)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후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라. 만기도래 전 해약지급

1) 월부금을 완납한 가입자가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해약 시 차감이율 적용

2) 차감이율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 2%

5. 통장 및 서식사용

적립식통장 및 관련서식 사용

6. 이자계산방법

가. 정기적립식

1) 만기일 해약 시

가) 약정이자액 = 계약액 - (월부금 × 계약월수)

※ 계약금액을 원단위까지 계산할 경우 계약금액에 대하여는 국고금단수법을 적용하지 않으나, 만기 후 이자(중도해지이자 및 만기도래 전 이자 포함)에 대해서는 국고금단수법을 적용 하여 10원미만은 절사하여 지급

2) 만기 후 지급이자액

가)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이내 해약지급 이자액

o 공식 : 약정지급이자액 + (계약액 × 만기일 당시 해당적금 고시이율의 $\frac{1}{2}\times\frac{\text{경과일수}}{365}$)

나)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해약지급 이자액

o 공식 : 약정지급이자액 + (계약액 × 만기일 당시 해당적금 고시이율의 $\frac{1}{2}\times\frac{\text{경과일수(6개월)}}{365}$)

+ (계약액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3) 만기도래 전 해약지급 이자액 : 정기적립식에서 약정회차 이상 불입 후 만기일 이전에 해약하거나, 만기일자는 경과되었으나 이연납입 등으로 이자 약정일수가 부족할 경우에 해당

o 공식 : 약정이자지급액 - [계약액 × 만기도래 전 해약 시 차감이율 × 해약일로 부터 만기일(납입지연이 있을 경우에는 이연 만기일)까지의 일수/365]

※ 만기도래 전 해약지급 시 이자계산의 일수계산은 양편 넣기 이며 중도해약 이자액이 더 큰 경우에는 중도해약 이자액으로 지급함

나. 자유적립식

1) 만기일 해약 시

가) 매회 납입금의 일 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산출

o 만기이자 = 일 적수 × 만기이율 × $\frac{1}{365}$

2) 만기 후 지급이자액

가)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이내 해약지급 이자액

o 공식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해당적금 고시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365}$

나)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해약지급이자액

o 공식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해당적금고시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6개월간)}}{365}$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3) 중도해약지급

가) 운용일수별 일 적수에 해당 중도해지 이율을 곱하여 산출함

o 공식 : 운용일수별 일적 수 ×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 × $\frac{1}{365}$

7. 기타 업무처리시 참고자료

가.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고시이율을 별도 관리

나.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중도해지이율은 정기적립식으로 통합 관리

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의 만기 후 이율은 각각의 상품(정기적립식, 자유적립식) 약정이율의 1/2 적용

라. 정기적립식의 만기도래 전 지급 시 모든 우대이율을 포함하여 지급

마.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이후의 이율계산은 각종 우대이율을 포함하지 않고 약정이율로 계산

바. 가입 시 확정되는 우대이율(월부금 50만 원 이상, 부모봉양 시 우대이율 등)은 예금담보대월금리에 포함

사. 예금모집경비 지급 및 최우수고객 대상자 선정기준 적금에 포함

Ⅴ. 주니어우대자유적금

1. 의의

가. 어린이에 대한 조기 경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맞춰 우체국예금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취학 전 아동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저축의식 함양

나. 자녀에 대한 조기 경제교육과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마련의 일석이조 효과를 제공하는 주니어 전용 상품

다. 온라인 콘텐츠 등을 부가서비스로 제공하여 부모 및 자녀의 관심 제고를 통한 신규고객 창출

2. 상품특징

가. 주요내용

1)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및 부가서비스 제공

2) 고객 취향에 부합하는 특화된 서비스 제공

3) 상품특색을 반영한 통장명 자유선정기능 부여

4) 중도분할해지 기능을 부여하여 이용편의 도모 및 이자손실 최소화

나. 부가서비스 내용거래

1) 실적에 따른 기프트 문자서비스 제공

가) 제휴기관 : (주)M&Service(http://www.skmns.co.kr)

나) 제공사항 : 신규 가입 시 해당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기본제공 및 거래실적에 따라 서비스 차등 지급

o 최초 가입 후 1년까지 서비스 제공

o 서비스의 유효기간 : 쿠폰제공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쿠폰등록일로부터 90일이내 사용되어야함

다) 제공방법 : 기프트문자 쿠폰번호를 SMS로 제공

라) 쿠폰등록방법

o http://www.giftmunja.co.kr/ 사이트의 쿠폰등록창에 쿠폰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등록하기 (회원가입 필요없음)

마) 제공기준

(단위 : 개)

구 분	저축예금	자유적금

최초가입	1	1
자동이체	-	1
펀드로 자금이체시	1	-
생 일	1	1
어린이날 또는 학생의 날	1	1
T-money 충전시	4(분기당 1)	-
합 계	8개	4개

※ 어린이날 및 학생의날 지급기준

만 12세 이하 : 어린이날(5월 5일), 만 12세 초과 ~ 만 19세 미만 : 학생의 날(11월 3일)

※ T-money 충전 : 분기당 1회 이상 자동충전 실적이 있을 시 문자서비스 1개 제공, 해당 지급기준은 금융IC카드 시행시 제공 실시됨

3. 상품내용

가. 상 품 명 : 주니어우대자유적금

나. 가입대상 : 만 19세 미만의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다. 가입기간 : 1~3년(연단위) (재예치는 1년 단위로 하며 적용이율은 재 예치시점의 이율 적용)

라. 가입금액 : 가입시 최저 1만원이상 2회차 이후는 제한없음

마. 적립방법 :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자동이체 가능

바. 세제관련 : 일반과세

사. 제한사항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아. 이자지급방식 : 만기지급식

o 단, 우대이율은 만기해지시에 소급하여 지급

o 재예치시 우대이율(자동이체 약정, 어깨동무가입, 정기예금전환)은 최초와 같음

자. 자동 재예치

1)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장 18년(만 19세 미만까지)

2) 원리금(세금공제 후)을 동일 계약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약정 가능

※ 재예치 기간내에 만 18세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재예치까지만 가능

차. 분할해지

1) 이용횟수 : 3회(최종 해지 포함)까지 가능

2) 이용금액 : 적금 잔액의 90%범위내에서 가능하며, 인출금액 계산은 후입선출방식 적용

3) 적용이율 : 해지시점의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4. 이자계산

가. 적용이율

1) 만기이율 : 정기적금 해당기간 만기 정기적금 이율 + 0.1%P

※ 정기적금이율 변경시 만기이율 및 재예치이율도 연동하여 변경

2) 우대이율

가) 주니어우대저축예금에서 자동이체 약정시 : 연 0.1%P

o 만기해지 시점에 자동이체 약정이 유지된 계좌에 한해 우대이율을 적용. 단, 자동이체 이체실적이 전혀 없는 고객은 제외

나) 어깨동무이율 : 형제·자매·남매의 동시 가입시 모두에게 우대이율 0.1%P 제공

o 가입시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제출된 제반서류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다) 만기해지 후 정기예금으로 전환시 정기예금 이율 연 0.05%P 우대

o 정기예금, 챔피언정기예금, EVERRICH 회전식정기예금

나. 중도해지이율 :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다. 만기 후 이율(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1)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1/2

2) 6개월 이후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라. 이자계산방식

1) 만기일 해약시

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산출

o 공식 : 만기이자 = 일적수 × 만기이율 × $\frac{1}{365}$

2) 만기후 지급이자액

가) 만기일 경과후 6개월이내 해약지급 이자액

o 공식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6개월간)}}{365}$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3) 중도해약지급

가) 운용일수별 일적수에 해당 중도해지 이율을 곱하여 산출

o 공식 : 운용일수별 일적수 ×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 × $\frac{1}{365}$

5. 분할해지지급

가. 개념 :적금잔액의 90% 범위내에서 가능하며, 3회까지(최종 해지 포함) 분할 해지지급 가능하며, 분할해지지급 후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가입당시(또는 연장 시)의 약정조건과 동일하게 유지

나. 분할해지이율 : 해지시점의 주니어우대자유적금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다. 업무처리방법 :고객이 통장과 함께 창구에서 작성한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당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해지지급거래”를 통하여 분할해지지급하며, 통장 및 지급청구서에 분할해지지급임을 전산 인자함

라. 유의사항 : 분할해지 시 인출금액(적금액의 90% 범위 내)의 계산은 후입선출방식을 적용하며 분할해지 후 잔여예금에 대한 계약기간, 만기일, 이율적용 등 약정조건은 가입당시(또는 연장 시)와 동일

6. 기타업무처리시 참고자료

가. 거래실적에 따른 문자 제공서비스 :가입고객에게 발행할 문자서비스는 발주서를 통해 (주)M&Service에게 발주하여 구매하며, 최초 가입 후 1년간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 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고객에게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SMS문자서비스로 발송

나. 만기일이 휴일일 경우, 만기후 이율계산은 각종 우대이율을 포함하지 않고 약정이율로 계산됨

다. 주니어우대자유적금의 자동 재예치 서비스

1) 신규 가입시 고객의 의사에 따라 자동 재예치 약정이 가능하며 고객의사를 명확히 하고자 가입신청서(고무인 제작사용)에 고객이기재토록하며, 핀패드 상에서도 고객이 입력(동의여부 찬성 : 1번, 반대 : 2번)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 재예치 시 기본이율은 재예치 시점 기간 이율이 적용되며, 우대이율(자동이체 약정, 어깨동무가입, 정기예금전환)은 최초와 동일하게 적용됨

라. 주니어우대자유적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이 제한됨

마. 예금모집경비 지급 및 최우수고객 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존적금과 동일하게 적용

바. 기타 사항은 우체국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우체국금융업무편람(Ⅰ) 제 1편 우체국 예금업무 관련규정을 준용함

Ⅵ.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1. 의의

금융기관에서 소외받는 저 신용 서민층에 대하여 우대금리 상품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서민층의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 및 우체국예금 이미지 제고

2. 상품특징

저 신용 서민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본금리 외 연 7.0%p의 특별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신용등급 7등급 이하(7~10등급)이며 만 20세 이상의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나. 판매한도 : 23,000계좌(600억원)
다. 판매기간 : 출시일부터 한도 소진시까지
라. 저축한도 : 1인당 300만원 이하
마. 적립금액 : 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는 원 단위 적립
바. 가입기간 : 1년
사. 적용금리
  1) 기본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1년 만기 기본금리 - 연 0.1%p
  2) 특별우대금리 : 연 7.0%p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아.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자.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4. 가입대상자 확인방법

가. 신규 가입시 가입일 현재 우체국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신용등급 7등급 이하(7~10등급)인 경우 가입 가능
나. 가입대상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방법
  1) 본인이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여 우체국 창구에 방문
  2)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붙임1 참조)에 자필서명한 후 우체국 금융단말기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조회
  o 신용정보 조회 시 조회사유 코드 10번(기타/민원) 사용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조회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다만, 동 예금 가입을 위해 우체국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제공되는 신용정보 조회기록 및 평점에 반영되지 않음)

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및 조회된 자료는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5. 이율적용 방식

가. 적용금리

1) “기본금리”에 가입 시 확정된 “특별우대금리”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

2)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

3)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는 매회 납입금액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계산

나.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

다. 만기 후 이율 :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1)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1년 만기 고시이율의 1/2

2)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6. 이자계산

가. 만기일 해지

1)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여 산출

o 만기이자 = 일적수 × (기본금리 + 특별우대금리) × $\frac{1}{365}$

2) 예시

가) 매월 250,000원씩 저축 : 만기이자 = 일적수 × 만기이율 × $\frac{1}{365}$

= 594,000,000 × 연 10% × $\frac{1}{365}$ = 162,730원(세전)

회차	불입일	불입금액	누적금액	운영일수	적수	만기이자(연10%)
1	2010-04-22	250,000	250,000	365	91,250,000	
2	2010-05-20	250,000	500,000	337	84,250,000	
3	2010-06-18	250,000	750,000	308	77,000,000	
4	2010-07-20	250,000	1,000,000	276	69,000,000	
5	2010-08-17	250,000	1,250,000	248	62,000,000	
6	2010-09-20	250,000	1,500,000	214	53,500,000	
7	2010-10-22	250,000	1,750,000	182	45,500,000	162,730
8	2010-11-22	250,000	2,000,000	151	37,750,000	
9	2010-12-24	250,000	2,250,000	119	29,750,000	
10	2011-01-26	250,000	2,500,000	86	21,500,000	
11	2011-02-22	250,000	2,750,000	59	14,750,000	
12	2011-03-22	250,000	3,000,000	31	7,750,000	
만기	2011-04-22	3,000,000			594,000,000	

나. 만기 후 해지

1)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이내 해약지급 이자액

o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times\frac{\text{경과일수}}{365}$

2) 만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해약지급 이자액

o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times\frac{\text{경과일수(6개월간)}}{365}$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 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다. 중도 해지

1) 일적수에 해당 중도해지 이율을 곱하여 산출 : 일적수 ×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 × $\frac{1}{365}$

7. 통장이용조건

적립식통장 및 관련 서식 사용

8. 기타

가. 이 적금은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제외

나. 이 적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제외

다. 이 적금은 양도 및 담보 제공이 불가

9.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적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약관 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 교부

【붙임 1】

【용도 :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가입 시 제출용】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우체국(신용정보제공·이용자) 귀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귀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기록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당좌)예금 등

□ 조회목적 :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가입대상 자격 여부 조회

□ 조회동의 효력기간

- 「우체국 새봄자유적금」 가입을 위한 가입대상 자격 여부 조회로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당 부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조회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용도로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제공되는 신용정보 조회기록 및 평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Ⅶ. 2040$^{+\alpha}$ 자유적금

1. 의의

20~40대 봉급생활자와 카드 가맹점 등의 자유로운 목돈 마련과 우체국예금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적립식 예금상품 개발

2. 상품특징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 고객,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등에게 최고 연 0.4%p 우대금리 및 특별중도해지 서비스 제공

3.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
나. 저축방법 : 자유적립식 적금
다. 적립금액 : 가입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는 원 단위 적립
라. 저축한도 : 제한없음
마. 가입기간 : 6개월 ~ 3년(월 단위)
바. 적용금리
1) 기본금리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기간별 기본금리
2) 우대금리 : 최고 연 0.4%p

항 목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1. 급여이체 시	0.1	-	-	-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0.1	0.1	0.1	0.1
3. 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신용)카드 발급 시	0.1	0.1	0.1	0.1
4. 월 50만원 이상 우체국 요구불 예금에서 동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 시	0.1	0.1	0.1	0.1
5.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0.1	0.1	0.1	0.1

※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 우체국예금거래 기본약관에 의해 우대금리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행일 1개월 전에 우정사업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우체국에 게시

사.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아.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4. 우대금리적용방법

가. 우대금리는 신규 가입일에 각 우대금리 항목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으로 확인하여 적용
1) 급여이체자
가) 신규 가입일 현재 아래 조건을 갖춘 자
o 기관으로부터의 소속직원 급여 이체 시

o 급여이체약정 후 50만원 이상 급여성 입금실적과 자동이체 실적이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2) 신용카드 가맹점 우체국 결제계좌 약정 시

o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으로 가맹점 결제계좌 약정이 되어 있는 자

3) 우체국 체크 및 제휴카드 발급 시

o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요구불 예금을 결제계좌로 하여 발급된 우체국 체크 및 제휴(체크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

4) 월 50만원 이상 우체국 요구불 예금에서 동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 시

o 적금 가입시 우체국 요구불 예금에서 50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만기까지 납입횟수의 80% 이상을 자동이체 한 경우 만기해지 시점에 우대금리 제공

5)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

o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예금, 보험, 우편 우수고객인 자

※ 우수고객등급은 우수고객제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0.7월 현재)

- 예금 : S-MVP, MVP, VIP, GOLD
- 보험 : I-Top, I-Love, I-Friend
- 우편 : SVIP, VIP, 우대, 우수

※ 우편 우수고객은 가입시 '우편물류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며 증빙서류를 가입원부와 합철하여 보관

※ 우편물류시스템 → 우편 D/W → 고객분석 → 고객등급 → 고객별등급현황에서 "고객등급"을 " SVIP~우수 "까지 조회 후 총괄국 기준으로 확인("상품"은 일반통상, 특수통상, EMS, 택배 모두 가능)

5. 이율

가. 적용금리

1) "기본금리"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금리"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

2) 만기일이 휴일(우체국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익 영업일에 지급하며 만기 후 이자는 휴일기간에 대하여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지급

3) 만기일이 토요일과 연계된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해약시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만기이자는 매회 납입금액의 일적수에 만기이율을 곱하여 계산

나. 중도해지이율 :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

다. 만기 후 이율 : 정기적금 만기 후 이율 적용

1)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1년 만기 고시이율의 1/2

2)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6. 특별중도해지

가. 의의 : 이 적금 가입기간 중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적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일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나.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확인서류

1) 사유 :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유학, 결혼, 이민, 퇴직, 사업장의 폐업

2) 확인서류 : 예금지급청구서에 합철 보관

o 유학 : 입학확인서 등 유학 확인서류 및 항공권

o 결혼 : 청첩장 또는 혼인신고서
o 이민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이민 확인서류 및 항공권
o 퇴직, 사업장의 폐업 :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

다. 특별중도해지 조건

1) 적금 가입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로서,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익 영업일로함

2) 사유발생 기준일

o 유학, 이민 : 유학 또는 이민 출국일
o 결혼 : 실제 결혼일 또는 혼인 신고일
o 퇴직, 사업장의 폐업 : 퇴직일, 폐업일

라. 특별중도해지이율 : 가입일부터 특별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금리 적용

7. 이자계산

가. 만기일 해지

1)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여 산출

o 산식 : 만기이자 = 일적수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frac{1}{365}$

나. 만기 후 해지

1) 만기 후 6개월 이내

o 산식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times\frac{\text{경과일수}}{365}$

2) 만기 후 6개월 경과

o 산식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times\frac{\text{경과일수(6개월간)}}{365}$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보통예금 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다. 중도 해지

1) 일적수에 해당 중도해지 이율을 곱하여 산출

o 산식 : 일적수 ×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 × $\frac{1}{365}$

8. 기타

가. 이 적금은 적립식통장 사용
나. 이 적금은 우수고객 선정기준 대상 예금에 포함
다. 이 적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
라. 질권 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마. 이 적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 : 예금 잔액의 95% 범위 내에서 정해진 예금담보대월 한도까지 대월가능

9.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적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약관 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Ⅷ. 인터넷 2040$^{+\alpha}$ 자유적금

1. 개발배경

비대면 채널의 이용 증가에 따라 창구 상품의 가입채널 확대 등 전자금융 시장의 마켓 기반 조성을 위해 베스트상품의 리모델링 출시

※ 시중은행과 온라인 상품 비중 비교 : 은행 평균(39%), 우체국(26%)

2. 상품특징

급여이체 및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 이용,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 등에게 최고 0.4%p 우대금리 서비스 제공

3. 상품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 : 우체국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우체국계좌를 출금계좌로 등록한 고객으로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금융기관 제외)

나. 가입기간 : 이 적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이상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월 단위로 정할 수 있다.

다. 가입금액 : 가입시 1만원 이상 제한이 없다.

라. 적용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현재 정기적금 기간별 기본금리

2) 우대금리 : 각 항목별 연 0.1%p (단, 최고 연 0.4%p 적용)

① 급여이체 기 약정 고객(개인에 한함)
② 신용카드 가맹점 기 약정 고객
③ 우체국 체크 및 제휴 (체크, 신용) 카드 기 발급 고객
④ 우체국계좌에서 월 50만원 이상 동 적금으로 만기까지 자동이체시
⑤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

마.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 단, 세금우대는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세금우대, 생계형가입 조건은 연령에 한함

4. 적금의 가입

가. 인터넷 2040$^{+\alpha}$자유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

나. 이 적금은 가입 거래 후 계좌가 자동적으로 신규 개설되며, 가입금액은“인터넷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된 우체국예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함)”에서 이 예금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다.
(이 경우 전자금융서비스 이체한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 이 적금은 가입 완료 후 가입내용을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금가입증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출력할 수 있다.

라. 현재고증명 등 제반 증명서류는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5. 적금의 해약

가. 이 적금의 만기 자동해약은 인터넷뱅킹에서 가입 시 선택을 해야 하며, 만기 시 자동으로 모계좌에 이체된다. 단, 만기일이 휴일(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익 영업일에 이체된다.

o 만기금을 수령할 모계좌는 만기일 전에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o 이 적금의 만기 자동 해지 신청고객에게는 만기 자동 해지 안내(결과)가 SMS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발송된다.

나. 이 적금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뱅킹에서 만기 또는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다. 이 적금은 휴일도 만기일에 포함하며,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만기 해지가 가능하다.

※ 만기일이 휴일이어서 그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라. 이 적금은 특별중도해지가 불가하다.

6. 이율 적용방식

“기본이율”에 신규 가입시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

7. 이자 계산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만기이자 =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일적수/365

8. 중도해지이율

가. 일적수에 해당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중도해지이자 =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 × 일적수/365

나. 예치일수 :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의 전일

9. 만기 후 이율

가. 6개월 이내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 \times \frac{\text{경과일수}}{365}$

나. 6개월 초과

$$(\text{납입누계} + \text{만기이자}) \times \text{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 \frac{1}{2} \times \frac{\text{경과일수(6개월간)}}{365} + (\text{납입누계} + \text{만기이자}) \times \text{만기일당시 보통예금 이율} \times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10. 기타

가. 이 적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이 적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하다.

11.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40$^{+\alpha}$자유적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2. 약관 열람・교부

가. 이 적금은 우체국 인터넷뱅킹에서 고객의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하다.

나. 고객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go.kr)에서 이 적금의 약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체국 직원에게 약관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

Ⅸ. 우체국 Smart 퍼즐적금

1. 개발배경

미래 금융사업의 주력 채널인 스마트금융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고객 이용자 유치 확대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적금 상품 개발

2. 상품특징

스마트폰의 '퍼즐적금 알리미(Push Notification)' 기능으로 퍼즐미션부여 후 미션 수행 시 스탬프 수량에 따라 퍼즐완성이율을 제공하여 적금의 납입을 유도하고 Fun요소를 가미한 신개념 금융상품

※ 퍼즐적금 알리미(Push Notification) : 저축 알림 서비스로 주1회 발송

3. 상품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 :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에 가입한 개인 (1인 1계좌)
※ 중도해지 및 만기해지 후 신규가입 가능(신규혜택 적용)

나. 가입기간 : 6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월 단위)

다. 저축한도 : 2,000만원 (분기당 300만원)

라. 적립금액 :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는 원단위 적립

마. 목표금액 : 100만원 이상 ~ 저축한도 내에서 설정
※ 가입기간 중 저축한도 이내로 목표금액 초과 입금 가능.
단, 생계형·세금우대로 가입 시 생계형·세금우대 총 한도설정금액 이내로 목표금액 초과 입금 가능

바. 입금 방법 : 즉시이체, 자동이체, 퍼즐이체
※ 퍼즐이체 : 가입 시 지정한 모계좌에서 미션아이템 금액이 적립 계좌로
이체되며 퍼즐적금 알리미(Push Notification)서비스 제공 동의 시에만 가능

사.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아. 적용이율 : 기본이율 + 우대이율
1)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기간별 이율 - **연 0.1%p**
2) 우대이율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1.2%p**

<table>
<tr><th colspan="2">항 목</th></tr>
<tr><td>1.추천우대이율(최고 0.2%p)</td><td>신규가입 시 생성된 본인의 추천번호를 타인이 가입 시 입력할 경우 본인 및 타인 모두 각각 0.1%p</td></tr>
<tr><td>2.목표금액달성이율 (0.5%p)</td><td>가입 시 고객이 설정한 목표금액을 해지시까지 달성할 경우</td></tr>
<tr><td>3.자동이체우대이율 (0.2%p)</td><td>가입 시 적금 자동이체 1만원 이상 설정 후 해지시까지 유지할 경우</td></tr>
<tr><td>4.퍼즐완성이율(최고 0.3%p)</td><td>해지 시까지 퍼즐 미션 수행으로 제공된 스탬프 총 수량에 따라 제공
< 스탬프 총 수량 >
<table>
<tr><th>예치기간 / 이율</th><th>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th><th>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th><th>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th><th>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th><th>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th><th>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th><th>30개월 이상</th></tr>
<tr><td>0.3%p</td><td>20장 이상</td><td>30장 이상</td><td>40장 이상</td><td>50장 이상</td><td>60장 이상</td><td>80장 이상</td><td>100장 이상</td></tr>
<tr><td>0.2%p</td><td>10장 이상 ~ 19장 이하</td><td>15장 이상 ~ 29장 이하</td><td>20장 이상 ~ 39장 이하</td><td>25장 이상 ~ 49장 이하</td><td>30장 이상 ~ 59장 이하</td><td>40장 이상 ~ 79장 이하</td><td>50장 이상 ~ 99장 이하</td></tr>
<tr><td>0.1%p</td><td>9장 이하</td><td>14장 이하</td><td>19장 이하</td><td>24장 이하</td><td>29장 이하</td><td>39장 이하</td><td>49장 이하</td></tr>
</table>
※ 퍼즐완성이율은 퍼즐적금 알리미 서비스에 의해 퍼즐이체 후 스탬프 획득시만 제공</td></tr>
</table>

※ 가입 시 생성된 추천번호는 최고 0.2%p 우대이율 획득 시 사용 불가

※ 상기 우대이율 항목의 해지란 만기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를 의미

자. 과세구분 : 일반과세, 세금우대, 생계형

※ 단, 세금우대는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생계형·세금우대 가입 조건은 연령에 한함

※ 생계형·세금우대로 가입 후 사망의 사유로 해지 시에는 가입 기간의 기본이율에 예치기간동안 충족한 우대이율을 적용

4. 적금의 가입

가. 우체국 Smart 퍼즐적금(이하 “이 적금”이라 한다)은 스마트폰뱅킹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음

나. 이 적금은 가입 거래 후 계좌가 자동적으로 신규 개설되며, 가입금액은“출금계좌로 등록된 우체국예금계좌(이하 ‘모계좌’라 함)”에서 이 적금의 계좌로 즉시 이체

다. 이 적금은 가입 완료 후 가입내용을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적금가입증서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출력 가능

라. 현재고증명 등 제반 증명서류는 우체국 창구에서 발급 가능

5. 적금의 해지

가. 이 적금의 만기자동해지는 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 시 선택을 해야 하며, 만기 시 자동으로 모계좌에 이체됨. 단, 만기일이 휴일(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이체

- o 만기금을 수령할 모계좌는 만기일 전에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우체국 창구에서 변경이 가능
- o 이 적금의 만기자동해지 신청고객에게는 만기자동해지 안내(결과)가SMS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발송

나. 이 적금은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 우체국 창구에서 만기 또는 중도해지 가능

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만기해지 가능

6. 이자 계산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여 산출

- o 이자 = 일적수 × (기본이율 + 우대이율) $\times \frac{1}{365}$

7. 중도해지이율

가. 신규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 중도해지 이율 적용

나. 일적수에 해당 중도해지이율을 곱하여 산출

- o 중도해지이자 = 일적수 × 예치일수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 $\times \frac{1}{365}$

다. 예치일수 : 가입일로부터 중도해지일의 전일

8. 특별중도해지

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목표금액 달성 시 특별중도해지 이율 적용

나. 특별중도해지 이율은 신규 가입일 당시 기준으로 정기적금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이율에 특별중도해지 시까지 충족한 우대이율을 합산

9. 만기 후 이율

가. 6개월 이내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 \times \frac{\text{경과일수}}{365}$

나. 6개월 초과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당시 정기적금 고시이율의 $\frac{1}{2}$ × $\frac{\text{경과일수(6개월간)}}{365}$ + (납입누계 + 만기이자)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10. 기타

가. 이 적금은 분할해지가 불가

나. 이 적금은 예금우수고객 우대금리 지급이 불가하나, 예금우수고객 선정 기준 대상에는 포함

다. 이 적금은 우체국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라. 질권설정은 우체국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한해 가능

마. 이 적금은 예금담보대월이 가능

11.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적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2. 약관 열람・교부

가. 이 적금은 우체국 스마트폰뱅킹에서 고객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이해 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

나. 고객은 스마트폰뱅킹,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postbank.kr)에서 이 적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체국 직원에게 약관 및 상품설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도 있음

X. 우체국 재형저축

1. 개발배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품으로 서민·중산층의 저축률 제고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예금상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품특징

서민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적립식 장기저축상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발생 이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상품(농특세 부과)

3. 상품 주요내용

가. 상 품 명 : 우체국 재형저축

나. 예금종류 : 적립식 예금

다.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사업자
※ 단, 직전 과세기간 소득 확정 시점이전 가입자는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가입하되,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통보받아 가입지속여부 결정

라. 증빙서류 :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단, 2013.6.30.까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확인증명서에 갈음

마. 저축한도 : 분기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 (1만원 단위)
※ 고객의 全금융기관 재형저축 합산액

바. 가입기간 : 7년, 만기연장[주1] 3년이내 (최대 10년)
주1)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단위** 연장 가능

사. 적용이율 : 최초 3년간 '확정금리(기본이율+우대이율)', 3년경과 후 만기일까지 '변동금리(기본이율)' 제공
o 기본이율 : 신규 가입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 이율
o 우대이율 : 최고 연 0.3%p
-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다음의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 해지 시 가입 후 최초 3년간만 최고 연 0.3%p까지 우대이율 적용
① 우체국 통장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②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③ 우체국 스마트폰뱅킹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p
* 스마트폰뱅킹을 활용하여 우체국 수시 입출식 통장에 입출금 거래 실적이 있는 경우

* 스마트폰뱅킹을 통하여 우체국 예금상품에 가입한 경우
④ 자동이체 약정이 2건 이상 있는 경우 연 0.1%p
- **중도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음**

아. 과세구분 : 농어촌특별세[주1]부과 (이자소득세 감면)
주1) 농어촌특별세 : 감면된 이자소득의 10%

자.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차. 가입기한 : 2015. 12. 31까지

4. 예금 가입

가. 가입기준
o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직전연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주1]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이하[주2]사업자이며, 전 금융기관 분기별 가입한도액이 초과하지 않은 개인
주1)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이 외의 경우는 주2)의 기준에 따름
주2)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인 경우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o 가입대상 적격여부 확인 :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위 가입기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가입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우체국에 통지하여 확인함

나.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의 총 예금액이 분기당 300만원으로 “세금우대저축한도집중기관”을 통하여 조회·확인 가능

다. 가입시 증빙서류 :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증빙서류 및 계약대상자확인서 등은 예금가입신청서에 합철하여 보관
o 증빙서류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붙임2)
- 발급방법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사이트 홈텍스(http://www.hometax.go.kr) 에서 발급가능
※ 단, 2013. 6. 30.까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확인증명서에 갈음
o 가입대상여부 확인 서류 : 계약대상자 확인서 (붙임1)

라. 만기연장
o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연장 가능
o 처리방법
- 만기연장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 단위로 연장
- 만기연장 이후의 이율은 변동금리로 계산됨
- 만기연장 후 중도 해지 시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전 기간 일반과세 처리 함

마. 부적격고객 처리방법
o「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4」에 의해 국세청장으로부터 확인된 부적격 고객 처리방법
- 고객통보 :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적격 확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이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등록된 고객의 주소로 서면 통보(등기취급) 하여야 함

※ 부적격 고객의 등기 서면통보 내용은 (붙임3) 참조

- 예금납입 :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지 된 날을 기준으로 이 적금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추가 납입과 이자의 제공이 중단됨
- 과세여부 : 우체국에 부적격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감면된 세금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
- 부적격 판정 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로부터 우체국에 부적격판정 사실이 통지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본이율 적용
- 이의제시
  - 고객은 부적격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우체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우체국에 알려야함.
  - 단, 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고객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며,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판정되어 국세청이 우체국에 통보하여 우체국이 이를 알게 된 경우 중단된 납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함

바. 통장 인자

o 통장표지 내부 :'재형저축통장'임을 인자

o 통장내지 : 통장 내지 1면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구 인자

우체국예금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금은 "재형저축통장"으로,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전액(이자포함) 보호됩니다.

- 가입방법 및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분기 1만원이상 300만원이하이며, 1만원단위로 자유적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예금입니다.
- 만기이자율은 가입일부터 최초 3년간만 우대이율이 포함된 확정이율로 적용이 되며, 이후에는 우대이율이 제외된 기본이율의 변동이율을 적용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일 다음 연도 2월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입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부적격 고객으로 판정된 경우 우체국에 등록한 주소로 통보됩니다.
- 부적격 고객으로 확인되면, 부적격 통지일(우체국통지일)로부터 추가납입 및 이자 제공이 중단되며, 부적격 통지일 전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농특세 부과)
- 만기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만기일 1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상품으로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5. 이율적용방식

가. 적용이율 : 가입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입일 당시 게시한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적용하며, 3년 이후에는 이율변경일로부터 변경된 기본이율을 즉시 적용함

o 가입일로부터 3년 : 기본이율(3년확정) + 우대이율
o 가입일로부터 3년 이후 : 변경된 기본이율

나. 이자 계산 :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연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함

o 이자액 = 일적수 × 적용이율(연) × $\frac{1}{365}$

6. 중도해지

가. 일반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로 만기 전 당해 저축을 해지한 경우
o 중도해지 이율 : 우체국 이자율 조견표 참조하여 신규 가입일 당시 이 적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 :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적용
-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 기본이율
o 과세여부 : 이자소득세 부과 (일반과세)

나. 특별중도해지
o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13제5항에 의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및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o 과세여부 :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농어촌특별세 부과)
o 특별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로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본이율 적용
o 이자계산 : 일적수에 해당 특별중도해지 이율을 곱하여 산정
o 증빙서류 :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신고서”(붙임4)

7. 만기 후 해지

가. 만기 후 이율
o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우체국 재형저축 기본이율의 1/2
o 6개월 이후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나. 이자계산
o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우체국 재형저축 기본이율의 1/2
- 이자계산식 : (납입누계+만기이자) × 만기일 당시 우체국 재형저축 기본이율의 1/2 × $\frac{\text{경과일수}}{365}$
o 6개월 이후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 이자계산식 : (납입누계+만기이자) × 만기일 당시 우체국 재형 저축 기본이율의 1/2 × $\frac{\text{경과일수(6개월간)}}{365}$ + (납입누계+만기이자)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이율 × $\frac{\text{경과일수(6개월이후)}}{365}$

8. 기타

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시 해당 법령에 따름
나. 한도액 조절(증감)은 고객요청에 따라 거래할 수 있음
다. 분할해지 불가, 예금담보대월 가능

라. 이 예금은 질권설정은 가능하나, 양도·양수 불가
마. 이 예금의 경우 예금우수고객 선정 기준 대상에 포함됨
바. 이 예금은 우체국 예금 모집경비 및 별정국 취급수수료 지급대상에 포함됨

9. 적용범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기적금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 약관교부

우체국 직원은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 시 약관을 열람하거나 교부하여야 함

(붙임1) 계약대상자 확인서

「우체국 재형저축」 계약대상자 확인서

우정사업본부 앞

1. 본인은 재형저축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1]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2]임을 확인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소득의 미확정 등 국세청의 사정으로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전전연도의 소득확인증명서를 대신 제출합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외의 경우는 아래 2)의 기준에 따릅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본인은 국세청이 계약기간 중 본인의 가입자격을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소득 기준으로 검증하여 가입자격이 위 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우체국에 통지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재형저축 약관에 의거 부적격 통지일(우체국 통지일)로부터 이 예금에 대한 추가입금 및 이자제공이 중단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농어촌특별세 부과)

3. 이 적금은 가입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금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거래인감 또는 서명)

□ 대리인에 의한 작성시

이 확인서는 본인(명의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리인 성명 : (거래인감 또는 서명)

(붙임2) 소득확인 증명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2서식])

소득확인증명서 (재형저축 가입용)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단위 : 원)

[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④ 귀속연도	⑤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⑧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⑥ 법인명(상호)	⑦ 사업자등록번호	

[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⑨ 귀속연도	⑩ 종합(결정)소득금액	⑪ 근로소득 유·무	⑫ 사업소득 유·무	⑬ 근로·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⑭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⑰ 사업소득금액 (해당연도 소득금액)
	⑮ 법인명(상호)	⑯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유의사항

※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과 「근로(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이 모두 기재됩니다.

※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현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이 기재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 기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3) 부적격 고객의 등기 서면통보 내용

■ 등기번호 : _____

「우체국 재형저축」 가입요건 부적격 안내

_____고객님 (고객번호 : _____)

항상 저희 우체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고객님이 가입하신 "우체국 재형저축" 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4, 동 시행령 제92조의 13,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거 **국세청장이 고객님의 가입 직전년도 소득금액에 대한 적격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부적격 가입대상으로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우체국 재형저축」 고객 안내사항

우체국명	신규가입일	계좌번호	부적격 사유	부적격통지일

○ 현재 우체국 재형저축의 가입조건은 가입일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주1]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이하[주2]사업자입니다.

주1)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이 외의 경우는 주2)의 기준에 따름)

주2)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이하인 경우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

○ **부적격 통보 고객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제약사항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금납입 : 우체국이 고객 부적격 통지를 받은 날(2000년 00월 00일)로부터 해지된 것으로 보고 별도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추가입금 및 이자제공이 중단**됩니다.
- 이자소득 계산 : 고객 부적격 통지일 전일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된 세금의 1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 이의제시 및 통보방법
  · 고객이 부적격 통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적격 통지일(우체국 통지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정기간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며, **우체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단, 고객의 사망, 해외장기출장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14일 이내에 우체국에 그 수용 여부를 통보하고 가입 자격이 적격으로 판정되면 국세청이 이를 우체국에 통보 하고 우체국이 이를 알게 된 경우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본 고지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본 내용에 고지되지 않은 실제 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 그 시행령, 시행규칙 및 상품약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 시에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_____ 고객님의 관할사무소는 _____ 세무서이며 담당자는 _____(☎ _____)입니다.

○ ○ ○ 우체국장

(붙임4) 특별중도해지 사유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저축명	⑤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⑥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해지사유 및 증거서류

⑦ 저축해지사유	⑧ 사유 해당일	⑨ 해당 유무	증거서류
가. 가입자의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나. 가입자의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다. 가입자의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가입자의 퇴직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는 적용하지 않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마.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폐업증명원
바. 저축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사. 저축취급기관 또는 투자신탁등의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위 사유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만 해당함.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 ※ 위 사유는 장기주택마련저축만 해당함.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등
차.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 위 사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해당함			
카.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위 사유는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녹색저축만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구,제80조제8항(개인연금저축)
[ ] 구,제80조의2제8항(연금저축)
[ ] 제80조의3제7항(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제81조제6항(장기주택마련저축)
[ ] 제81조제12항(주택청약종합저축)
[ ] 제83조제10항(세금우대종합저축)
[ ] 제92조의6제13항(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 ] 제92조의8제2항(장기주식형저축)
[ ] 제92조의9제4항(장기회사채형저축)
[ ] 제92조의11제4항(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 ] 제92조의12제6항(녹색저축)
[ ] 제92조의13제5항(재형저축)
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예) 해지일이 10월 1일인 경우 사유 발생일이 4월 1일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2. 저축해지사유 '자. 저축해지 전 3개월 이내의 주택취득'의 경우의 예외사항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만 적용됩니다.
- 해당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 해당사유의 주택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추징만 해제되며, 소득공제 감면세액 등은 추징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근거법령

[조세특례 제한법]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재형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 관리,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형저축 가입자가 법 제91조의14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가입자의 저축 가입연도(저축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형저축 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91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식 저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에 따라 설립·설정된 자집합투자기구에 가입하는 저축을 포함한다.

⑤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제81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하며, 법 제91조의14제3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재형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재형저축통장에 의하여 재형저축을 취급하여야 하며, 재형저축통장의 표지에 "재형저축통장"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재형저축의 약관에 재형저축의 계약금액 한도, 조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⑧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4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92조의13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재형저축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2.23]

제 4 절 기 타

Ⅰ. 국고예금

1. 의의

국고예금이란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등의 회계직공무원이 계좌를 개설하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관행에 의해 처리되는 일반계좌이나, 해당 자금이 국고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 따라 예외적으로 관리되는 수시 입출식 요구불예금

2.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출납공무원이 배치된 국가기관
나. 취급우체국 : 전국우체국
다. 가입한도액 : 최저 1원이상 최고 한도액 없음
라. 통장은 수시입출식 통장을 사용
마. 계좌번호는 보통예금 계좌번호 체계를 준용함

3. 계좌의 종류

가. 선사용 우특손익, 선사용 예특손익, 선사용 우특자본, 선사용 예특자본
나. 관서 우특손익, 관서 예특손익, 관서 우체국보험
다. 타기관

4. 적용범위

국고예금에 관하여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예금에 정한 바에 따름

5. 이자율의 적용 및 계산

가. 이자율 : 이율표 참조
o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이자를 발생하지 아니하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기타 회계는 보통예금과 동일
나. 이자의 계산기간
1) 이자의 계산기간은 전년도 11월 1일에서 당해년도 4월 30일과 당해년도 5월 1일에서 당해 년도 10월 31일까지로써 연 2회 이자 지급
2) 이자 계산기간의 초일과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이자 계산기간은 불변
3)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이자내역을 5월 10일 및 11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한국은행으로 전송함
다. 이자의 지급시기
1) 국고예금 이자의 지급시기는 매년 5월 15일과 11월 15일로 함 (단,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
2) 이자의 지급시기 이전에 해지된 계좌에 대하여도 이자의 지급시기는 동일함
라. 이자의 지급방법

1) 국고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원가하지 않고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 또는 중앙관서 세입징수관 세입계좌의 세입금으로 납부
2) 우정사업정보센터는 한국은행으로 거래내역 전송시 계좌별 이자계산기간 동안의 부리적수, 이자율 및 이자금액을 산출하여 전송
3) 한국은행은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제출한 이자금액에 대한 차기내용을 사전에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통보함
4) 한국은행은 이자지급일에 우리부의 당좌예금에서 차기하여 각 세입징수관 계좌의 세입금으로 납부함
5) 이자 지급후 이전 이자계산기간의 오류발생분은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개별적으로 세입금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요청함

마. 이자계산 방법 : 이자 = 적수 × 이율 / 365 (10원미만 절사)

6. 계좌의 신설,변경 및 폐지

가. 계좌의 신설

1) 예금계좌의 개설 및 인감신고 등은 일반예금 절차에 준하여 취급
2) 계좌개설시 업무취급방법
   가) 국고예금계좌개설신청서 (현행 예금가입신청서 사용)
   나) 예금주 : 관서명 (출납공무원의 성명 등록 불필요)
   다) 실명번호 : 고유번호 (부가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라) 실명번호 확인 : 고유번호증 사본
   마) 인감 : 출납공무원 등 직인(필요한 경우 사인 추가 날인 가능)
   바) 비밀번호 : 출납공무원 등이 임의로 부여
3) 전산시스템
   가) 통장 필수 기록사항 : 성명(관서명), 계좌번호, 계좌관리우체국(우체국명, 지로코드, 전화번호), 신규개설일, 통장발행일



(직경 2.5~3.0cm)


(직경 2.5~3.0cm)

   나) 통장전면 또는 최초 계좌개설시 통장인자란에 다음 문구를 인쇄함
4) 출납공무원은 계좌개설 사실을 관할 한국은행 통할점에 서면 통보하여 출납공무원계좌에 등록요청
   가) 중앙관서장 또는 기관장의 관직 지정 통보 사본 첨부
   나) 출납공무원 등의 성명등록 생략(세입징수관과 동일하게 관리)

나. 계좌의 변경

1) 출납공무원 등 국고예금 계좌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래 우체국에 변경신청함
   가) 국고예금 계좌정보(계좌번호를 제외한 관서명, 주소, 인감, 비밀번호 등) 변경은 거래 우체국에서 일반적인 예금거래절차에 따라 처리
   나) 거래인감의 변경은 출납공무원 등 교체 또는 인장 마모의 경우에만 변경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출납공무원의 공문(신.구 직인 또는 사인, 신.구 비밀번호 명시)수령 후 처리
   다) 출납공무원 등 교체에 따른 비밀번호 변경 또는 비밀번호 망실의 경우 우체국 예금규정에 의거 비밀번호를 교체함
   라) 관서명, 주소 등의 변경시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등이 한국은행 통할점에도 통보
2) 국고예금 계좌번호는 변경 불가능하며, 변경 필요시 신설, 폐지 절차에 의함

3) 국고예금 계좌의 우체국간 이관을 금지하며 우체국간 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지 후 신설

다. 계좌의 폐지

1) 출납공무원 등은 계좌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우체국에 계좌해지 신청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통할점에 계좌폐지 서면신청 병행

2) 국고예금계좌는 거래가 장기간 중단되더라도 휴면계좌로 분류·관리하지 않음

라. 계좌 신설.폐지 정보의 한국은행앞 전송

o 전산관리소는 당일 국고예금 계좌의 신설.폐지 내역을 익영업일에 한국은행으로 전송한다. 단, 당일 신설.폐지가 없더라도 계좌현황정보는 매일 전송함

7. 입.출금 거래

가. 입금

1) 국고예금 계좌에 대한 입금은 통장에 의한 창구입금 뿐 아니라 한국은행을 통한 계좌입금, 무통장입금, 온라인입금, 타행환입금,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을 통한 입금 등 모든 방법으로 가능

o 지출관이 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는 실시간 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을 활용한다.

2) 입금 가능시간 : 08:00 ~ 24:00.

3) 입금전표 사용은 우체국 보통예금 규정을 준용함

4) 당좌수표, 어음 등에 의한 입금 불가능

나. 출금(계좌이체 포함)

1) 국고예금 계좌의 출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현금인출함

가) 정부구매카드 사용에 의한 지출

o 출납공무원 등은 정부가 지정한 카드사가 발급한 정부구매카드(신용카드)에 의거 지출함

o .카드사는 이용대금을 월2회 지급청구하며, 동 대금은 출납공무원계좌에서 자동 결제함

나) 현금출금 또는 계좌이체에 의한 지출

o 인근에 카드가맹점이 없는 경우, 해외송금경비, 군인훈련경비, 기밀성 경비, 관내 출장경비 등

2) 출금거래는 일반예금 거래 관행에 의하되, CD/ATM 등 자동화기기나 전자금융(PC,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출금은 금지한다. 다만, 전자금융의 경우 금융결제원을 통한 전자이체업무는 가능하며, 각종 공과금 등 자동이체와 계좌간 자동이체업무도 가능

3) 출금시에는 우체국의 예금지급청구서와 통장을 사용

4)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계좌 상호간 이체는 불가능

5)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 계좌, 타부처 국고예금 계좌는 급여입금 모계좌 약정/해제 거래 및 급여내역 입력/취소 거래와 다량 이체 등이 가능

다. 수수료

1) 국고예금 계좌에서 출금하여 타 예금계좌로 이체(타행 이체 포함), 자기앞 수표 발행 등 출납공무원의 예금거래에 따른 수수료는 면제

2) 국고예금 계좌로의 입금에 따른 수수료는 우체국 거래 관행에 따름

o 다만, 출납공무원이 거래 우체국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라. 입출금 거래내역의 전송

o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당일 입출금 거래내역(잔액포함)을 익영업일에 한국은행으로 송신함

8. 반납

국고예금 지출분에 대한 반납금은 입금거래에서 입금구분을 반납입금으로 처리

9. 정정

가. 출납공무원 등의 착오에 의한 정정 요청은 정당 계좌에서 통상 출금하여 착오 출금된 계좌에 통상 입금 처리(통상 입출금 거래와 동일한 절차를 취함)함

나. 우체국의 착오에 의한 정정은 우체국의 예금거래 착오 정정 방법에 따라 취소후 재입력함

다. 필요시 출납공무원 등은 한국은행앞 월분, 회계연도 정정을 의뢰함

10. 자금교부 횟수

관서운영경비의 통상교부 횟수는 월 2회 이상으로 함

11. 월계대사 및 계산증명

가. 국고예금계좌에 대한 월계대사는 한국은행 통할점이 수행

나. 한국은행은 출납내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동 회계처리 결과에 대한 계산증명 책임 부담

o 한국은행은 우리부에 대하여 출납내역 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보유하며 국고예금계좌의 잔액증명은 우체국이 담당함

12. 출납정리 기한의 운용

가. 국고예금계좌에는 회계연도, 출납정리기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거래

o 출납공무원등은 매 회계연도 말일 잔액을 지출관앞으로 반납하거나 이월 사용함

나. 국고예금에 대한 한국은행의 국고계리시에도 출납정리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o 예탁금, 보관금 등 특별계정에는 출납정리기간을 미적용

Ⅱ.환매조건부 채권

1. 채권의 의의

가. 채권의 개념

1) 채권은 국가 .공공단체. 기업이 타인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채무를 표증하는 유가증권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로서 지출하는 화폐를 조달하는 재원은 조세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국가활동의 기능확대에 따라 팽창하는 경비의 조세수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공채의 역할은 큼

3)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는 주식회사 형태의 사기업이 일반공중으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쳐 다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 형식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다.

나. 주식과 사채

1)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주식과 사채가 있음

2) 주식의 소유자인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기업경영에 참가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지만 사채권자는 경영의 참가권은 없고 언제나 일정한 이자 및 원금의 지급을 받는 확정부리증권이며 보통 2, 3 년 이상의 장기채무이기 때문에 장기자금의 조달수단으로 적합한 것

2. 채권관계 법령

가. 증권거래법

1)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증권거래에 관한 기본법임

2) 이 법이 근거가 되어 설립된 증권관리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증권거래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가) 금융감독위원회 : 유가증권의 발행관리 및 공정한 거래와 증권관계기관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

나)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유가증권의 발행을 촉진하고 그 관리와 공정한 거래를 기하며 증권관계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다) 증권거래소 : 투자자의 보호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증권의 집단매매거래를 행하는 조직적인 시장으로서 유가증권 시장의 개설.운영.관리와 그 부대업무를 행함

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1) 우체국에서 채권매매업무를 취급하게 된 직접적인 근거법이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법률임.

2) 이 법은 예금 및 보험사업으로 조성된 자금의 운영방식의 하나로서 국.공채의 매입과 매도를 규정하고 있음

3) 즉 예금의 지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 수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여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환매조건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우체국은 국채.지방채.특수채의 매입뿐만 아니라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 것임 (법 제18조, 법 제19조)

다. 우체국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1)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은 매입한 국.공채의 매도에 필요한 취급관서.취급절차 및 조건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이와같은 위임규정에 의하여 매도 및 환매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시행

령이 .우체국의국채.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임

3) 이 규칙은 매도업무 취급관서.매도채권대상.매수신청.매도시 채권보관증 또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매통장과 일반채권매도약관 또는 환매조건부 채권매도약관의 배부.채권의 매도가격.환매수가격과 이율적용등에 관한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3. 채권의 종류

o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공채와 사채로 나늠

.o 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말하며 공채는 다음과 같이 국채. 지방채. 특수채로 분류

가. 국채 :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발행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사업국채

o 국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철도채권, 도로국채, 국민주택채권. 국민투자채권.양곡기금증권등이 있음

2) 적자국채

o 세입부족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재정자금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발행하는 건국국채.산업부흥국채.재정증권.국고채권등이 있음

3) 군사국채

o 군비 및 전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다.

나.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도로공채.지하철공채.상수도공채등이 있다.

다. 특수채

1) 정부출자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공채와 사채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다. 통화안정증권(한국은행), 토지개발채권(토지개발공사), 전력채권(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채와 전신전화채권, 산업금융채권(산업은행), 장기신용채권(장기신용은행), 외환금융채권(외환은행), 주택채권(주택은행)등이 있음.

2) 특수채중에서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특별히 금융채라고도 함

라. 회사채

주식회사 형태를 가지는 사적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다.

4.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 형태

가. 이자의 지급형태에 따른 분류방법으로서 현재는 이표채가 대부분이나 선이자채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채권 등이 있고 최근에는 금리연동부사채도 발행되고 있다.

1) 복리채 : 채권의 상환일에 원금과ㄴ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는 채권

2) 할인채 :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미리 공제(할인)한 금액으로 매출하는 채권

3) 이표채 : 채권의 권면 상에 이자표가 붙어 있어서 이자지급일에 이를 테어서 이자를 지급받는 채권

나. 채권의 원금상환기간의 장단에 의한 구분으로 나라에 따라서 상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상 다음과 같이 구분됨

1) 단기채 : 1년 미만

2) 중기채 : 1년~5년 미만

3) 장기채 : 5년 이상

5. 환매 조건부 채권통장

가. 의의

환매채권통장이라 함은 우체국이 매도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 실물대신에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증명하는 증거서로 채권을 담보로 이루어 지는 일종의 예금통장과 성격이 같음

나. 이용조건 : 환매채권통장은 “일반형 환매채권”과 “확정형 환매채권”으로 구분하여 사용

다. 수불관리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 일괄조제 배부하여 사용하되 이의 수불관리는 우체국예금통장의 예에 준하여 처리

□ 환매조건부 매도

1. 의의

가. 우체국이 채권을 매도함에 있어서 일정기간경과후 약정가격에 의해 재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방법으로서 우체국은 보유채권을 담보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편의를 얻게 되며 채권의 매수인은 단기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받는 이점이 있음

나. 즉 당초채권매도자(우체국)는 환매전까지는 보유채권의 감소가 일어나지만 환매후에는 당초 매도전의 상태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까지의 기간동안 보유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후 차입금 변제와 동시에 담보물을 회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며 매수자는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후에 회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다.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는 일정기간 경과후에 일정한 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방법과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환 매 조 건 부 채 권 매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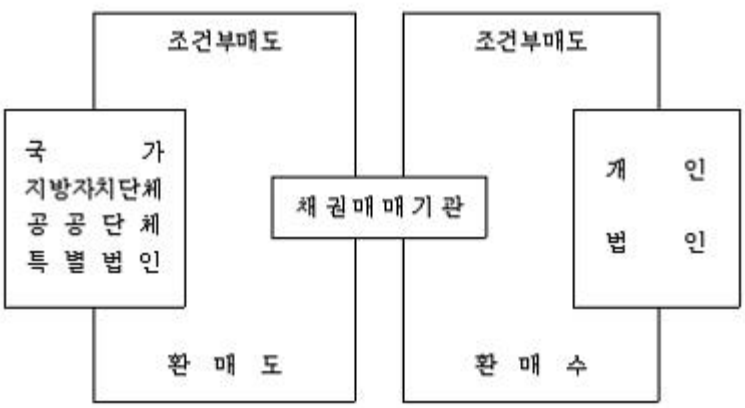

1) 매도채권의 보관(약관 제8조)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매수인에게는 채권실물 대신에 통장 교부.

2) 통장의 양도제한(약관 제14조)

매수인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단, 상속.유증.판결.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매도가격(약관 제2조)

조건부 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액면금액을 분할할 수 있음 분할매도시의 최저한도액은 50,000원이며 10,000원 단위로만 초과할 수 있음

4) 환매수가격(약관 제5조)

가) 환매수가격 산식 : 환매수가격 = 매도가격 × (1 + $\frac{\text{약정일수}}{365}$ × 매도이율)

나) 제1항의 산식중 매도 이율은 지식경제부가 정한 이율을 적용

다) 제1항의 산식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 까지의 일수로함

5) 약정기간(만기) 및 환매수 이율

조건부채권의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환매수 이율은 대한증권업협회의 협정에서 정하는 이율로 함 (단,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약정기간내라도 환매수청구에 응할 수 있음)

가) 환매조건부채권환매수이율

기 간	이 율	기 간	이 율
6일까지	무 이 자	61 ~ 90 일	이율표 참조
7 ~ 15 일	이율표 참조	91 일 ~ 180 일	이율표 참조
16 ~ 30 일	이율표 참조	181 일 ~ 1 년 미만	이율표 참조
31 ~ 60 일	이율표 참조	1년 만기	이율표 참조

2. 매도조건

가. 환매조건부로 매출되는 매도조건은 통장면의 약과나으로 표시됨. 이 약관은 매매당사자간의 요구조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의견대립을 막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이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하며 약관을 중심으로 매도조건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나. 매도채권의 보관(약관 제 8조) :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매수인에게는 채권실물 대신에 통장 교부

다. 통장의 양도제한 (약관 제14조) : 매수인은 통장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단, 상속/유증/판결/기타 법령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가입대상

1) 일반형 환매채권 : 개인, 법인 및 단체

2) 확정형 환매채권 : 개인

마. 최저가입금액

1) 일반형 환매채권 : 최저가입금액은 5만원이상 1만원 단위

2) 확정형 환매채권 : 최저 각입금액은 1,000만원 이상 1만원 단위

바. 매도가격(약관 제2조)

1) 일반형 환매채권 : 일반형 환매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액면금액을 분할할 수 있음. 분할매도시의 최저한도액은 50,000원이며 10,000원 단위로만 초과가능

2) 확정형 환매채권 : 확정형 환매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하며 액면금액을 분할 할 수 없음

사. 환매수가격(약관 제 5조)

1) 환매수가격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결정 : 환매수가격 = 매도가격 $\times(1+\frac{\text{약정일수}}{365}\times\text{매도이율})$

2) 제1항의 산식 중 매도이율은 지식경제부가 정한 이율 적용

3) 제1항의 산식 중○ 약정일수는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함

사. 약정기간(만기) 및 환매수 이율

1) 일반형 환매채권 : 일반형 환매채권의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호한매수 이율은 지식경제부가 정한 이율로 함(단,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약정기간 내라도 환매수 청구에 응할수 있

음)

2) 확정형 환매채권 : 확정형 환매채권의 약정기간은 1년만기로 확정하고 환매수 이율은 [챔피언정기예금 1년만기 이율 +0.05%p]이율로 함 (단, 이용자의 요청으로 1년이내 환매수 청구시에는 중도해지처리되며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고 1년이후 환매수 청구 시에는 정기예금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

[환매조건부채권환매수 이율]

구분	기간	이율	
		개인.법인	금융기관
일반형	7일미만	무이자	무이자
	7~15일	이율표참조	무이자
	16~30일	이율표참조	이율표참조
	31~60일	이율표참조	이율표참조
	61~90일	이율표참조	이율표참조
	91~180일	이율표참조	이율표참조
	181~270일	이율표참조	이율표참조
	271~1년	이율표참조	이율표참조
확정형	1년만기	이율표참조	이율표참조

사. 신고의무

1) 매수인은 채권의 매매에 사용할 인장 또는 서명을 우체국에 신고하고 통장 또는 이장의 분실과 변경 등의 경우 또한 같음

2) 이와 같은 신고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우체국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함

□ 환 매 수

1. 의의

환매수는 매도시의 약관에 따라 매도한 채권을 일정기간후에 일정한 이율로 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매입하는 것을 말함

2. 매매차익의 계산

가. 환매수 가격은 매도가격에 환매수 이율 만큼의 수익을 가산한 가격이 되므로 환매수 가격과 매도가격과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매매차익이라 한다. 환매채권매매는 채권을 담보로 한 일종의 예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매매차익은 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라고 할 수 있음

나. 매매차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소숫점이하 절사)

1) 매매차익 = 매도가격 × $\frac{\text{약정일수}}{365}$ × 환매수이율

2) 매도일을 기준으로 약정이율을 적용하되 매도일로부터 환매수일의 전일까지의 경과기간으로 한다.

3) 일반형 환매채권이 1년경과 후 계속하여 예치되는 경우 매 1년 응당일의 환매조건부채권이율로 원금에 대해서 매 1년가 적용

4) 확정형 환매채권 약정일수(1년)가 경과된 건은 만기 경과분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후 이

율을 적용

가) 일반형 환매채권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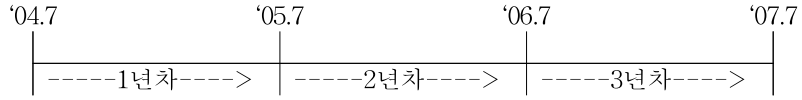

o 1년차 : '04.7.1 현재 환매조건부 채권이율

o 2년차 : '05.7.1 현재 환매조건부 채권이율

o 3년차 : '06.7.1 현재 환매조건부 채권이율

마. 매도가격은 10,000원 단위로 계산하되 초과하여 환매수 되는 것에 대한 매매차익은 약정만기분과 경과분을 구분하여 산출

바. 일반형 환매채권 환매수는 2회까지 분할 가능(단, 분할매수 후 잔치되는 금액은 최저한도 미만으로 할 수 없음) 확정형환매채권의 환매수는 분할이 불가하며, 약정이간(1년)이내 환매수 요청시 중도해지 처리되며 정기예금의 중도해지 이율 적용

3. 환매수 절차

가. 환매수 신청 : 예금주가 매수한 환매채권을 환매수 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청구서에 계좌번호, 매수일자, 청구금액, 신청연월일, 신청일, 성명 등을 기록하고 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여 제출토록 하여야함

나. 우체국 처리 : 예금지급사무에 따라 처리

4. 계좌의 해약

계좌를 폐쇄시키는 것으로서 활동 중인 순번이 없어야 하며 잔고가 없는 환매조건부채권통장은 무통해지 가능

Ⅲ.정리계좌

1. 의의

예금계좌중에는 오랫동안 거래가 중단되어 있는 계좌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계좌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계좌수만 증가되어 결산사무, 잔액대사, 전산시스템의 운영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로 구분 관리하는 계좌를 정리계좌라 함

2. 정리계좌편입대상

가. 편입대상 : 우체국예금계좌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리계좌에 편입할 수 있음

1) 편입기준

가) 잔고 만원미만이고 거래가 1년이상 중단된 경우

나) 잔고 5만원미만이고 거래가 2년이상 중단된 경우

2) 기준일

가)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 최종 거래일

3) 편입제외 계좌

가) 사고등록 계좌

나) 신용카드 결제계좌

다) 현금카드 약정계좌

라) 가계수표 약정계좌

마) 센터에서 임의로 해약이 불가능한 자동이체 약정계좌

바) 전자금융관련 모든 약정계좌

나. 편입절차

1) 우정사업정보센터에서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편입처리

2) 가입국에서는 국별보고서 의뢰/출력거래를 통해 자국의 정리계좌 편입내역을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여백에 “년 월 일 정리계좌 편입”이라 부기한 후 따로 보관

3. 정리계좌의부활 및 해약

정리계좌는 예금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구분관리하는 것일뿐 예금주의 입장에서는 정상계좌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예금주로부터 거래요청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처리

가. 정리계좌로 편입된 계좌에 대하여 입.지급등의 거래(부활)요청이 있을 때에는 부활거래를 실시

※ 부활메세지 및 산출된 이자는 통장에 인자함

나.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하여 해약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예금 해약처리 절차에 의거 지급처리함

4. 정리계좌의 이자계산

가.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의 이자결산은 하지 않음

나. 정리계좌에 편입된 예금에 대하여 부활 또는 해약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자를 산출하되 이자결산시기가 정해진 예금은 매결산기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자를 소급 산출 (단, 부활하는 예금은 최종이자결산일까지의 이자 산출

Ⅳ. 생계형저축

1. 의 의

"생계형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개정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원금 3,0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저축으로서 별도의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에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며 이는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2. 상품내용

가.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거주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만 60세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가족, 그 유족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나. 일몰성(가입기한) 설정 : 2012.12.31까지
다. 비과세거래한도 : 전금융기관 통하여 저축원금기준 3,000만원 이내
라. 거래방법 : 금융기관수와 통장수와 관계없이 거래 가능
마. 거래기간 : 가입한 해당저축의 가입기간에 따름
바. 비과세거래기간 :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비과세
  o 하루만 예치시에도 이자소득세, 주민세, 농특세에 대하여 전액비과세

3. 가입대상자확인방법

가. 만 60세 이상의 노인
  1)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소득세법 제1조제1호)
  2) 확인방법
    o 국민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o 재외동포 및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1) 확인방법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수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장애인
  2) 장애인등록증
    가)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 : 유효기간까지만 사용가능
    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계속 사용가능
      o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수첩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
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1) 확인방법
    가) 국가유공자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국가유 공자임이 확인되는 상이자

※ 국가유공자증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유족증은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아니며 배우자, 유족 및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증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가능

2) 국가유공자증 확인사항

가) 동법시행령 제101조에 의거 교부된 국가유공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대상구분 및 코드”와 “상이등급”으로 확인

나) 국가유공자증 내 훈격장애등급란에 “1급~7급”에 해당하는 상이자만이 “생계형저축” 가입자격이 있음

o **보훈번호 확인(보훈번호 체계) :** 앞의 2자리수가 대상구분코드로 21, 23, 51, 61, 81만 해당됨 ○○.○○○○○○○ ↑

수 분	비과세해당자	비해당자
대상구분 및 코드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공무원(61), 반공귀순상이자(81)	무공수훈(31), 보국수훈(33), 제일학도의용군인(41)
상이등급	1급~7급	태극, 을지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1) 수급자 정의(법 제5조제1항)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다)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확인방법

가) 수급자증 : 수급자증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개설시에는 수급자증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징구하여 보관해야 함

마. 독립유공자 확인

1) 확인방법

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나) 독립유공자 가족 : 국가보훈처 발행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2) 독립유공자, 유족 및 가족 확인사항

가) 독립유공자증

o 대상구분 : 애국지사

o 보훈번호 : 예) 11-000001(11~13)

o 훈격 : 건국훈장 1등급(1~5급)

나) 독립유공자유족증

o 대상구분 : 순국선열유족 또는 애국지사유족

o 보훈번호 : 예) 14-000001(14~19)

o 유공자와 관계 : 고(○○○)의 처(처, 자, 부모, 손자녀)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은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과 갈음하여 사용하되, 보훈번호(11~13→독립유공자, 14~19→독립유공자 유족)를 확인하여 판단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

1)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증명서)”으로 확인

사.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확인

1) 확인방법 : 5.18민주유공자증(대상구분 : 부상자)으로 확인

4. 통장개설 및 서식사용

가. 신규가입

1) 저축가입 신규시 고객이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가입자대상자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신청서상에 기재함

※ 향후 “생계형저축” 대상저축의 확대시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에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약정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음

2)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전산입력함

3) 생계형저축통장은 해당예금의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며 통장내지에 생계형저축 별도 인자

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첨부 보관하여야 함

가) 장애인,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각각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상이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임을 확인하여 전산입력하고, 증표의 사본은 첨부 보관하여야 함

가)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생계형저축을 재개설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계속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5.18민주유공자증 등의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음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은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개설시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징구하여 보관해야함

나. 요구불예금 예입한도 신청(추후 대상상품 확대시 별도통보)

5. 비과세한도율

가. 비과세한도

1)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생계형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저축원금을 합하여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등은 생계형저축으로 보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원가로 인하여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도계산에 포함함

3)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금액만을 생계형저축의 한도로 지정하여 가입할 수 없음

나. 한도관리

1) 거치식 저축

o 저축자가 가입한 저축원금

2) 적립식 저축

o 정액(정기)적립식 : 매월 일정금액을 일정기간동안 납입하는 상품은 “매월납입액×계약기간”의 금액

o 자유적립식 및 추가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저축 : 저축자가 납입할 생계형저축 한도액을 사전에 약정한 금액

3)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o 비과세한도액을 사전에 약정한 한도범위내의 잔액으로 관리하되, 이자원가로 인한 한도초과액은 예외로 함

o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입금불가

4) 한도의 증액 및 감액

o 생계형저축 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원할 경우에는 고객은 우체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함

6. 중복가입의 확인

생계형저축의 중복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확인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7. 적용이율

생계형저축 이율(기간별 해당 예금이율 참조)

8. 원천징수

가. 전액비과세(이자소득세 0%, 농어촌특별세 0%)

1)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를 적용함

2) 만기이자외 중도해지이자 및 만기후 해지이자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적용

9. 비과세 요건

가. 저축가입신규시 .생계형저축.으로 신청할 것

나. 생계형저축으로 거래하는 모든 계좌의 저축원금을 합하여 최고 3천만원을 초과하여 거래 불가

다. 생계형저축은 법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 불가

라. 동일한 계좌에서 일부 금액만을 생계형저축으로 거래 불가

마 .생계형저축을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 불가

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생계형 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사. .생계형저축.을 가입한 자는 명의변경 및 양도.양수가 불가하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만 가능

아. .생계형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중도 해지함

자. 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신규/해지/명의변경/한도변경 등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급 즉시 생계형 저축 자료를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생계형 저축자료 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으로 통보하여야 함

※ 천재.지변, 통신 및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보를 유예가능

차. 생계형저축에 중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리할 때까지 신규로 생계형저축에 가입불가

10. 생계형저축의해지 및 한도 변경

가. 해지의 사유

1) 본인의 사망(특별중도해지) : 상속에 의한 “생계형저축” 유지 불가

2) 본인의 해지요청

나. 저축한도 변경

o 생계형저축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고객으로부터 약정한도 변경금액을 신청양식에 의하여 변경신청 받아 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함

※ 정기예금.가계우대정기적금 상품에 대해서는 저축한도 변경 불가

11. 자격상실의 경우

생계형저축 가입자 중 만기이전에 자격을 상실하여도 만기시까지는 가입효력이 유지되며 만일 동 고객이 만기이후 생계형저축에 신규 가입 신청시에는 자격미달로 가입불가

12. 생계형저축의전환여부

가. 생계형저축은 법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며, 기존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음

※ 기존계좌를 해지한 후 생계형저축으로 신규 개설해야 함

나. 시행일 이후 가입한 생계형저축은 일반계좌로 전환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계좌에서 생계형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음

13. 원부의 변경

예금주의 실지명의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개명 또는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14. 예입의 제한

“생계형저축” 신청에 따른 예금상품 가입에 있어 원금기준 3,0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없음

15. 기타

가. 상속에 의한 양도.양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자가 사망하는 경우 특별중도 해지처리함

나. 생계형저축과 관련하여 이 업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각 해당예금의 업무지침을 준용함

다. 우체국은 생계형저축 가입 고객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생계형저축 계약의 체결.해지 및 기타 변경내용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

1) 장애인등록증 : 별표 1 참조

2) 국가유공자증 : 별표 2 참조

3) 수급자증 : 별표 3 참조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증명서) : 별표 4 참조

5) 5.18민주유공자증 : 별표 5 참조

16. 관련법령

첨부1 생계형 저축 관련 법령 참고

[첨부1]

생계형저축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6.12.30, 2007.4.11>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②삭제 <2001.12.29>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의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금융기관 및 공제회에 가입한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내인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0.5, 2005.2.19>

1.「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군인공제회

2.「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

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경찰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찰공제회

5.「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생계형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1.12.31>

④삭제 <2001.12.31>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호], 시행일 2007.10.12,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 제73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02.1.26>
제6조의3(신체검사) 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6>
1.신규신체검사 :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실시하는 신체검사
2.재심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분류신체검사 :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
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자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1. 신규신체검사·재심신체검사·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2. 재심신체검사·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④직권에 의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재분류신체검사에서의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의 효력은 본인이 신청하거나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상이등급이 하락된 때에는 본인이 신청한 날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발생한다. <개정 2000.12.30, 2002.1.26>
⑥신체검사실시일 등 기타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의 구분 및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2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에 대한 보상) ①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

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때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에 대하여는 제9조·제11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행함에있어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개정 1999.8.31, 2002.1.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5.7.29>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3. 전몰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포함한다)
4.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5.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7. 무공수훈자 : 무공훈장을 받은 자
7의2. 보국수훈자 : 보국훈장을 받은 자
8.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자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사변에 참전하고 제대된 자(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된 자를 제외한다)
9. 4·19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자
10. 4·19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0의2. 4·19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자중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자
11. 순직공무원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나.「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를 입고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12.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13.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4.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15.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6>
1. 제1항제3호 가목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2. 제1항제3호 나목 및 제4호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3. 제1항제5호 가목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4. 제1항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5.제1항제11호 가목 :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6.제1항제11호 나목 및 제12호 :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③삭제 <2002.1.26>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신설 1994.12.31>
⑤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2.1.26>
1.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3>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 부합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

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 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0.12.30>
1.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

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제5조 (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
3. 손자녀
4.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5.12.30>
③제1항제3호의 손자녀의 경우, 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본다.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자의 경우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5.12.30>
④제1항제4호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부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인에 한한다. <개정 2005.12.2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고엽제”라 함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함유된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살포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또는「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이라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나.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병역법」,「군인사법」또는「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한 자(이하 "남방한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라 함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거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중 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05.7.29>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

[별표 1] 장애인등록증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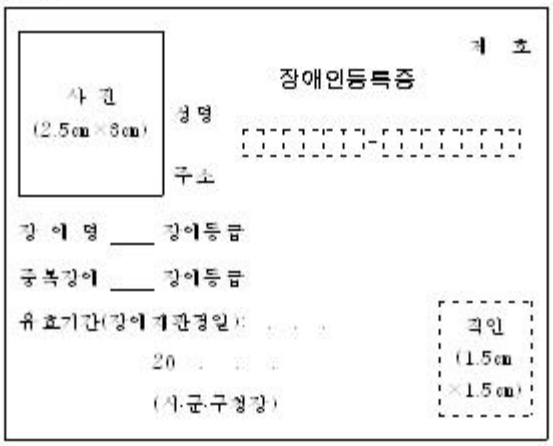

86mm×54mm(보존용기(1종)120/m²)

(뒷면)

보 호 자	성 명	(관계)
	연락처	(전화번호)
장애진단 의료기관	기관명	
	소재지	
기재사항 변경기록란		
일자 / 변경구분	변 경 내 용	확인정인

※ 의 증은 남에게 구겨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주십시오.

(비고)

(1) 표기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2) 전면에 8cm×8cm 크기의 홀로그램 마크를 배경으로 인쇄하되, 홀로그램 마크의 색상은 청색으로 하며, 각 도별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장애인등록증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에 관하여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2] 국가유공자증

(앞면)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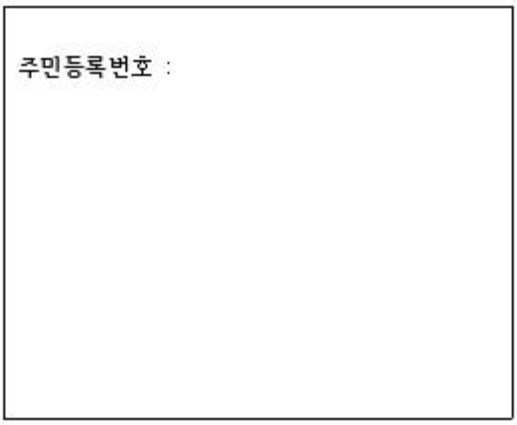

[별표 3] 수급자증

법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서식 3

[별지 제3호서식]

수급자 □일반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통반)
	세대주 성명 (시설명)		세대주와의 관계	
용도				
제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발급번호	제 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증명서)

발급 번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처리기간 즉 시
적용 대상	등록번호			성 명			
	장애등급		등록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신청인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용 도			제 출 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인

※ 이 확인원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7조제9항에 의한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851-02811민
97. 12. 30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5] 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및 5·18민주유공자유족증(제6조관련)

(앞쪽)

5·18민주유공자증

사진
(2cm×3cm)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보훈번호

국가보훈처장 인

발행일

85mm×55mm(PET-G카드, 연녹색)

(앞쪽)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진
(2cm×3cm)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보훈번호

국가보훈처장 인

발행일

85mm×55mm(PET-G카드, 연녹색)

Ⅴ. 세금우대종합저축

1. 의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하 '저축'이라 함)거래시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금전신탁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는 저축 등의 개별약관에 따름

2. 가입대상

가.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만20세 이상인 자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20세 미만인 자도 가입할 수 있음

1) 장애인복지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3. 가입대상 저축

은행이 취급하는 1년이상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 금전신탁, 수익증권, 채권저축(이하 '예금' 이라 함)으로 함

4. 세금우대 요건

가. 예금 가입당시 거래처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② 예금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최초 불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함

나. 양도·양수시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인 및 양수인 각자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함

5. 거래한도

가. 이 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자, 제2조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로함

1) 제1항의 거래한도는 다음 기준에 의해 정합니다. 이 경우 원가금액은 제외하고 한도를 산정하며, 저축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수익자를 기준하여 한도 산정
   가) 거치식예금은 거래처가 가입한 예치원금으로 함
   나) 정액(정기)적립식 예금은 월저축금에 계약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함
   다) 자유적립식 및 추가 불입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은 거래처가 사전에 약정한 금액으로 함

6. 거래한도 변경

거래처가 제5조 제2항 제3호의 거래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기관에 변경내용 신청

7.세금우대 처리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한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8. 표시방법

은행은 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내지·거래내역서 등에「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

9.적용이율

이 저축으로 가입하는 각 예금의 적용이율은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름

10.특별중도해지

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거래하더라도 제7조의 규정 적용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나. 제1항 각 호의 1호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전 6월 이내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11.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정보제공

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음

나. 금융기관은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수익자 포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ㅁ 금융실명거래원칙

1-1실명확인 의무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 여부를 확인(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가능) ※ 주의사항 금융실명거래의 실명확인은 계좌개설에 따른 절차 중심이며, 예금의 지급 및 해약시에는 정당권리자에게 지급되어야 우정사업본부가 면책할 수 있다.

1-2실명확인 증표

가. 개인 : 주민등록증이 원칙.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함.

※ 주민등록증 이외의 실명확인증표는 예외적으로 사용하고 가급적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상기증표로 실명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확인자료(신용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요청

<실명확인증표 예시>

①일반인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임시운전, 연습용운전면허증 포함), 청소년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공무원증, 공익근무요원증, 여권(여행증명서,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 등) 유공자 (유족 포함)증, 새터민 임시 신분증

②학 생 : 학생증

③군 인 :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④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⑤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⑥소년소녀 가장 : 주민등록등본(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⑦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⑧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 및 자격증

⑨기타 신분증 : 정부투자· 출자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격증+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 주의사항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 유효기간이 지난 실명확인증표
- 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나.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도 가능

※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다. 임의단체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 고유번호 부여 사실 통보문서(가운데 두자리수가 80 또는 89인 경우)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

	표
1-3실명 확인자	가.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직원이 실명확인필을 날인함. 나.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의무가 주어진 우체국 창구 직원(계약직, 임시직 포함)이며, 후선부서직원(본부 직원, 지원과,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 할 수 없음
1-4실명확인 방법	실명확인자가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으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인자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 실명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1-5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 거래	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된 계좌에 의하여 통장.거래카드(현금.직불카드 포함) 등을 지참하고 거래하는 경우를 말함 나.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다. 100만원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과 1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 매각
	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1997년 12월 3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1)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2)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3)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4)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보험.공제거래 및 여신거래는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 ☞ 할인어음은 실명확인 대상임

2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방법

2-1계좌에 의한거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신탁), 적립식.거치식 예금(신탁), 환매조건부채권.국공채(통장거래) 등 <원칙>

○ 계좌개설시(신규개설)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원장, 거래신청서, 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으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인자되는 경우 생략 가능[다만, 종업원 등의 일괄 계좌 개설시는 계좌개설 후 최초지급(인출)거래시 실명확인]

○ 계좌개설시에는 실명확인증표**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 실명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보관**

. scanner 및 디지털카메라에 의해 실명확인증표사본 보관가능**<삭제가능>**

○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서식 61-3)**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하며 인감증명서는 가급적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징구함.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

. 인감증명서 용도 : 금융계좌 개설용(기재확인)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가급적 사유발생일 이후 또는 최근 발급 받은 것)

. 위임장 : 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거래인감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좌개설신청서에 거래인감 별도 날인

※ 공동명의 계좌 신규시 실명확인

. 명의인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거래 가능

. 가입신청서에 확인자가 기명 날인

. 명의인 전원의 실명확인증표 **스캔하여 이미지파일을** 보관

※ 인감증명서징구방법

계좌에 의한 거래 중 대리인이 신규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임장(서식 61-3)**과 함께 징구

구 분			거 래 형 태	징구
개인	본 인		○모든 거래	×
	대리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가족에 의한 거래 [가족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 ○상기 이외의 거래	×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또는 반납자)	○미성년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법인에 수용되어 있는 자(부랑인)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신생아 ○군인, 경찰, 교도소 재소자	× × × × ×

		재외국민	○공증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 ○상기 이외의 거래	× ○
		외 국 인	○공증을 받은 위임장	×
법인	대표자		○모든 거래	×
	대리인	내국법인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계좌개설 요청공문, 사원증,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사용인감계] .최초 사용인감계 신청시 법인인감증명서 징구 ○상기 이외의 거래	× ○
		외국법인 (외국단체포함)	○공증을 받은 위임장	×

기타	대표자(본인)			○모든 거래	×
	대리인	종업원, 학생 등의 일괄 계좌개설		○종업원, 해외취업자, 학생	×
		임의단체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계좌개설 요청공문, 사원증,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사용인감계] .최초 사용인감계 신청시 개인인감증명서 징구 ○이외의 거래 .대표자 개인 또는 단체 인감증명서	× ○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단체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제출한 경우)	○모든 거래 .대표자 개인 또는 단체 인감증명서	○

가. 개인(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본 인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 ◎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선원수첩, 공익근무요원증,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비밀취급인가증, 군운전면허증, 국가(독립, 5.18 등)유공자(유족 포함)증, 새터민 님시 신분증 가능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 족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다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의료보호증(지자체가 발급하고 가족관계가 표시된 의료보호증에 한함) ○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의료보험증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예)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대리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	본인과 대리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나. 주민등록증미발급자(또는 반납자)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미성년자	본 인	◎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 족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호증, 구 의료보험증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족관계확인 서류 원본 또는 사본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소년소녀가장 및 형제자매	본 인	◎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형제자매 계좌는 소년.소녀가장이 상기 서류로 대리 개설 가능	주민등록등본 원본 실명확인서류 원본
	대 리 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등(호주 또는 세대주가 본인인 것) ◎ 위임장 ※소년.소녀가장일 경우만 대리인이 가능함.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원본, 위임장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 복지법인에 수용되어있는자 (부랑인)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의료보호증에 기재된 성명 및 관리번호에 의해 확인 ※ 사회복지법인에서 비치하고 있는 신상명세서에 의해 동일인 여부 확인	의료보험증 사본, 신성명세서 사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및 위임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시설수용증명원등),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 보호시설의 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후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허시설의 장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
	군인.경찰. 교도소재소자	◎소속부대장.경찰관서장.교도소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부대장 : 행정권한이 있는 대대급 단위부대장을 말함	실명확인서류 원본

다. 종업원.학생 등의 일괄계좌개설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종업원	사업주 (기타 사업주에 준하는자 포함)	【계좌 개설시.1차 실명확인】 ◎사업주가 실명확인하여 제출한 서류 ※일괄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 - 종업원을 위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납입하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종업원계좌에 이체하기 위한 경우	실명확인서류 원본
	본인	【최초 인출시.2차 실명확인】 o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중도해약, 만기인출, 최초 급여 인출시 .당해 종업원별로 실명확인(본인, 가족 및 대리인에 의해 실명확인 가능) ※단, 일괄해약시 또는 만기재계약시는 사업주가 제출한 종업원의 실명확인 증표로 실명을 일괄 확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의 경우 관련서류 보관)
해외 취업자	사업주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행한 출국사실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원본, 출국사실증명서 원본
학생	학교장	◎유아교육법, 초중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한 유치원.초.중.고.대학(원)생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어린이집.미술학원 .놀이방.유아원 등 사설학원은 유치원으로 볼 수 없음	실명확인서류 원본
군인.경찰. 교도소 재소자 등	부대장. 경찰관서장 .교도소장	◎소속부대장.경찰관장.교도소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해당기관 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 부대장 : 행정권한이 있는 대대급 단위 부대장을 말함	실명확인서류 원본

라.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명의인	신 청 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재외동포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본 인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 리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 리 인 (영사 확인을 받은 경우)	. 본인의 실명확인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영사확인을 받은 위임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영사확인 위임장
	대 리 인 (공증을 받은 경우)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공증을 받은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공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
	가 족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가족관계가 확인된 서류에 한함)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원본 또는 사본
외국인	본 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 투자등록증(증권거래시),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인가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 리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공증을 받은 위임장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가족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가족관계가 확인된 서류에 한함)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원본 또는 사본

○ 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경우 해당번호를 실명확인번호로 직접 사용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여권번호 등을 조립하여 사용함.

○ 외국인등록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에 의거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함.

○대리인은 국내에 체재하는 자는 누구라도 가능하고, 여기에 우체국 직원도 포함되나 실명확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실명확인 업무를 직접담당하는 직원이라 함은 계좌개설을 하고 실명확인인을 날인하는 자를 말함

※주의사항

◎외국인등록번호 및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 신고번호 부여체계

□ □ □ □ □ □ – □ □ □ □ □ □ □ – 검증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관 일련번호

성별 : 1900년대 남자 “5”, 여자 “6”으로, 2000년대 남자 “7”, 여자 “8”로 주민등록번호와 구분하여 표시(주민등록번호-1900년대 남자 “1”, 여자 “2”로 2000년대 남자 “3”, 여자 “4”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 없을 경우 실명번호 조립방법

– 실명번호 조합시 기준서류 : 여권번호

– 조합주민번호 구성

□ □ □ □ □ □ – □ □ □ □ □ □ □

① ② ③ ④

① 생년월일 6자리 : 내국인과 동일

② 성별구분 1자리 : 남자 7, 여자 8

③ 국적구분 1자리 : 미국 1, 일본 2, 중국 3, 기타 4

④ 일련번호 5자리 : 여권번호(기타 외국인)의 마지막 숫자부터 5자리

– 국적확인 방법 : 여권번호로 확인

예) J 0 2 4 6 8 9 0

국적(A 미국, J 일본, E 기타)을 표시함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여권번호 전산입력방법

– 여권번호의 자리수는 국가별로 일정치 않음

– 여권번호 앞에 영문자가 있으면 영문자와 숫자를 동시에 (외국인)실명번호란에 입력함

예) 여권번호가 “NY0045678"인 경우 ”NY0045678" 그대로 전산입력

◎여권 구별방법

구 분	여권의 특징	비 고
내국인	○ 인적사항 기재면에 한글이 있음 (성명, 생년월일 등)	실명번호 :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 인적사항 기재면에 한글이 있음(성명, 생년월일 등) ○ 국적 : 대한민국 ○ 발급지(발행지) : NewYork(R), Seoul(R)등과 같이 도시명 옆에(R)이 기재되어 있음 [R:Resident(거주자)]	실명번호 :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여권종류가 PR 또는 R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할 수 없음(말소자임)
외국인 및 외국국적 동포	○ 기재사항이 모두 외국어임 ○국적(Nationality)란이 외국으로 되어 있음	실명번호 :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가능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이민가게 되면 재외국민(영주권자)이 되며 그 나라의 일정 자격을 갖추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인이 됨(대한민국 국적상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자는 자국에서 발행한 신분증에 의하여 실명확인 가능(미8군 소속군인 등)

마.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법인	대표자	<법인 및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 . 사업자등록증 원본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표기)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도 가능 . 이하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라 함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인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실명확인>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다음중하나)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사원증 .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사용인감계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관계 확인서류 원본

○ 법인 신규 설립시 실명확인

.법인 설립등기 전에는 발기인 대표자 명의로 계좌 개설(법인명 부기)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더라도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대표자 명의로 거래(법인명 부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이미지파일** 보관)

○ 법인의 폐업 후 해산하기 전의 실명확인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휴.폐업사실증명원 및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법인명의로 실명확인

. 휴.폐업사실증명원은 그 용도란에 실명확인용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법인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원증,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사용인감계 중 한가지

○ 사용인감계 최초 신청(제출)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함

○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거래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징구가능

바. 임의단체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	대표자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단체와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	.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다음중하나)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 사원증 . 재직증명서(금융계좌개설용)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단체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대표자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위임관계 확인서류 원본(사원증의 경우 사본)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대표자 (단체명부기) (임의단체 확인 서류를 제출한 단체)	대표자	.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의 실명확인증표 . 임의단체 확인서류 . 단체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 조직구성원 명부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임의단체 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대리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임의단체 확인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대표자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임의단체 확인서류 사본, 위임장(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첨부)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 단체명과 고유번호로 거래

. 법인의 신규개설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인과세

○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증을 부여받은 단체

. 단체명과 납세번호로 거래

. 법인의 신규개설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개인과세

사. 외국법인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외국법인	대표자	. 실명확인증표(다음중 하나)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법인이 당해 국가에 설립.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등록증(증권 등 거래시) -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또는 인가서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법인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다음중 하나) -당해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것으로서 그 법인이 당해 국가에 설립.설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투자등록증(증권 등 거래시) -외국인투자신고수리서 또는 인가서(위임장 겸용 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공증을 받은 위임장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위임장 원본 또는 사본

2-2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통장.거래카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증서.채권(통장거래 제외).어음.수표 등을 매매.상환.환급.발행 및 지급 등을 하는 금융거래 형태

<원칙>

○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신청서.수표발행의뢰서.증서 및 수표의 뒷면 등에 명의인의 실명을 기재 확인하고 적당한 여백에 실명확인필을 날인(필요시 실명확인 증표 사본 보관)

○실명확인방법 : 실명확인자가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으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인자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가. 무통장입금(송금)

(1) 현금입금

거래유형	거래자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비 고	
100만원 이하	본 인	실명확인 생략가능		
	대리인			
100만원 초과	본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로 확인 후 날인	
	대리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날인 또는 서명	
	※ 실명확인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하는 경우(전자적 수단에 의한 이체 포함) 1. 출금금액 범위내 송금 : 입금의뢰서에 출금 계좌번호를 표시하여 실명확인에 갈음(인출계좌의 예금주와 입금의뢰인의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도 가능) 2. 출금금액을 초과하여 송금 : 일부대체 금액에 추가금액을 합하여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출계좌번			

	호 기재로 실명확인에 갈음할 수 없음	
※ 동일 금융기관에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같은 날 동일인에게 100만원(실명확인이 생략되는 각종 공과금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입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무통장입금시의 실명확인방법(실명확인증표에 의해 확인)에 따라 실명확인		

(2) 어음.수표입금

거래유형	거래자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비 고
금액제한 없음	본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무통장입금의뢰서상에 실명확인 및 날인 .수표.어음 뒷면에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갈음
	대리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무통장입금의뢰서상에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 본인과의 관계 .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 수표.어음 뒷면에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갈음

나. 어음.수표거래

구분	거래유형	거래자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자기앞 수표 발행	현금 또는 일부 현금을 수납하여 수표발행	본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수표발행의뢰서상에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수표발행의뢰서상에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표발행		※ 수표발행의뢰서에 인출 계좌번호 표시
어음.수표 지급	현금으로 지급	본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어음.수표 뒷면에 실명을 기재하고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어음.수표 뒷면에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날인 및 서명
	통장을 지참하고 당해 통장에 어음.수표로 입금		※어음.수표 뒷면에 입금되는 계좌번호를 기재
	어음.수표의 무통장입금		※무통장입금 의뢰서에 실명확인하고 어음 .수표 뒷면에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어음.수표로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각종 공과금 또는 대출 원리금		※어음.수표 뒷면에 납부명의인의 성명 및 납부내용 또는 대출금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

	수납

○번호가 연속된 자기앞수표를 동일인에게 지급할 경우 맨앞장과 맨뒷장의 뒷면에 실명확인 할 수 있음

다. 공과금 등의 거래

(1)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공과금

○ 납부고지서 등에 납부명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공과금 등은 실명 확인 생략

. 성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자에게 기재토록 함

. 국세, 지방세, 벌과금(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수납

. 전화요금(무선전화요금 포함)

. 전기요금

. 아파트관리비(병합고지된 국민주택기금의 원리금 및 대한주택공사의 임대료.융자상환금 포함)

. 전화부가서비스료(정보통신사용료, 전화사서함요금)

. 도시가스요금(시설상환금 포함)

. 유치원, 초.중.고.대학(원)생의 등록금 및 수업료

. 신문구독료

. 보험료

. 신용카드대금(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에 한함)

. 100만원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계좌출금 포함) : 실명확인 생략

○ 수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 고지서 : 실명확인 생략

.수표:수표 뒷면에 납부 명의자의 성명과 납부내용을 기재(실명확인 생략)

(2)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 공과금

※ 실명확인 생략대상 공과금이 아닌 기타 은행지로장표 또는 각종 납부고지서에 의한 입금은 무통장 입금의 경우와 동일(100만원 이하는 실명확인 생략가능)

. 입금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만 실명을 기재.확인하고 적당한 여백에 실명확인 후 날인

※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출금

○ 명의인 거래 : 거래명의인 실명을 확인하여야 함

○ 대리인 거래 : 거래명의인 및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함

라. 외국환거래

(1) 실명확인 대상 외국환거래의 종류

환전, 당발송금, 타발송금, 국제환 송금.지급

(2) 거래종류별 실명확인 방법

○ 외화예금 : 원화예금과 동일

○ 당발송금, 타발송금, 당발추심, 외화예금

. 실명확인대상

. 당발송금 및 추심 : 의뢰인 및 동 대리인

. 타발송금 : 수취인 및 동 대리인

. 실명확인 방법

. 환전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 계좌번호가 명기되어 송금된 경우는 실명확인 생략 가능

○ 환전

구 분		실명확인방법
개인	본인거래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실명확인 후 날인 및 서명
	대리인거래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실명확인 후 날인 및 서명 ※ 위임장 징구여부는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1장 제3절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법인	대표자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실명확인 후 날인 및 서명
	대리인(종업원 포함)거래시	사업자등록증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표자의 위임장 등에 의거 실명확인 후 확인인 날인 또는 서명(위임장 징구 여부는 외국환거래업무지침 제1장 제3절 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실명확인된 통장에서 인출하여 환전하거나 환전대금을 실명확인통장으로 입금할 경우에는 동 계좌번호 기재로 실명확인에 갈음

※ 고유번호(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임의단체는 법인에 준하여 처리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환전시 실명확인 생략 가능

2-3일반절차에 의하지 않은 실명	가. 사업주가 종업원의 계좌에 급여이체하는 경우 사업주의 실명을 이체건별로 확인하지 않고 일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자가 급여이체 의뢰서 등에 날인 또는 서명 나. 2이상의 계좌를 단일통장(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확인대상 및 방법	실명확인증표가 보관되어 있는 단일통장(종합통장)에 당해 통장 개설 점에서 동일인 명의의 거래예금 과목을 추가하는 때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보관 생략 다.우체국(동일관서)에서 실명확인된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계약하는 경우(당일분에 한함)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신규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징구하지 않고 기존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 가능(신거래신청서에 기존 계좌 번호를 기재하여 연결관계를 표시) ※ 동일 계정과목이 아니라도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재신규 가능 ※ 대리인이 재신규하는 경우 지인관계서류 별도 징구 ※ 예금거래 신청시 관련서류를 이미지화하여 보관할 경우 동일점포가 아니라도 가능 라.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상계에 의해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 추심 및 전부명령(세무서의 압류.체납처분 포함) 대상예금이 이미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계좌 . 실명확인된 예금의 지급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추심 및 전부명령 대상예금이 실명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경우 . 대상예금을 실명전환 후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과징금 및 소득세 등 추징) ○ 대출금 등과 예금의 상계 지급 – 실명미확인 또는 비실명으로 확인된 연체대출금의 상계대상 예금은 실명전환 절차(과징금 및 소득세 등 추징)를 필한 후 상계 가능 마. 전화, 컴퓨터에 의해 계좌를 신규개설하는 경우 ○ 실명확인된 계좌(근거계좌)를 보유한 거래자에 한하여 전화, 컴퓨터에 의해 근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와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
	가능(이 경우 금융기관은 업무제휴관계를 맺은 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연결계좌에 대한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음) . 연결된 계좌에서 최초 인출시 또는 근거 계좌의 해지시 실명확인을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 보관 . 연결계좌에서 인출하여 근거계좌로 대체입금하는 경우는 별도 실명확인 생략 ○연결계좌의 강제집행 및 상계처리시 실명확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가능 바. 업무제휴에 의한 타금융기관의 실명확인 대행 우체국(이하 “갑”이라 함)이 다른 금융기관(이하 “을”이라 함)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또는 을)의 근거계좌와 연결된 을(또는 갑)의 연결계좌에 대하여 갑(또는 을)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음.

3 실명전환업무

3-1실명전환 절차	가. 실명전환 신청인으로부터 .실명전환신청서.를 받아 이를 확인 후 실명으로 전환(전산입력 포함) ○ 과징금 및 추징세 징수 ○ 실명전환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5년간 별도관리 나. 실명전환 신청인에게 실명전환확인증 교부 ○ 실명전환시 필요한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사본을 징구 ○ 실명전환 예금의 실제 예금주를 알고 있는 경우로서 사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예금주의 실명만을 확인하고 실명전환을 할 수 있음 ○ 실제 예금주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사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예금주의 확인 등 적정 절차를 밟아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 ○ 실명전환은 계좌별로 하여야 하며 계좌를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실명전환 할 수 없음
3-2실명전환 자산에 대한 소득세 추징 및 과징금 징수	가. 기존에 차등과세 되지 아니한 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 추징세 및 과징금을 징수 ○ 추징세 및 과징금을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 나. 과징금 및 추징세액 징수 ○ 과징금 및 추징세액 징수한도 : 실명전환일 현재의 금융자산가액 범위내로 하며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실명전환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최고율은 50%로 함 . 금융자산가액이 과징금 및 추징세액보다 적은 경우 추징세를 우선 징수함 ※ 금융자산가액은 ’93. 8. 12 잔액을 기준으로 함 . 개인.법인 구분없이 과징금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음(10

	원미만 절사)
	다. 실명확인 후 이를 취소하고 실명전환 처리하는 것은 불가
	○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 것이 실명법에 위반되어 처리된 것이 아닌 한 이를 무효화할 수 없음
3-3시효 완성된 금융자산의 처리	가.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 처리하는 경우
	○ 국고귀속일에 실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아
	○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납부
	나. 국고귀속된 계좌의 환급(고객 지급 요청시)
	○ 실명계좌로 판명된 경우에는 기징수한 과징금과 소득세 등을 환급하여 국고귀속된 예금과 함께 지급
	- 단, 과징금 및 소득세 등이 실명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으로 환급 불가

4 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 개요 및 유의사항

4-1비밀보장 제도 개요	가. 원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 이하 “실명법”이라 표기함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비밀보장에 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거래정보 등을 알게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누구든지 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 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 등을 다시 취득한 자 포함)는 이를 알면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음
	○실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을 생략하는 거래도 비밀보장 적용대상임
	나. 실명법상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실명법 제4조제1항)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적사항을

	명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정보제공 가능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다.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 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감사원이 요구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 .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거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해 불법수익임을 안 경우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의 등록.매매.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요구하는 경우요구하는 경우

4-2비밀보장 관련 유의 사항	. 장애인연금법 제1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리 요구하는 경우 부당한 정보제공요구거부(실명법 제4조제3항) 금융기관은 부당한 정보제공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 ※ 부당한 정보요구의 예 ○ 정보제공요구 권한이 없는 자의 정보제공 요구 ○ 정보제공요구가 가능한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특정점포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 표준양식에는 명의인의 인적사항.요구대상거래기간.요구의 법적근거.사용목적.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정보요구의 범위가 정보의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 누구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예시 ① 2002. 2. 22일자 1천만원 이상 출금거래 내역 →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정보제공 불가 ② 2002. 2. 22일자 홍길동 계좌에서 1천만원 이상 출금거래 내역 → 정보제공 가능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 특정명의인의 금융거래 사실 또는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은 비밀보장의 대상에서 제외 ① 금융거래에 관한 단순통계자료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증서번호 등이 삭제된 다수 거래자의 금융거래 자료로서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자료 ③ '93.8.12 이전에 거래된 무기명, 가명의 금융거래 ④ 순수한 대출거래.보증.담보내역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 ※ 유의 : 다만, 예금거래와 대출거래가 함께 발생하는 가계대월은 비밀 보장 대상이 됨. ※④의 경우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제한사항 여부 확인 다.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시행령 제5조) ○ 비밀보장 의무가 있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는 . 금융기관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으로서 .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됨

○ 이는 용역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고용형식이나 직위 등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금융거래 정보를 알게 된 자는

. 자기가 취급하는 업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알게된 경우 뿐만 아니라

. 간접적으로 알게된 경우에도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임.

라. 정보제공 요구방법

○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준양식(금융위원회 고시)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정보제공 가능(FAX요청시도 가능)

① 명의인의 인적사항(다음 중 하나만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함)

.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실명거래시에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

. 계좌번호

. 수표, 어음, 주권, 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② 요구대상 거래기간

③ 요구의 법적근거

④ 사용목적

⑤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⑥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적용 예

○ .성명.만을 기재하고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당해 성명의 거래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인적사항으로 간주

. 동일 성명의 거래자가 여러명 있어 누구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사항으로 보지 아니함

○ .특정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 거래자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특정 계좌번호에 의하여 거래자가 특정되므로 인적사항으로 간주

○ 정보요구권자가 특정인의 인적사항(예:갑)을 적시하여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 .갑.의 계좌 등에 입금된 내용과 출금된 내용을 포함

예) .갑.의 계좌에 .을.이 일정액을 입금하였다는 사실과 .갑.계좌에서 .병.의 계좌로 자금이 입금(대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제공 가능하나, .을.과 .병.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

의 정보요구 절차가 필요함.

마. 정보제공 사실 등의 기록.관리 의무

○ 금융기관이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았거나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해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① 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 전단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② 실명법 제4조제1항제5호에 의한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

정보제공 사실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1.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법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요구한 사실조회· 서류검증 등 포함)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 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요구하는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4.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5.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제2항에 의거 복지부장관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6. 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거 감사원이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7.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10.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11.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12. 정치자금법 제52조에 의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13. 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부한 경우

※ 관련서류 보관기관 : 정보제공일로부터 5년간

※ 금융기관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①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자

②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자

③ 제공된 거래정보 등의 내용

④ 제공의 법적근거

⑤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 정보제공 사실을 기록토록 하는 것은

⇒ 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거래 정보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당한 정보 등의 제공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바. 명의인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 또는 실명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후단 또는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①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내용

② 정보 등의 사용목적

③ 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

④ 정보 등의 제공일자 등

. 이 경우 통보는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자의 최종 주소지로 함

.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기록관리는 하되 명의인앞 통보는 생략

정보제공사실의 명의인앞 통보대상

1.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 제공
2. 법원의 제출명령(사실조회, 서류검증 등 포함)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정보 제공
3. 조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서장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4.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요청에 의한 정보 제공
5. 감사원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에 의한 정보제공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에 의한 정보제공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정보제공
10.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 3 및 제21조의 4에 의한 정보제공 가능
11.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명의인이 요구있는 경우)
12. 국민기초생활법 제23조의2 제2항에 의한 정보제공
13. 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 제공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한 정보제공은 명의인 통보대상이 아님

※수표의 발행인(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 포함), 무통장.타행환 입금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정보제공을 한 경우 명의인앞 통보방법

. 수표 : 원칙적으로 발행인 및 최종소지인 모두에게 통보

. 무통장입금.타행환송금 : 입금의뢰인(송금인)에게 통보

※ 우체국에서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생략 가능

○ 정보 등의 요구자가 다음 사유를 제시하고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

<통보유예 요청가능 사유> - 실명법 제4조의 2 제2항 및 제3항

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통보유예기간은

. 상기 ①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는 유예요청기간

.통보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매1회 3월의 범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유예요청 가능(유예요청 기간제한 없음)

. 상기 ② 및 ③의 사유로 통보유예를 요청하는 경우는 유예요청 기간과 6월 중 짧은 기간으로 함.

. 통보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회에 한하여 매1회 3월의 범위내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최초 유예요청일로부터 최장 12개월까지만 가능). 다만, 조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때마다 그날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유예 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

○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명의인에게 정보제공사실과 통보유예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함

정보제공 사실의 명의인앞 통보생략 대상

. 조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지급조서 제출자료 등)

. 우체국 내부 또는 타 금융기관과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정보제공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거래 정보제공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 소정의 절차에 따라 수표소지인에게 발행인의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 유무 및 내용,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거래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정치자금법에 의한 정보 등의 제공 사. 정보제공현황 보고 ○ 우체국은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기간내 보고(본부에서 집계)

5 금융거래 정보제공 업무처리 방법

5-1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가.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제공 (1) 명의인이 직접 정보제공 요구를 하는 경우 정보제공 가능 ⇒ 이 경우 정보 등의 요구자가 명의인이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여 타인에게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전화, PC, ARS에 의해 송금(잔액)조회 등을 요청받은 경우 예금주명, 계좌번호(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가능 ○ 공동명의 예금인 경우 ① 명의인앞 정보제공 : 명의인중 1인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제공 ② 명의인의 동의로 제3자앞 정보제공 : 명의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양도.양수인에 대한 정보제공 ① 양도인앞 정보제공 : 양도일 전일까지의 금융거래 정보.자료제공 가능 ② 양수인앞 정보제공 : 해당계좌의 모든 금융거래 정보.자료제공 가능 ○ 무통장입금(자동화기기, PC, 전화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포함)관련 정보제공 ① 입금계좌 예금주에게 정보제공하는 경우 . 입금의뢰인(송금인)의 성명, 연락처만 정보제공 가능 .입금자원 중 수표로 입금된 내역(수표발행은행, 수표번호 등)은 정보제공 불가 .입금계좌 예금주의 요청시 전표상에 기록된 대리인의 정보제공 가능 ② 입금의뢰인(송금인)에게 정보제공하는 경우 . 입금계좌 예금주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불가 . 무통장입금의뢰서 사본 또는 무통장입금증 재발행 가능 (2)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가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명의인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

○단, 이러한 과정에서 명의인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요구자가 법률상의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예) 상속인,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권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① 상속인앞 정보제공

. 상속인 중 1인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제공 가능

* 상속인 1인앞 정보제공시에는 반드시 “지급정지”를 전산등록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여야 함

② 상속인의 동의로 제3자앞 정보제공

.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③ 정보제공 범위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제공가능

상속인 금융거래정보 조회제도

○ 조회대상

사망자 및 준사망자

.준사망자 : 심신상실자 또는 실종자로서 법원의 판결문(금치산선고, 실종선고)이나 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 확인

○ 조회범위

우체국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대출거래계좌 존재여부, 보증채무 보유유무 및 가계대월거래, 가계수표 개설 여부와 거래우체국명

○ 조회시점

신청접수 시점에서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 보유 및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 동인명의 해지계좌 보유 유무

○ 이용절차

. 신청인이 우체국에 직접 방문접수

○ 해당서류

. 상속/피상속 관계에 대한 확인서류(예: 사망확인서, 호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등)

	. 신청인(상속인)의 신분증 나.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 우체국이 명의인으로부터 다음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는 경우 동의내용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에게 정보 등의 제공이 가능 동의서 기재사항 ① 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 ② 정보 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③ 제공할 정보 등의 내용 ④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⑤ 동의서의 유효기간 ⑥ 우체국에 등록된 인감(서명감 포함)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 등기소)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 다만, 명의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 가능 ※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 . 명의인인지 여부 확인 ※ 명의인 외의 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제출한 자의 실명을 확인 ①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신분확인증명서 사본 징구
	② 기타 : 명의인 및 동의서 제출자의 신분확인증명서 사본 징구 예) 명의인이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때는 교도소장 등이 명의인이 직접 동의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고 동의서에 기명날인(서명)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가능 ○우체국 직원은 동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5-2실명법 등에 의해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 명의인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대상 거래기간, 요구의 법적근거, 요구하는 거래 정보 등의 내용,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특정관서에 요구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특정관서에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함(일괄조회 가능) .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 우체국 내부 또는 우체국과 타금융기관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거래정보 등을 요

구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본부부서에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조회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등

가. 법관(군법무관 포함)의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법관이 재판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사실조회, 서류검증 등도 법원의 제출명령에 준함

○ 입출금이 연결된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

. 법관의 영장에 의한 경우에는 다음의 정보제공 가능

. 예금주의 계좌개설 자료 및 입출금 자료

(예금주의 계좌에 입출금된 자기앞수표 등 실물 및 관련장표 동 자기앞수표가 발행 또는 입금된 계좌의 개설자료 및 입출금자료)

. 직전.직후 연결된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

. 정보제공 요구시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인적사항이란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수표 등 유가증권번호, 기타 우체국이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말함

예) . 성명만을 기재하고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성명의 거래자가 하나인 경우는 인적사항으로 간주

. 특정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 거래자의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정계좌번호에 의하여 명의인이 특정되므로 인적사항으로 간주

. 목적.용도 제한

수사목적에 한정,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정보제공 요구 가능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정보제공 요청시 유의사항

○ 압수수색대상의 해석 : 해당계좌와 관련된 계좌의 입.출금내역, 서류일체 등으로 명시하여도 유효함.

○ 영장의 유효기간의 해석 :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사실이 영장의 유효기간 이전부터 연속된다는 관련 문서, 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소관관서의 장 : 국세청장, 관세청장, 국세심판소장, 세무서장, 세관장,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

○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특정점포의 범위

. 특정점포란 단위 우체국을 말하므로 본부 일괄조회(전산소 조회)는 불가능함. 다만 다음의 경우 우정사업정보센터로 일괄조회 가능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 확인 또는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의 제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하여 국세청장의 요구에 의한 경우

○ 정보제공 요구시 인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정보제공범위

. 특정인(갑)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의 경우

. 갑의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자료와 갑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과 출금된 내용 제공 가능

○ 목적.용도 제한

.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관서의 장이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관한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보제공 가능

* 조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 외에 관세 및 지방세도 포함되며 과세당국의 정보 등의 요구가 적법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고 있는지 금융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등의 요구시 실명법 및 관련세법의 근거규정이 명시되어야 정보제공이 가능

정보제공이 가능한 조세

○ 지방세세목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지방교육세, 레저세

○ 국세세목 : 소득세, 법인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평가세 등

○ 관세 : 세목구분없음

※ 정보제공이 불가한 경우 :

① 과태료, 국유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은 조세가 아

니므로 정보 제공할 수 없음

②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은 국세징수법 제27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정보제공은 할 수 없음.

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 목적.용도제한

. 공개가 의무화된 것으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정보제공 가능

○ 정보제공요구는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에 의하여 특정점포에 하여야 함

. 특정점포는 단위 영업점포를 말함

마. 우체국 내부 또는 우체국과 타금융기관간의 정보제공

○ 우체국 내부 또는 우체국과 타금융기관간의 업무상 필요한 정보는 제공 가능

* 특정점포에 인적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요구토록하는 실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배제됨

우체국 내부의 정보제공

. 본부.청.관서간의 상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 우체국으로부터 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우체국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우체국과 타금융기관간의 정보제공

. 우체국이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 법령.타금융기관과의 협약 등에 의하여 정보 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 (전국은행연합회, 증권예탁원, 보험개발원 등) 또는

. 거래자간의 금융자산 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금융결제원 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업무처리상 정보제공 허용범위 예시

	▣ 수표.어음 관련인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1.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 제공 가. 발행의뢰인이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수표의 발행사실과 수표앞면에 관한 내용만 제공가능 (수표 앞면 사본만 제공 가능) 나. 최종 소지인이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배서내용 등 수표 앞뒷면에 나타난 정보만 제공 가능 (수표 앞.뒷면 사본만 제공 가능) 다. 부도처리된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이 사고신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전화요청 포함) . 사고신고서상에 기재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음(사고신고 그 자체는 금융거래가 아님) ※ 유의 : 사고신고인과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음 라. 사고신고인에게 수표지급제시인 또는 수표입금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 등은 정보제공 할 수 없음 2. 약속어음.당좌수표(가계수표) 관련정보 제공 가. 발행인이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어음.수표의 앞뒷면에 나타난 정보 제공 가능 (해당어음.수표 사본만 제공 가능) 나. 최종소지인이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배서 내용 등 수표 앞뒷면에 나타난 정보만 제공 가능 (해당어음.수표 사본만 제공 가능) 다. 중간배서인이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 약속어음 : 앞 배서내용 및 어음 앞면에 나타난 정보 제공가능(앞 배서내용 및 어음 앞면 사본만 제공 가능) . 수표 : 정보 제공 불가 3. 약속어음.당좌수표(가계수표) 소지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 거래처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 . 어음.수표 소지인의 요청(전화 등에 의한 요청 포함)에 의하여 다음 사항의 정보 제공 가능 . 당좌(가계당좌)예금 거래사실 유무 . 부도발생 여부 및 내용 . 예금주의 성명, 주소, 기타 인적사항
	나. 거래처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어음.수표 소지인이 예금개설관서에 직접 내점하거나 전화 등으로 어음.수표의 번호, 발행인을 알린 경우에 다음 사항의 정보제공 가능

. 당좌(가계당좌)예금 거래사실 유무(계좌폐쇄 등)

. 부도발생 여부

다. 부도가 확인된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를 제시하는 경우

.부도확인된 어음.수표발행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제공 가능

. 부도내용(부도금액, 부도시기 등)

▣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 문서에 의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CCTV화면의 재생을 요구하는 경우는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없이 제공가능

▣ 무기명식 금융자산(양도성예금증서, 표지어음 등) 관련 정보제공

.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제공방법과 동일

▣ 세무서 등에서 수표.어음.채권 등 유가증권의 증서번호만 알고 발행의뢰인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배서내용 및 자금원천(현금 또는 대체발행인 경우에는 인출계좌번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가능

○ 발행의뢰인의 타예금계좌(대체인출계좌 포함)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시에는 별도의 .정보제공요청서.징구

▣ 재외공관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일반적인 금융거래 정보제공절차에 따라 발급

○ 재외공관원 등 해외파견공직자가 팩스로 요청할 경우 해외파견근무여부를 외교통상부 등 소속 부처에 확인한 후 요청받은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송부 가능

▣ 기타

○ 압수수색영장(법관사실조회서),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시, 그 개인이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임의단체의 대표자로 거래하는 금융거래정보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 대표자명의로 거래하는 기타 임의단체의 금융거래 정보도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회계법인으로부터 특정 법인의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시 이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

. 다만,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법인명의의 정보제공요청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즉 정보제공요구서상에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가 기재되고 법인인감(법인 인감증명서 첨부)이 날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음(특정법인 앞 통보생략,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및 제공기록관리부에 기록 생략)

○ 구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로 재임 당시의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정보제공 불가(현 대표자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받아야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구 대표자 명의로 발행된 수표.어음에 대한 정보제공은 가능함.
5-3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제공"의 경우는 실명법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정보제공하는 것으로서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제공시 당해 법률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하나 이 경우에도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도록 하여야 함 가. 감사원의 금융정보 요구 ○ 관련 규정 :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내지 제4항 ○ 정보제공의 목적.범위 및 요건 . 회계감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 .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 처벌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 관련규정 : 정치자금법 제52조,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45조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
	에게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만, 당해 계좌에 입·출금된 타인의 계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계좌개설 내역 - 통장원부 사본 - 계좌이체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 수표에 의한 거래의 경우 당해 수표의 최초발행기관 및 발행의뢰인의 인적사항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 관련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8조 ○ 정보제공의 목적.범위 및 요건 . 재산등록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 ○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됨 . 처벌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 등록사항 외의 재산 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가능) 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정보 요구 ○ 관련 규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 정보제공의 목적.범위 및 요건 .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정보 또는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함)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 ○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안됨

	. 처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 금융기관의 마약류 불법거래의 신고 ○ 관련 규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조 ○ 정보제공의 목적.범위 및 요건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에 있어 수수한 재산이 마약류 불법거래에 의한 불법수익 등임을 알게 된 때 또는 그 업무에 관계된 거래상대방이 마약류 불법거래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신고 ○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신고를 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이를 그 신고에 관련된 거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 처벌 .미신고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바.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외환거래 정보요구 ○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제22조
	○ 정보제공의 목적.범위 및 조건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이하 '이 법'이라 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구 가능 .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 거래에 관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은행 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세관의 장 등에게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외환거래 정보를 통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 상호간에 교환.활용하도록 하거나 '집중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음 ○ 비밀누설 금지 및 처벌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등록.신고.보고.통보.중개.중계.집중.교환 등의 업

무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 처벌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상속세및증여세법 관련 정보요구

○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실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업, 연령, 재산상태, 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수증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음

아. 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요구

○ 관련규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

○ 정보제공의 목적.범위 및 조건

.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 보고 또는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관련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별표 1>

실명법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범위

구 분	근 거	요구대상	정보제공가능범위	목적.용도
본인의 동의	법§4①	.각 관서 .우정사업정보센터 ※일괄조회 가능	.거래자의 동의내용에 따라 제공 가능 ※ 서면동의	특별한 제한 없음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영장	법§4①1.	.각 관서 .우정사업정보센터 ※일괄조회 가능	.영장에 따라 정보제공가능(특정계좌와 연결된 직전.직후의 계좌정보제공 가능) ※서면으로 요구	.조사목적에 한정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정보요구 가능
세무관서장	법§4①2.	.각 관서	.인적사항이 명시된 자의 계좌개설자료 .위 계좌에 입출금된	.과세목적에 한정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정보요구

			내용 ※서면으로 요구	가능
국세청장, 관세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법§4②	우정사업정보센터	· 인적사항이 명시된 자의 계좌개설자료 · 위 계좌에 입금출된 내용 및 직전,후 연결 계좌 번호 - 서면으로 요구	·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 정보요구 가능

<별표 2>

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 정보제공

구 분	근 거	요구방법 및 제공범위	목적.용도
감 사 원	감사원법 제27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요구 ※감사원장.감사반장 명의로 요구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 위 원 회	정치자금법 제52조	. 금융기관의 장에에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공직선거후보자, 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은권리가 있는자 그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가능	. 선거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 직 자 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8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위 원 회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50조제5항	.금융기관장에게 요구	.대규모기업 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마약류불법 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제5조	.금융기관 직원이 서면으로 검찰 총장에게 신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수한 재산이 마약관련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 때 또는 그 거래상대방이 불법 수익 등을 가장.은닉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외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제27조의2	.금융기관의 장이 국세청장에게 통보	.외국환 관리법의 실효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	.금융기관의 장에게 일괄조회	.국세청장 등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는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함에 있어 보고 받은 사항이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3>

금융정보제공시 CHECK 및 조치사항 요약표

구 분	특정점포 기재여부	정보제공 기 록 부	명의인 앞통보
1.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	.	.	.
2.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로 제3자에게 제공	.	○	○
3. 법관이 발부한 영장	.	○	○
- 법원의 제출명령(사실조회, 서류검증, 문서송부촉탁서 등 포함)	.	○	○
4.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 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	○	○
(국세청장,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	.	.
-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출(지급조서)	.	○	○
- 부동산거래관련 및 1천만원 이상의 체납자 자료요구	.	○	○
-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요구			
5.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직접 정보제공은 불가하나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의 요청시는 가능)	○	○	○
6. 감독기관의 감독· 검사(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경우	○	○	.
7. 동일금융기관내부 또는 금융기관상호간 정보제공	.	.	.
8. 감사원법 제27조에 의한 요구	○	○	○
9.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요구	.	○	○
10.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제5항)의 요구	○	○	○
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 의한 경우	.	○	○
12.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한 경우	.	○	.
13. 정치자금법에 의한 경우	.	○	.
14.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종사자가 수수한 재산이 마약 관련 불법수익임을 알게 된 때	검찰총장에게 서면 신고가능		
15.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의한 경우	.	○	○
16.정보제공요청받았으나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	○	.
17.소정의 절차에 따라 어음· 수표소지인에게 발행인의 거래사실 유무, 부도발생여부 및 내용,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당좌,가계당좌)	.	.	.
18.어음· 수표의 발행인(자기앞수표의 발행의뢰인 포함), 무통장· 타행환입금내역등에 관한 정보를 명의인 이외의 자가 정보제공 요청을 한 경우(요건을 갖춘 경우) -어음· 수표 : 원칙적으로 발행인 및 최종소지인 모두에게 통보 -무통장입금· 타행환송금 : 입금의뢰인 (송금인)에게 통보 ※ 통보 금융기관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생략 가능	-	○	○

.특정점포기재여부 : 정보제공요구자의 공문에 해당영업점명이 기재되어야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 으로 표시함(정보제공 요청서에 영업점명칭 표시가 없으면 거부대상임)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도 정보제공기록부에 기록관리는 하되 명의인 앞 통보는 생략

.명의인앞 정보제공사실 통보 : 정보등을 제공한날부터 10일이내 통보

.통보유예 요청기간

구 분	최초요청시	반복요청기간	반복회수	최장기일
①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없음	매회 3월	제한없음	제한없음
②증거인멸· 증인위협,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방해 우려,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의 사유	6월	매회 3월	2회	12월
③조세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6월	매회 6월	제한없음	제한없음

6 금융실명거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6-1과태료 부과대상

가. 금융실명거래(실명법 제3조) 위반

나. 명의인 앞 통보(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4항) 위반

다. 거래정보제공내용 기록.관리(실명법 제4조의3) 위반

6-2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가. 주된 위반행위자

○ 단독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기타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등은 주된 행위자로 간주함

○ 주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거래금액(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금융자산의 위반행위 당시 입.출금, 매매금액 등 합계)의 다과,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함. 다만, 부주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엄중히 과태료를 부과함

(단위 : 만원)

거래금액 / 책임정도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3억원초과
고 의	300	400	500
과 실	100	200	300

나. 종된 위반행위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등은 종된 위반행위자

	로 간주함 ○ 종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주된 위반행위자에 부과된 금액의 20/100~50/100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 동일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내에서 정상적인 부과 금액의 50/100을 추가하여 부과함 ○ 동일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당해 과태료 부과시점 이전의 위반행위가 추가 적발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받은 과태료 금액과 500만원의 차액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라. 자진 보고 ○ 위반행위자 또는 위반행위자가 소속된 관서의 장이 위반행위를 검사 또는 민원제기 전에 감독기관(본부)에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100을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음 마.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의 통보 ○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실명거래 위반행위를 조사한 금융감독기관.검사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내역, 거래금액, 고의.과실.부주의 여부, 주된행위자.종된행위자 여부, 반복적 위반 행위자 여부, 자진 보고 여부 및 당해기관 자체 적발 여부 등을 증빙자료와 함께 금융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함
6-3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 위반행위자가 속한 금융기관이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함 - 관련된 위반행위 등으로 동일 금융기관에서 5인 이상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 부점장급 이상 간부가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을 부과함 ○ 금융기관이 라.에 의하여 자진보고하거나 외부검사 또는 민원제기 전에 자체 적발하여 조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

제 1 절 우체국보험 현황

1. 우체국보험의 과거와 현재

가. 조선간이생명보험

- 1929년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시작된 공영보험인 「조선간이생명보험」은 국민생활안정과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상호부조라는 사회 정책적 기능수행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비교적 소액인 월평균 1원의 보험료도 납입하기가 어려웠고, 보험금 자체도 소액이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사회 정책적 기능수행에 한계를 갖고 출발하였다.
- 더구나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의 대부분을 식민지 개발 및 전쟁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하여 계약자에게 참다운 보험혜택을 주지 못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생명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한편,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막대한 전비의 부담이 재정을 압박하자 조선총독부 체신국에서는 이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보험가입을 독려한 결과, 해방 당시에는 일본인에 의한 계약을 제외하고도 계약건수가 1,120만 건에 달하여 전인구의 절반이상이 간이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나. 국민생명보험

- 정부수립 후 조선간이생명보험은 「국민생명보험」으로 그 명칭을 바꾸었으나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으로 그 규모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 1945년 일제로부터 인수한 1,120만 건의 유지계약건수가 1948년 말에는 280만 건으로, 다시 1952년에는 16만 건으로 격감되었다. 특히 6.25사변과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보험사업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1953년 2월 15일에 단행된 긴급통화조치로 보험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 한편 당시 체신부는 1952년 12월 국민생명보험사업 전반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을 제정하고 이어 1953년 1월 31일에 동법의 시행령 등을 제정하여 보험 및 연금사업 재출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 제정 당시의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종신보험, 교육보험, 양로보험, 징병보험이 있었으며, 우편연금은 즉시연금, 양로연금, 근로연금, 학자연금의 4종류를 취급하였다.
- 국민생명보험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른 1960년 이후 직장인을 위한 직장보험과 단기저축성이 강한 자립보험을 새로 개발하는 등 자체 노력과 정부의 저축증강정책에 힘입어 1971년 국내생명보험의 9.3%를 차지하는 성장을 이룩하였다.
- 그러나 국민생명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자금운용의 신축성과 업무의 전문성 결여 및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에 대한 과다 투자 등으로 사업 경영상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 따라서 당시 체신부는 1976년 국민생명보험사업과 우편저금사업을 농업협동조합에 이관키로 방침을 정하고 총 119만 건에 계약고 924억원(책임준비금 359억원)의 국민생명보험을 1977년 1월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하였다.

다. 우체국보험

- 국민생명보험이 농업협동조합으로 이관된 후, 가입보험금이 소액인데다 국영생명보험 특유의 영세성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자 농업협동조합은 신규취급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도시 영세서민 및 농·어촌주민의 생명보험에 대한 가입기회는 점차 상실되어 갔다.
- 이에 당시 체신부는 한국전기통신공사 분리후의 유휴인력과 시설 및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의 창구망을 활용하여 민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지 주민에게도 골고루 생명보험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도시·농촌간의 금융서비스를 균등히 제공하고 국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1983년 7월부터 정기보험, 특별보장보험, 교육보험, 양로보험, 복지보험 등 5종의 상품으로 「우체국보험사업」을 재개하였다.

2. 우체국보험의 특징

우체국보험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장하는 국영보험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참고 : 1999. 12. 28,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로 개정, "체신보험"을 "우체국보험"으로 변경하였음

첫째, 가입대상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우체국보험은 저소득층 국민의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사업으로서 도시서민 및 농·어촌주민을 주된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보험가입한도액도 최고 4,000만원까지로 제한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가입하게 하였다.

둘째, 보험가입의 간편성이다.

우체국보험은 소액보험으로서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가입이 간편하다. 즉, 우체국보험은 계약시 의사에 의한 진단절차를 생략하고 우체국 직원(모집자 포함)과의 면담 후 가입자의 성실한 고지의무 이행만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면접 및 신체검사)에서 정하는 대상은 예외로 한다.

셋째, 사업의 비영리성 및 공익성이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영보험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 도모에 그 의의가 있으므로 보험료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여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으며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 예탁 및 공공자금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물론 보험가입자를 위한 복지시설에도 투자함으로써 가입자 복지증진에도 힘쓰고 있다.

넷째, 비권력적, 비독점적 정부사업이다.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 주체이므로 조직, 예산 등에 법률적, 제도적, 행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국민 관계에 있어서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업무이며 민영보험과 상호보완, 공존하는 비독점적 정부사업이다.

3. 우체국보험 상품

현재 우체국보험이 취급하는 상품에는 보장성보험으로 (무)100세종합보장보험, (무)우체국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무)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우체국암보험(갱신형), (무)꿈나무보험, (무)어깨동무보험, 에버리치상해보험,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무)만원의행복보험, (무)우체국장제보험, (무)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우체국요양보험, (무)나눔의행복보험이 있고, 저축성보험으로는 (무)에버리치복지보험,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무)파워적립보험, (무)알찬전환특약이 있으며, 연금보험으로 (무)우체국연금보험, (무)플러스연금보험, 어깨동무연금보험,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포함), 우체국개인연금보험(이전형) 이 있으며, 그밖에 특정대상을 위한 상품으로 휴일재해보장보험, 우체국단체보장보험, (무)청소년꿈보험이 있다.

현재 판매중인 우체국보험 상품현황을 간략히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체국보험 상품현황

	상품 종류	보험기간	보 장 내 용	시행일
보장성보험	(무)100세종합보험	100세	일반사망보험금, 건강관리자금	'14.10
	(무)우체국 건강클리닉보험(갱신형)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건강관리자금, 3대질병치료보험금, 10대성인질환입원·수술급부금, 입원치료자금 등	'11. 1
	(무)우체국 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건강관리자금, 3대질병치료보험금, 3대질병입원급부금, 3대질병수술급부금	'11. 1
	(무)우체국 하나로OK보험	종신	교통재해·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 교통재해·일반재해장해급부금 등	'14. 5
	우체국암보험(갱신형)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암치료보험금, 이차암치료보험금, 건강관리자금	'14. 5
	(무)꿈나무보험	20년 만기	암치료보험금, 재활보험금, 입원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입원급부금, 장기입원급부금, 수술급부금, 주요성장기질환수술급부금 등	'14. 5
	(무)어깨동무보험	10, 20년, 80세 만기	생활보장형(1종), 암보장형(2종), 상해보장형(3종)	'10.12
	에버리치상해보험	80세 만기	재해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장해급부금, 입원치료자금 등	'05.10
	우체국안전벨트보험	20년 만기	휴일·평일교통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및 재활치료자금, 입원·수술급부금, 외모수술·골절치료·깁스치료·통원치료자금	'08. 4
	(무)우체국 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13. 7
	(무)만원의행복보험	1, 3년 만기	유족위로금,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10. 1
	(무)우체국장제보험	종신	장례비용, 제사비용	'14. 5
	(무)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5년 만기 (자동갱신형)	가철성의치(틀니)·임플란트·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충전, 크라운, 치아관리자금	'15. 7
	(무)나눔의행복보험	1년	일반사망보험금	'14.10
저축성보험	(무)에버리치복지보험	3, 5년 만기	만기보험금, 장해급부금	'10. 1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3, 5, 10년 만기	만기보험금, 장해급부금	'09.10
	(무)파워적립보험	3, 5, 10년 만기	만기보험금, 장해급부금	'14. 5
	(무)알찬진환특약	2, 3, 4, 5, 7년, 10년 만기	만기보험금, 장해급부금	'10. 1
연금보험	(무)우체국연금보험	종신 최종연금 지급일	장해급부금 및 생존연금(더블연금형), 세제비적격연금	'03.12
	(무)플러스연금보험	종신	생존연금 및 사망보험금, 세제비적격연금	'07.11
	우체국연금저축보험 (이전형 포함)	종신 최종연금 지급일	생존연금, 세제적격연금	'14. 5
	우체국개인연금보험 (이전형)	종신	생존연금 및 장해급부금, 세제적격연금	'14. 5

※ 그밖에 특정대상에 한해 판매하는 휴일재해보장보험, 우체국단체보장보험, 무배당 청소년꿈보험이 있음.

제 2 절 우체국보험 업무연혁

년 월 일	주 요 내 용
1929. 5. 4	조선간이생명보험령 제정
1929. 7. 1	조선총독부체신국 서무과 보험계 설치
1929. 9.	조선총독부체신국 보험관리과, 보험업무과 증과
1929. 10. 1	조선간이생명보험업무 개시(서대문우체국) - 종신보험, 양로보험
1932. 7. 15	서울, 부산 건강상담소 개설
1939. 1.	건강상담소를 진료소로 개칭
1941. 1.	소아보험 실시
1943. 10. 1	우편연금사업 실시 - 즉시종신연금, 거치종신연금
1943. 12. 1	조선총독부체신국 저금보험과로 구성 축소 - 경성 보험관리소 설치
1944. 10. 1	함흥, 이리 보험관리소 설치
1945. 9. 12	조선총독부 미군정 인수
1945. 12. 22	간이생명보험, 우편연금 불출금지 조치
1946. 5. 1	체신국이 체신부로 개편됨에 따라 저금보험과를 저금보험국으로 승격 - 저금과, 보험과, 보건과, 융자과
1946. 10. 1	조선간이보험진료소를 국민보험병원으로 개칭
1948. 11. 4	저금보험국을 보험국으로 분리 독립 - 감리과, 업무과, 보건과, 융자과
1950. 3. 31	보험국 보건과 폐지
1952. 12. 16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 제정
	조선간이생명보험을 국민생명보험으로 개칭 - 보험의 종류 : 종신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징병보험 - 연금의 종류 : 즉시연금, 양로연금, 근로연금, 학자연금
1953. 1. 31	국민생명보험법 및 우편연금법 시행령 제정
1953. 3. 15	국민생명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1955. 2. 17	보험국 폐지 우정국 통합 - 보험과
1955. 7. 1	국민보험의원 폐지, 체신병원 설치

년 월 일	주 요 내 용
1958. 1. 1	보험과를 저금보험과로 통합
1961. 5. 23	국민생명보험 취급보상규정 제정
1961. 10. 10	직장보험 실시
1961. 12. 6	조선간이생명보험령 폐지
1962. 5. 21	교육보험 개선
1965. 12. 15	이익배당금 지급제도 실시
1966. 9. 27	자립보험 실시
1967. 6. 17	저금보험과를 환금저금과 및 보험과로 분리
1968. 11. 2	보험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실시
1969. 7. 1	자립보험 2년 만기 판매 중지
1970. 10. 1	징병보험 폐지
1972. 8. 1	이익배당금 지급 중지
1976. 12. 22	국민생명보험법 폐지
1977. 1. 1	국민생명보험사업 농협이관
1982. 12. 3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및 체신보험특별회계법 제정
1983. 7.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체신보험사업 재개) - 정기보험, 양로보험, 교육보험, 특별보장보험, 복지보험
1984. 1. 1	체신금융국 신설 - 기획과, 환예금과, 보험과, 재무관리과 -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보험모집인제도 실시 - 우체국보험관리사제도 도입
1984. 4. 1	가계안정보험 및 직장보험 판매 실시
1984. 7. 1	환급금대출 실시
1985. 5.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연금보험 판매 실시
1986. 2.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직장보험 및 복지보험
1986. 12. 26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개정 - 보험금등 제지급을 체신보험기금에서 지급 - 복지시설위탁관리 근거 마련
1987. 5. 12	가계안정보험 개선
1987. 11. 2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학자금보험 판매 실시
1988. 3. 29	체신보험 영등포회관 준공

년 월 일	주 요 내 용
1988. 6. 1	신복지보험 개선
1988. 8. 27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가입한도액 인상 1,000만원 → 2,000만원
1989. 4. 3	체신보험 부산회관 준공
1990. 12. 1	체신보험 온라인 업무개시
1991. 4.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체신연금보험 판매 실시(연금보험 개선)
1991. 4. 1	다보장보험 판매 실시
1992. 1.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상록보험, 체신건강보험, 체신장학보험 판매 실시
1992. 4. 1	체신보험모집인에 대한 등급제도 실시
1992. 7. 1	보험료 자동납입제도 실시
1993. 1.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가입한도액 인상(2,000만원 → 3,000만원) - 보험대상자 가입나이 확대
1993. 1. 1	체신보험 위험직종 분류제도 실시
1993. 2. 8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정기보험 개선
1993. 4. 1	우편취급국 등급평가제도 실시
1993. 11.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알뜰적립보험 판매실시 - 직장보험 및 체신건강보험 개선
1994. 6. 20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개인연금보험 판매 실시
1994. 12. 9	보험계약자 대출서비스 실시
1995. 1. 1	계약자배당제도 시행
1995. 5. 1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시행(청소년꿈보험 시행)
1995. 12. 4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백년연금보험, 암치료보험, 직장인생활보장보험 판매 실시
1996. 10. 2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판매 실시
1997. 1. 20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가입한도액 인상(3,000만원 → 4,000만원)
1997. 12. 1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어린이보험 판매 실시 - 특약제도 확대 시행

년 월 일	주 요 내 용
1998. 4. 30	정기보험 판매 중지
1998. 9. 17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제5563호) - 보험종류 및 보험금한도액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
1998. 12. 31	비과세 가계저축보험 판매중지
1999. 1. 4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 - 교통안전보험 판매 실시 - 종합건강보험 판매 실시(체신건강보험 판매 중지)
1999. 4. 30	체신연금보험, 상록보험 판매 중지
1999. 5. 31	학자금보험, 직장보험 판매 중지
1999. 12. 28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법률제6062호) - 법률명칭변경 :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2000. 1. 12	체신보험특별회계법 개정(법률제6144호) - 우체국보험기금 운용방법 개선 - 기금운용업무의 외부위탁 근거 마련
2000. 2. 7	올커버암치료보험 판매 실시(암치료보험 판매 중지)
2000. 3. 28	'우체국 한 사랑의 집' 설치 등 우체국보험 공익사업 개시
2000. 4. 4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체신예금·보험을 우체국예금·보험으로 개칭
2000. 6. 5	우체국금융분산시스템 가동
2000. 9. 1	사고보험금 지급심사업무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위탁 수행
2000. 9. 1	인터넷·폰뱅킹 서비스 개시
2000. 10. 1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2001. 1. 1	한아름연금보험 판매 실시(백년연금보험 판매 중지)
2001. 5. 1	알뜰적립보험 판매 중지
2001. 7. 1	우체국금융콜센터 업무 개시
2001. 9. 10	장애인전용 어깨동무보험 판매 실시
2001. 9. 15	가계안정보험 판매 중지
2001. 9. 17	파워적립보험, 알찬전환특약 판매 실시
2001. 10. 6	장학보험, 다보장보험, 직장인생활보장보험 판매 중지
2001. 12. 31	특별보장보험 계약 소멸
2002. 1. 2	우체국종신보험 판매 실시 - 사망보장특약, 질병치료특약, 재해치료특약 판매 실시
2002. 7. 2	재해안심보험 판매 실시
2002. 11. 1	우체국보험 이미지시스템(PIUS) 구축, 시행

년 월 일	주 요 내 용
2002. 11. 13	우체국 보험사업 가치평가시스템 도입
2003. 1. 4	우체국보험 위험률 작성 및 활용 - 제1회 우체국보험생명표 작성
2003. 3. 16	개인연금보험, 종합건강보험 판매 중지
2003. 5. 24	올커버건강보험 판매 실시(종합건강보험 판매 중지)
2003. 6. 30	우체국금융 영업지원시스템 구축 시행
2003. 9. 20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준공
2003. 12. 1	우체국연금보험 판매 실시
2003. 12. 31	가계저축보험 계약 소멸
2004. 1. 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 - 재보험 가입 근거 마련
2004. 7. 1	연금전환특약 판매 실시
2004. 7. 30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 설치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정절차 규정 등
2004. 8. 2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 우체국금융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 우체국보험의 재보험 가입한도 및 재보험회사의 기준 규정 등
2004. 9. 15	하이로정기보험 판매 실시
2004. 9. 22	휴일재해보장보험 판매 실시
2004. 11. 9	IC칩 모바일뱅킹 서비스 시행
2005. 1. 12	제1회 보험료 실시간 자동이체제도 시행 (우체국 및 은행)
2005. 2.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의 가입한도액 조정
2005. 2. 7	우체국단체보장보험 판매 실시
2005. 3. 21	청약심사업무(보장성보험)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위탁
2005. 8. 1	보험사고 특별조사팀(SIU) 구성·운영
2005. 10. 5	어린이보험, 재해안심보험, 교통안전보험 판매 중지
2005. 10. 5	에버리치상해보험, 꿈나무헬스케어보험 판매 실시
2006. 3. 20	에버리치복지보험(일반형, 생계형) 판매 실시
2006. 4. 10	특별조건부 계약인수 제도 실시
2006. 4. 20	어깨동무보험 3종(상해보장형) 판매 실시
2006. 8. 9	수익성 분석시스템(PTS) 도입 활용

년 월 일	주 요 내 용
2006. 9. 11	제2회 우체국보험경험생명표 산출 적용
2006. 9. 11	하이커버건강보험 판매 실시
2006. 12. 8	우체국연금보험 2종 출시
2006. 12. 8	직종분류코드 개편(189종 → 1,027종)
2007. 1. 1	우체국보험 우수고객 관리제도
2007. 4. 2	고객재무설계시스템 구축 시행
2007. 4. 17	독립특약(질병입원, 3대질병입원, 상해통원, 상해골절 선천이상) 판매 실시
2007. 4. 25	계약자배당금 지급방법 개선 시행(현금지급식 추가)
2007. 6. 8	환급금대출 다증서 일괄대출제도 시행
2007. 7. 3	평생OK보험 판매 실시(우체국종신보험 판매 중지)
2007. 11. 1	플러스연금보험 판매 실시(한아름연금보험 판매 중지)
2008. 4. 1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판매 실시
2008. 4. 15	우체국안전벨트보험 판매 실시
2008. 5. 1	환급금대출 이자율 적용체계 개선
2008. 6. 9	일반보증보험담보 신규대출 중단
2008. 8. 4	우체국금융 기간계 고도화시스템 가동
2008. 10. 20	우체국보험 이-메일 서비스 시행(10종류)
2008. 10. 27	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 판매 실시
2008. 12. 23	에버리치 ONE-Plus카드 보험서비스 시행
2009. 3. 24	(무)빅보너스저축보험 판매 실시
2009. 4. 10	(무)빅보너스저축보험 판매 중지
2009. 7. 1	우체국보험 광주보험회관 준공
2009. 10. 1	제3회 우체국보험경험생명표 산출 적용
2009. 10. 1	우체국보험관리사 명칭 변경(보험관리사 → 우체국FC)
2009. 10. 18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 판매 실시(우체국의료비보장보험 판매 중지)
2009. 10. 26	(무)그린보너스저축보험 판매 실시
2009. 10. 28	우체국보험 “e-보험알림”서비스 시행
2009. 12. 18	선진보험료 산출시스템 구축
2010. 1. 1	우체국FC 등급평가제도 폐지 및 비례보상제도 도입
2010. 1. 1	소액서민보험(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및 보급
2010. 1. 19	우체국영업 활성화 지원 SPP(Sales Performance Promotion) 프로그램 도입
2010. 4. 16	평생보장암보험 판매실시(우체국암치료보험 판매중지)

년 월 일	주 요 내 용
2010. 4. 30	(무)꿈나무보험 판매실시(꿈나무 헬스케어보험 판매중지)
2010. 8. 31	보험(가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2010. 11. 1	보험사기방지시스템(IFDS) 구축
2010. 11. 30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칙 제정
2010. 12. 29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개정(우체국예금과 분리)
2010. 12. 31	우체국건강보험, 하이커버건강보험, 평생OK보험 판매중지
2011. 1. 1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환급금대출 연체이자 폐지)
2011. 3. 25	우체국하나로OK보험 판매
2011. 9. 1	환급금대출 이자율 적용체계 개선 및 이자 부분상환제 시행
2011. 9. 23	(무)우체국즉시연금보험 판매
2011. 9. 23	우체국보험 공시이율 제도 도입
2011. 9. 23	우체국 저축성보험 사업비 공시제도 시행
2011. 12. 30	2011년 우체국보험 상품개선(주계약 19종, 특약 14종)
2011. 12. 30	우체국보험 상속연금형(무배당우체국즉시연금, 우체국연금 1종) 환급금대출 추진(연금개시 후까지 확대)
2012. 3. 16	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 판매실시
2012. 11. 6	(무)우체국즉시연금보험 판매중지
2012. 12. 21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무)우체국아이사랑보험 판매실시 (무)파워적립보험·(무)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판매중지
2013. 2. 15	우체국연금보험 2종(연금저축)·우체국연금보험 4종(연금저축이전형)·플러스연금보험 2종(연금저축) 판매중지
2013. 7. 1	우체국보험 신공시이율 제도 도입
2013. 7. 5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1종, 2종) 판매실시 세법 개정에 따른 연금보험 구조 개편(연금저축 분리 등) - 우체국연금보험 1종(일반연금) 판매중지 → (무)우체국연금보험 판매실시 - 플러스연금보험 2종(연금저축) 판매중지 → (무)플러스연금보험 판매실시 - 우체국연금보험 3종(개인연금이전형) 판매중지
2013. 10. 8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3종) 재가입실시(의료비보장보험 대상)
2014. 1. 1	(무)우체국아이사랑보험 판매중지

년 월 일	주 요 내 용
2014. 1. 7	(무)어깨동무보험 판매중지(소득세법 개정 관련 조치사항)
2014. 5. 16	수술분류표 개정에 따른 보험상품 약관 개선(8종), (무)꿈나무보험의 보장형을 저축형으로 통합, 평생보장암보험 판매중지 우체국연금저축보험(이전형 포함), (무)파워적립보험,(무)우체국장제보험, 우체국암보험(갱신형), (무)우체국하나로OK보험, 우체국개인연금보험(이전형) 판매실시, (무)어깨동무보험 판매재개
2014. 7. 1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 판매중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 관련 조치사항)
2014. 7. 5	(무)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갱신형)(1종, 2종) 갱신계약 판매실시
2014. 10. 1	하이로정기보험, 우체국치아보험(유배당 주계약) 판매중지
2014. 10 .2	(무)100세종합보험 판매실시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변경 반영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 개선 (무)알찬전환특약 비과세혜택 가능한 10년만기 신설 표준약관 변경 및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우체국보험 약관 전면 개정 금리확정형 저축성보험 예정이율 조정
2014. 10. 15	(무)나눔의행복보험 판매실시
2015. 7. 13	어깨동무연금보험 판매실시, (무)우체국치아보험(갱신형)개선·판매재개 (무)우체국연금보험 더블연금형 신설 우체국보험 신공시이율Ⅱ제도 도입(조정률±20%)
2015. 7. 1	(무)100세종합보장 특약3종 재보험 출재